

보훈복지단체 지원 및 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6.



제 출 문

조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보훈·복지단체 지원 및 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6월

한국조달연구원장 김 정 현

연구책임자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 영 훈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 정 포
공동연구자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 진 경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 열
	한국조달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미 정
	한국조달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대 식
연구보조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배 종 균
연구보조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김 보 라

목 차

■ 요약보고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수행방향	4
제3절 연구방법	7
제4절 연구내용	9
제2장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조달의 개념적 개관	11
제1절 정부조달계약의 의의와 절차	11
제2절 정부조달계약과 보훈·복지단체	20
제3장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제도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29
제1절 국내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관련 법제도분석	29
제2절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관련 현황분석	35
제3절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관련 실태분석	50
제4절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관련 해외사례분석	74
제4장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131
제1절 추진전략구성을 위한 기본전제	131
제2절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방법	135
제3절 Agenda(의제)별 추진방법	141
제4절 단계별 추진방법	160

제5장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69
제1절 법제도 개선의 방향	169
제2절 법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172
제3절 법제도 개선유형	181
■ 참고 문헌	193
<부록1> 최근 5년간 보훈·복지단체별 계약실적현황	195
<부록2>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	199
<부록3> 보훈·복지단체 물품/용역 조달서비스에 대한 고객평가 설문지 ...	207

표 목 차

<표 2-1>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13
<표 2-2>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장단점 비교	17
<표 2-3> 현행법령상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계약 특례	26
<표 2-4> 현행법령상의 보훈단체	27
<표 2-5> 보훈대상별 현황 (2009.01.31현재)	27
<표 3-1>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비중	38
<표 3-2> 최근 제한경쟁 사유별 비중	39
<표 3-3> 최근 수의계약 사유별 비중	39
<표 3-4> 수의계약 가능단체	40
<표 3-5> 최근 5년간 보훈·복지단체수 및 수의계약실적 (조달청)	41
<표 3-6> 최근 3년간 보훈·복지단체별 수의계약현황	42
<표 3-7> 수의계약 물량배정대상 (조달청)	44
<표 3-8> 보훈·복지단체별 회원수와 수익금 배분현황	48
<표 3-9> 단체별 물량배정대상 품목 교체 요구	50
<표 3-10> 조사대상 및 응답단체 수	51
<표 3-11> 응답단체의 일반적 특성	53
<표 3-12> 응답단체의 사회적·경제적 지향성	54
<표 3-13> 응답단체의 재정 현황	56
<표 3-14> 생산시설 및 대표 생산품 현황	58
<표 3-15> 정부 수의계약 현황	61
<표 3-16> 현 수의계약 제도 및 문제점 동의 정도	63
<표 3-17> 정부 수의계약제도 개선 방안들에 대한 동의 정도	66
<표 3-18> 응답기관 유형	67
<표 3-19> 조달청의 보훈복지단체 물품/용역 서비스 관련 질문	69
<표 3-20> “구매 전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순서	69
<표 3-21> 보훈·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용역에 관한 질문	71
<표 3-22> 보훈·복지단체로부터의 물품/용역에 대한 각 항목 중요도	71

<표 3-23> 물품의 재구매 의사 정도	72
<표 3-24> 지난3년간 보훈복지단체에 구매한 물품/용역 및 그에 대한 만족도 ·	73
<표 3-25> NAICS의 산업분류에 따른 중소기업규모기준	76
<표 3-26> 미국 정부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구매목표율	81
<표 3-27> 미국 주요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2007회계년도)	82
<표 3-28> 전환단계 비8(a) 소득 목표율	89
<표 3-29>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공공조달실적	107
<표 3-30> 미국 주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시여부	108
<표 3-31> 영국의 기업범위 기준	111
<표 4-1> 보훈·복지단체 제도정비기의 내용 요약	164
<표 4-2> 보훈·복지단체 제도전환기의 내용 요약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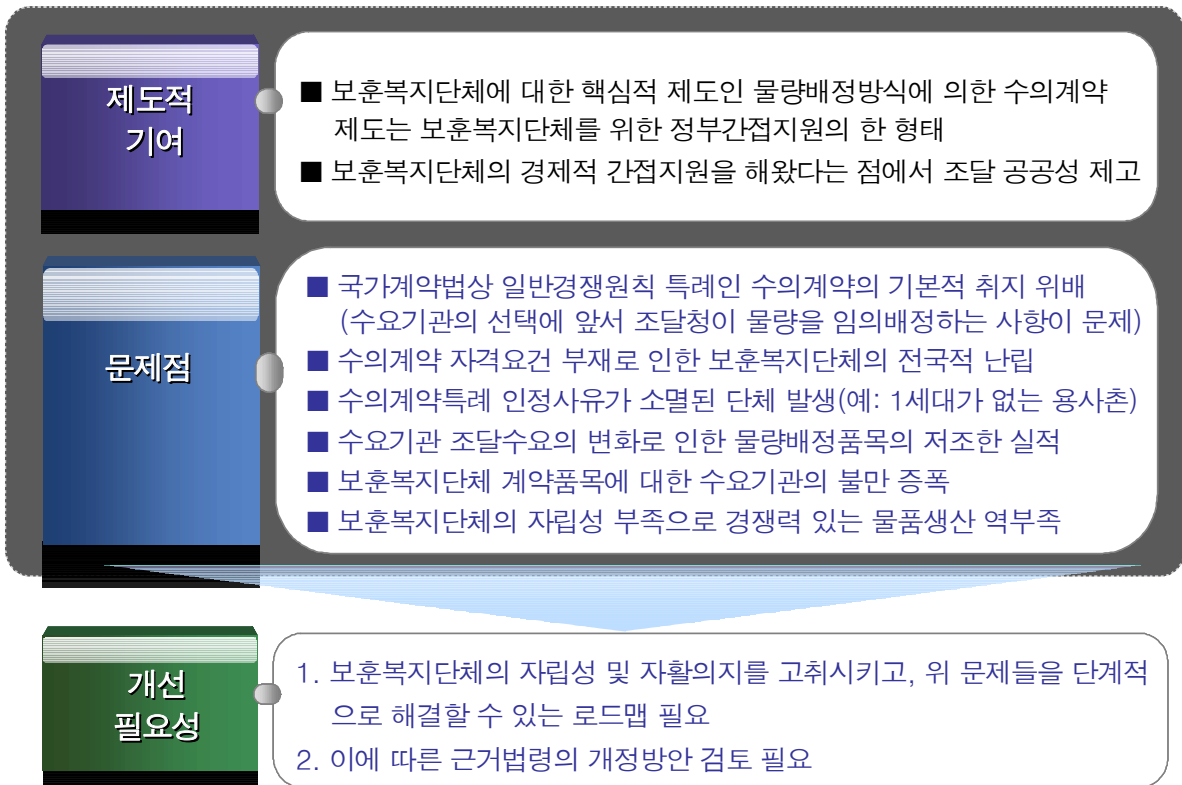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범위 및 방법	5
<그림 2-1> 물품구매 업무 절차: 일반적 물품구매 업무과정	18
<그림 2-2> 물품구매 업무 절차: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업무과정 개괄	19
<그림 5-1>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 기준 개정방안 정리 ...	183
<그림 5-2> 관련 개별법의 개정방안 정리	186
<그림 5-3> 특별법 제정방안 정리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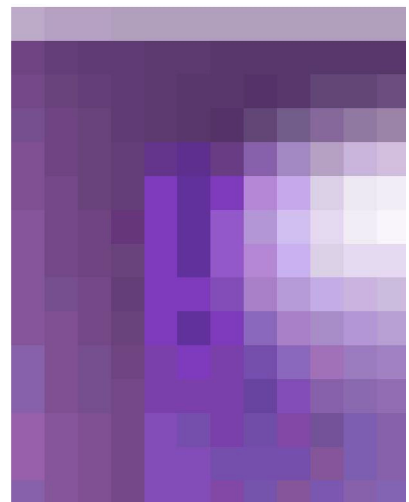
< 요약 보고 >

1. 보훈·복지단체 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계약제도가 보훈·복지단체의 경제적 간접지원을 해왔다는 점에서 조달공공성 제고에 기여
- 그럼에도, 보훈·복지단체의 계약제도는 수의계약 자격요건의 미비, 물량배정 품목에 대한 저조한 계약실적, 수요기관의 불만 증폭, 보훈·복지단체의 경쟁력 있는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훈·복지단체의 자립성 및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면서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제도적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근거법령의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해외 사례분석



3. 로드맵 기본방향

- 제도정비기 : 2009-2010년(2년)
 -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 물량배정방식을 유지하면서 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방식의 수의계약 인정
- 제도전환기 : 2011-2013년(3년)
 - 현행 제도의 핵심이 되는 물량배정방식을 다른 방식(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방식, 제3자 단가계약, MAS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 모색
 - 2013년 이후 경쟁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 제도정비기와 제도전환기 동안 관련 기관간 법·제도 개선에 협력

4. 단기적 제도정비기 개선방안

- 보훈·복지단체의 계약제도 단기 운용방향
 - 현행 물량배정방식 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중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 자격요건 정비
 - 일반요건사항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모델로 설정하되, 일정기간 해당물품의 생산실적 등 품질확보 및 계약이행능력도 추가
 - 장애인단체의 경우, 최근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 우선구매 적용여건(적용대상, 구매품목 및 비율)을 준용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전국적 난립방지를 위해 설립승인기관에서만 계약활동하도록 제한(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승인 시 그 지역에서만 계약)
-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 대상범위 정비
 - 더 이상의 수의계약 대상범위 확대 억제, 향후 단계적으로 수의계약특례를 잃게 되는 단체에 대해 MAS 등에 의한 제한경쟁 대상으로 전환(장기적으로 일반경쟁 방식 전환을 위한 준비)
 - 보훈·복지단체 지정에 의한 수의계약특례 인정사유가 소멸된 단체(예: 1세대가 없는 용사촌 등)에 대한 지정해제조건 명문화

- 물량배정대상 물품 교체 방향
 - 물량배정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후 기존물품 대비 교체물품의 비율을 1:1, 2:1, 3:2, 4:2 등으로 교체
- 수의계약요건 중 직접생산확인 강화
 - 직접생산여부 조회 관련 규정(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7조) 내용 개정 : 신규 수의계약대상 물품 선정요청서 및 물품교체요청서 접수 시 관계 기관의 조회 의무화
-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에 대한 투명성 강화
 -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수익사업 승인물품 및 수익금 사용내역을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향후 수의계약평가항목으로 활용, 지방청 관리물품도 본청에서 총괄 배정)
 - 물품별 물량배정기준을 및 배정실적을 해당단체에게 공개
 - 수의계약으로 조달요청한 물품규격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사후공개

5. 중기적 제도전환기 개선방안

- 보훈·복지단체의 계약제도 중기 운용방향
 - 물량배정방식에서 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방식, MAS 방식, 제3자 단가계약방식 등에 의한 제한적인 경쟁개념 도입
- 보훈·복지단체의 경쟁입찰 참여시 우대방안
 - 경쟁체제 전환 단체의 경우, 단체의 구성원인 상이자, 장애자를 일정비율 고용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 일반경쟁(적격심사), MAS계약(적격성 평가) 등의 약자기업 우대분야(적격심사는 신인도 분야)에서 총점대비 3% 가점
 - 보훈·복지단체의 열악한 경제생활 및 취업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유가족의 고용 비율에 따라 가점제도 고려
- 장기적으로는 1급 상이군경 및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정부의 보훈·복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관련 부처의 협조), 일체 경쟁계약으로 전환

6. 법제도 개선방안

제1안 : 현행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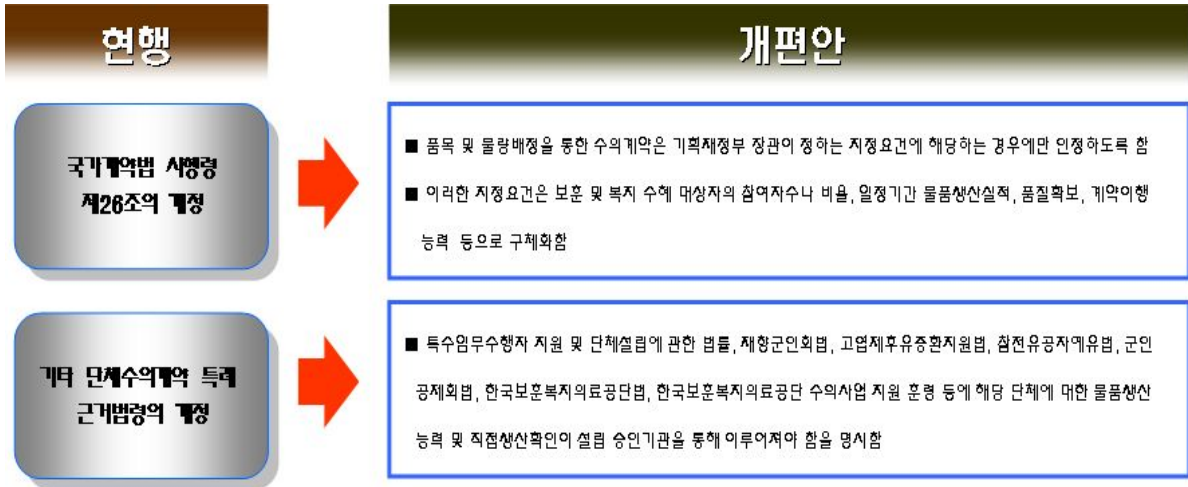
수익계약 대상기관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업무처리기준에 관련 조항의 신설 ■ 2년내, 국가계약법 이외 개별법상 수익계약 근거 조항이 없는 단체는 수익계약 조건의 충족 유도
수익계약 물품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조 이하의 개정 ■ 불당배정 대상물품을 단계적으로 MAS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구체적 대상 물품은 조달청이 선정할 수 있음을 명시, 불당배정시 2년 이상 신청실적없는 물품의 MAS 우선 편입
수익계약 조건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업무처리기준 제8조 개정 및 관련 조항의 신설 ■ 단체장이 해당자(상이군경 또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경영 및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일정비율 이상이 보훈대상자 또는 중증장애인 일 것 명시
일정기간 이후 물량배정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조 이하의 개정 및 관련 조항의 신설 ■ 조달청 불당배정이 유지되는 단체의 경우도 일정 유예기간 이후 불당배정이 점진적으로 폐지됨을 명시
MAS전환 단체의 우대조치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업무처리기준에 관련 조항의 신설,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의 개정 ■ MAS계약 적격성 평가, MAS계약 대상자의 계약이행능력평가(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의 면제

- 기존 수익계약대상기관은 로드맵기간 동안 사후적으로 합법화 하되, 향후 2년 이내에 수익계약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 명시

<제1안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의 개정보다는 개정과정에서의 물리적 부담이 적음 · 조달청의 재량적 업무집행범위가 넓어짐 ·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경이 용이함 · 점진적으로 수혜를 받던 보훈복지단체의 자립여건을 유도할 수 있음 · 특정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물량배정문제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이 수행하는 보훈복지단체 수익계약에 그 적용범위가 한정됨 · 영리법인 형태로의 전환 유도시 해당 단체 조직변화가 인위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만으로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하는 수익계약제도의 시행범위나 내용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 합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제2안 : 관련 개별 법령의 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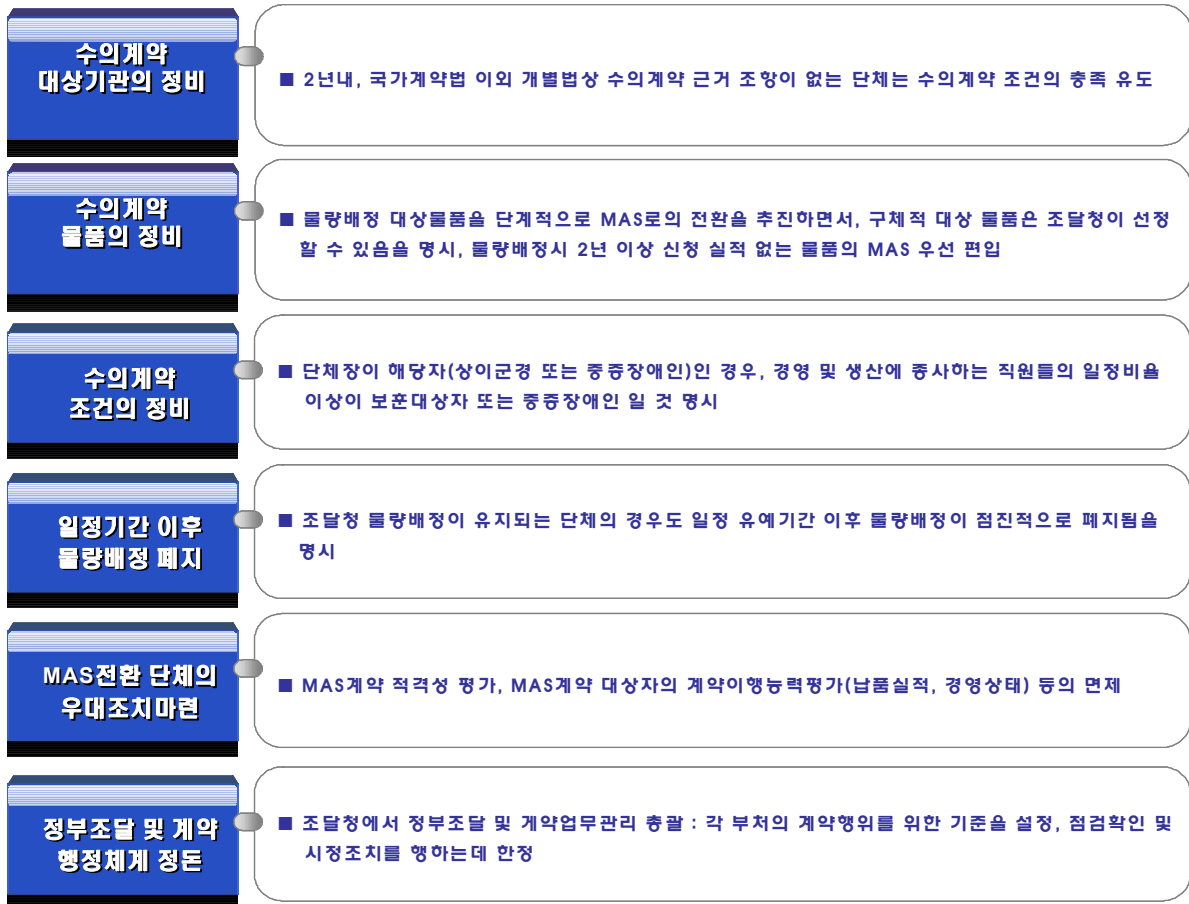
- 기존 수의계약대상기관은 로드맵기간 동안 사후적으로 합법화 하되, 향후 2년 이내에 수의계약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조달사업법시행령 부칙에 명기
- 또한 국가계약법상 근거를 두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계약 실행의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1안의 개선사항을 '보훈복지단체 수의 계약집행기준'의 형태로 회계예규에 근거 마련

<제2안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시 조달청의 업무지침 개정을 통한 대응보다 합법성을 획득할 수 있음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에 관해 국가재정 정책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조달청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의 제도개선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회계예규에 보훈복지단체의 계약집행기준의 형태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내용은 개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 합법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요건의 마련에 있어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각 수의계약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단체설립승인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제3안 : 특별법 추진(5년 한시법)

- 현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 및 계약법제도의 혼선을 정비하면서 기존 보훈·복지단체 간, 이들 단체와 수요부처 및 조달청간 조달 및 계약 관련 불편사항을 정비
- 동 특별법을 소위 「보훈·복지단체 등의 정부조달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로 확대, 향후 타 법률에 의해 적용되는 정부조달계약 예외사항 포괄



<제3안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상 혼선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후 수의계약제도 개편시 단체의 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음 · 기존의 수혜대상 보훈·복지단체들이 새로운 제도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특별법 제정시 타 행정기관, 국회 등의 관계에서 실제적·기술적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음

제1장 서론 : 연구목적 및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 보훈·복지단체 등에 대한 국가지원은 이들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자활 의지를 고취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인 자립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임무 중 하나이자, 우리 사회의 현안인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정부는 이들 보훈·복지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현행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국가지원방식으로는 ①국가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최저생계비, 자립자금, 단체운영비 보조 등)과 ②국가조달에 일정부분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지원(정부조달물량에 대한 일정비율 참여보장 등)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조달청은 이 중 정부조달을 활용한 간접지원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근래 들어 보훈·복지단체의 국가지원방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세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각종 지원금 제공 등 금융제공)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보훈·복지단체가 스스로 자립(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간접지원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는 금융제공 등의 직접지원방식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궁핍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최소한의 단기적 처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이라는 국가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

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거나 이를 위한 제반환경 및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간접지원방식이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에 따른 물량배정방식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물량에 대한 납품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특정단체에 대한 물량배정)으로 수행되어 직접적인 지원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립 및 자활기회 마련이라는 정책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공정성, 투명성, 공평성, 효율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조달은 근래 들어 WTO 출범 및 해외 제 국가와의 FTA 체결 등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른 조달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성 제고측면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음.
- 근래 들어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조달에 최적가치(Best Value)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고가치(Best Value) 계약제도는 기존의 단일 공급자 위주의 최저가격 계약제도(Lowest Priced Contracts)에서 벗어나 정부조달물품들이 가격 대비 최적의 품질 및 효율(Value for Money)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계약방식의 하나로, 이는 정부구매의 투명성, 공정성 등의 기존원칙과 함께 정부구매에서도 경제적 효율성 개념(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Offer Choice)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임.
- 조달청에서도 공공조달에서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를 도입하고, 2007년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는 계약제도 시행에 따른 다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새로운 시장개척 등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전체 중소기업 수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고 수의계약 물량배정 과정에서 폐해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정부조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반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음.

- 그러나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 전면 폐지시에도 보훈·복지단체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제도 폐지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예외의 인정은 국가의 사회적 약자지원이라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중소기업 등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의 주요 원인이었던 제도관리상의 약점도 여전히 존재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장기적인 자립 및 자활기반을 확보하고 정부조달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보훈·복지단체 등 특정단체에 적용하고 있는 물량배정방식 수의계약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된 관리방안수립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국가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장기적인 자립 및 자활기반을 확보하고 정부조달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행 보훈·복지단체 등 특정단체에 적용하고 있는 물량배정방식 수의계약제도의 현황 및 법체계와 제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해외 선진국의 보훈·복지단체 관련

국가지원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보훈·복지단체 관련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봄으로써 향후 합리적인 관련 사업관리 및 집행을 이루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이상과 같은 주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표의 수립과 달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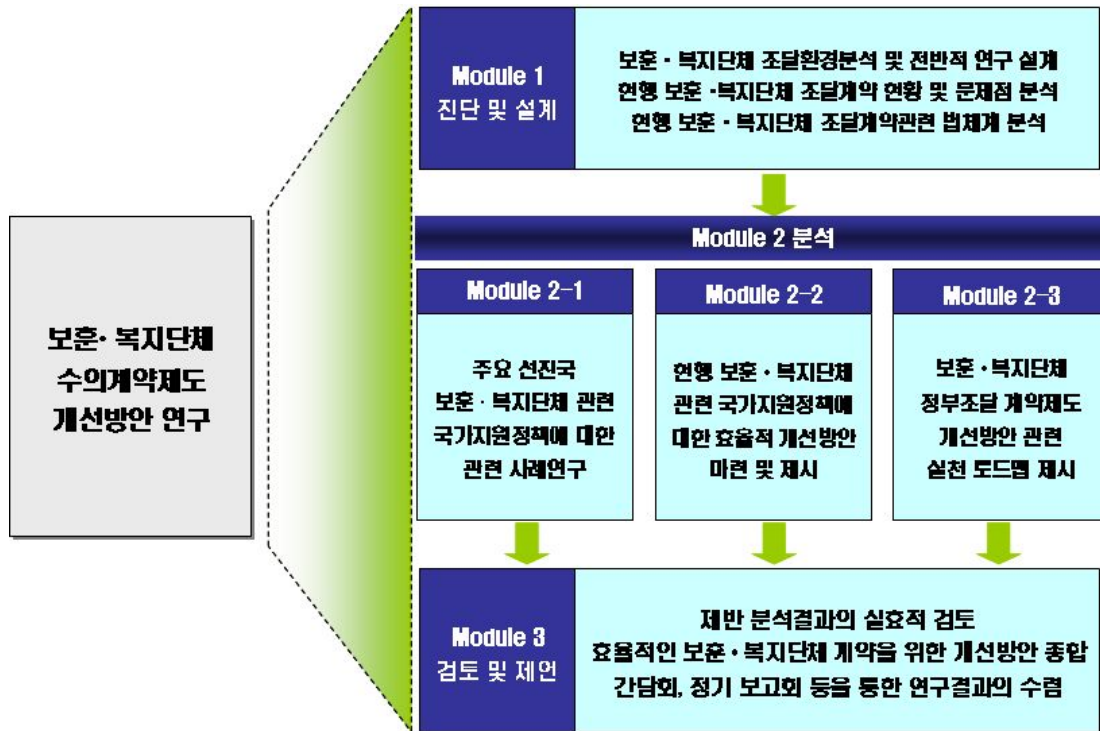
- ① 현행 보훈·복지단체 관련 정부조달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련되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설문조사 및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을 수행하여 효율적인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
- ② 보훈·복지단체 관련 정부조달지원제도 개선방안의 효과적인 도입 및 실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제시
- ③ 마련된 보훈·복지단체 관련 정부조달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이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로드맵 시행에 필요한 정부조달 관련 법령의 개정(안) 도출 및 제시

제2절 연구범위 및 수행방향

□ 본 연구는 이상에서 제시된 3가지 주요 연구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①진단 및 연구설계, ②연구분석, ③검토 및 제언의 3단계(Module)로 나누어 추진되며, 각 단계별 구체적인 연구범위(내용)는 다음과 같음.

- 특히 3단계 연구추진은 1단계 완료 결과(산출물)가 이후 2단계 진행의 투입물이 되며, 2단계 완료 결과(산출물)가 이후 3단계 진행의 투입물로 연결되는 순차적 연구진행으로 구성됨.

[그림 1-1] 연구범위 및 방법



① Module 1 : 진단 및 설계

- ① 보훈·복지단체의 개념과 특성 및 제반환경여건 등 보훈·복지단체 관련 정부조달환경을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조달 지원체계를 파악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본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 설계의 기초자료 마련
- ② 현행 보훈·복지단체 관련 조달체계 및 관련 법제도 등을 점검하여 국가조달 예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보훈·복지단체 조달체계 개선안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의 틀 설정
- ③ 보훈·복지단체 관련 수의계약제도 운영 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 운영현황 분석 : 현행 조달청 보훈복지단체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운영실태와 보훈복지단체별 수의계약 근거 및 추진체계 및 정부 유관부처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 정비계획 및 운영방향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등을 분석·검토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 문제점 도출 :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행 제도 수행상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보훈·복지단체 관련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행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제도의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검토·파악

② Module 2 : 분석

- 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계약제도 및 조달체계에 대한 사례연구 수행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단체, 상이제대군인 등에 대한 정부 조달 지원목적 및 지원기준(목표율 포함), 제도의 주요 특성, 운영체계, 지원 프로그램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 도출
- ② 보훈·복지단체 관련 현행 수의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밀진단 및 적용방안 제시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조달 실태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관련 시사점을 검토
 - 국내외 사례연구 및 관련 실태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보훈·복지단체 관련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제시

③ 보훈·복지단체 관련 계약제도 개선방 운용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제시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전반적인 실천 로드맵 작성·제시

③ Module 3 : 검토

- ① 문헌검토 및 사례연구 등 연구·분석과정과 보훈·복지단체 계약 담당자 등 실무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및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하여 향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간담회와 정책연구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제고
- ② 이상의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복지단체 지원방안 및 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정부조달 관련 법규정의 개정방향, 개정내용, 개정이유 등을 정리하여 제시

제3절 연구방법

- 연구 방법은 크게 기존 연구의 검토(국내외 문헌조사)와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실제적인 인터뷰 조사 및 관계기관과 관련 이해 당사자 집단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함
- 보훈·복지단체 지원관련 기존 연구의 검토 및 국내외 문헌조사
 - 기존의 보훈·복지단체 지원 및 수의계약제도 관련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

행 보훈·복지단체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에 따르는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훈·복지단체 지원을 위한 현행 수의계약제도의 향후 경쟁계약 전환에 대한 필요성(당위성) 및 효과성과 효율성, 예상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향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의 효과적인 개선방향과 효율적 적용방안에 대한 틀을 마련함.

□ 보훈·복지단체 관련 담당자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토론회 실시

-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제시된 대안의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업 실무부서 전문가들에 대한 실제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함.

□ 계약행정기관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feed-back을 통한 연구결과의 실효성 제고

- 연구 발주기관인 조달청과 함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위사업청, 국가보훈처 등 국가계약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의견을 비롯하여, 관련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민감하게 얽혀 있는 점을 감안, 이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함.

□ 외부 전문가 활용

-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지문을 받아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과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정책당국의 수용성을 제고함.

제4절 연구내용

- 연구 내용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함.
- 제2장에서는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조달의 개념적 개관을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보훈·복지단체의 개념고찰과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으로서의 정부조달의 필요성을 분석함.
- 제3장에서는 보훈·복지단체 관련 정부조달지원제도에 대한 법체계 분석과 해외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보훈·복지단체 관련 정부조달지원정책에 관해 검토·분석하고, 국내 보훈·복지단체 관련 현행 정부조달 현황과 지원제도 시행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보훈·복지단체 관련 정부조달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전제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보훈·복지단체 관련 정부조달 계약제도 개선에 따르는 필요법령 개정안에 대해 검토·제안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제2장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조달의 개념적 개관

제1절 정부조달계약의 의의와 절차

1. 정부조달계약의 의의

- 정부조달계약은 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일반 사인과 체결하는 예산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공사, 물품구매 및 기타 용역관련 계약)은 물론, 행정목적은 달성하거나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도 정부조달계약에 포함함(정원, 2008: 61).

-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들의 조달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음.
 - 첫째, 정부조달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정원, 2008: 66)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정부조달계약을 국가가 민간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일반 사인간의 거래상의 계약자유의 원칙과 차이를 보임.
 - 정부조달이란 국민세금에 토대한 예산으로 집행되고 공익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공법적 성격의 행위라는 점에서, 정부조달계약에서는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절차와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음(정원, 2008: 66).

- 둘째, 정부조달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고 전형·비전형 계약을 모두 포함(정원, 2008: 66).
 - 정부조달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의 출연 내지 출자를 하는 계약이며,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자기도 그 대가로서 교환적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쌍무계약임(정원, 2008: 66).
 - 정부조달계약은 매매, 임차, 도급 등과 같은 민법상 전형계약(유명계약)인 경우도 있고, 시스템사업, 체계개발사업과 같이 전형계약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인 경우도 있음(정원, 2008: 67).

- 셋째, 정부조달계약은 민법상 일반원칙의 제한적 적용을 받음(정원, 2008: 68).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정부조달계약도 민법상의 계약자유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원칙적으로 적용됨.
 - 그러나 정부조달계약은 그 공법적 성격으로 인해 계약준비 → 계약상대자 선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 → 사후관리라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절차와 기준을 통해 정부측의 자유계약원칙에 제한을 두고 있음(정원, 2008: 68).
 -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적 행정처분 규정도 두고 있음(정원, 2008: 68).

2.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 정부조달계약은 계약목적물, 계약체결형태, 계약체결방법, 기타 등에 따라 <표 2-1>과 같이 나뉘어, 본 보고서에서는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종류에 국한하여 다루고자 함.

<표 2-1>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계약목적별	계약체결형태별	계약체결방법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물품제조·구매계약 - 용역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계약, 개산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일반계약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약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 공동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쟁입찰계약 · 제한경쟁입찰계약 · 지명경쟁입찰계약 - 수의계약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수량경쟁입찰 · 2단계경쟁/분리동시입찰 · 일괄입찰/내역입찰 · 유사물품 복수경쟁

* 자료: 정원(2008: 8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법률은 제7조의 규정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라고 하여, 정부조달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동조의 후단에서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일반경쟁입찰계약 (정원, 2008: 111)

- 일반경쟁계약은 공고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자격을 가진 불특정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임.
 - 다만,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음.
 - 이러한 경매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초고입찰액을 발표 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제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일반경쟁계약의 장점으로 ①공개적으로 집행하므로 공정하고 경제적이며 ②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시킬 수 있고, ③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와 계약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음.

- 단점으로는 ①자본·신용·경험 등이 풍부하지 못한 업체가 참가함으로써 견실한 계약이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②덤핑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높으며, ③입찰에 참가하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경우 입찰집행이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음.

2) 제한경쟁입찰계약

- 정부조달계약의 기본원칙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임.
 - 그러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한경쟁계약에 의할 수 있음.

- 이는 능력이나 경험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실 시공 방지, 입찰업무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정원, 2008: 118).

□ 제한경쟁계약은 ①일반경쟁계약의 단점인 ㉠계약의 적정이행 확보곤란 ㉡입찰참가자가 많은 데 따른 입찰사무의 복잡 등과, ②지명경쟁계약의 단점인 ㉢자의적인 지명 ㉣지명대상 업체 간의 담합의 용이로 인한 실효성 확보곤란 등을 보완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경쟁제도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계약제도라 할 수 있음(정원, 2008: 118).

□ 제한경쟁계약은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집행대상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공사,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지역제한공사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경쟁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집행기준과 제한기준(실적·도급·한도액·기술보유상황 등)에 적합하여야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제한경쟁계약이 정부계약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정원, 2008: 118).

3) 지명경쟁입찰계약

□ 지명경쟁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자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임. 정부조달계약을 경쟁에 의함에 있어 일반경쟁이

나 제한경쟁으로만 하게 되면 경쟁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행정부담만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특정하여 지명경쟁이라는 탄력적인 경쟁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임(정원, 2008: 129-130).

- 지명경쟁의 장점으로는 일반·제한경쟁의 경우에 불성실하거나 신용이 없는 자가 경쟁에 참가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결함을 없앨 수 있고, 일반·제한경쟁에 비하여 절차가 간소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가장 적합한 자만을 지명할 수 있다는 것 등임(정원, 2008: 129-130).
- 단점으로는 업체 지명이 특정인에게 고정되고 그 결과 담합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임(정원, 2008: 129-130).

4) 수의계약

-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정부조달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은 계약대상자가 1인밖에 없거나,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불필요하거나,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중소기업 보호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한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정원, 2008: 134)
- 수의계약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으

며, 입찰절차 생략으로 행정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경쟁원리가 배제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예산절감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단점이 있음 (정원, 2008: 134)

<표 2-2>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일반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하고 공정한 절차 · 가격경쟁에 따른 예산절감 가능 · 희망업체 모두에게 입찰기회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및 품질의 부실화 우려 · 입찰기간의 장기화
지명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업체의 응찰을 사전에 배제 · 일반경쟁에 비하여 절차 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만의 입찰 참가로 담합소지 · 지명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확보 어려움
제한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제한하여 부적격업체 사전배제 가능 · 일반경쟁 및 지명경쟁의 단점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제한기준 설정 어려움 · 자격 제한에 따른 업체들의 반발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음 · 입찰공고를 생략하는 등 행정편의를 기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 · 기술개발이나 품질수준 저해 우려 ·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가능 · 자의적 운영기능(객관성 확보문제)
다수공급자공급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 M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 최고가치(Best Value)계약 제고 · 조달참여업체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노력 유도 가능 · 신제품 출시 등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선택권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 존재 · 다른 정부정책과의 충돌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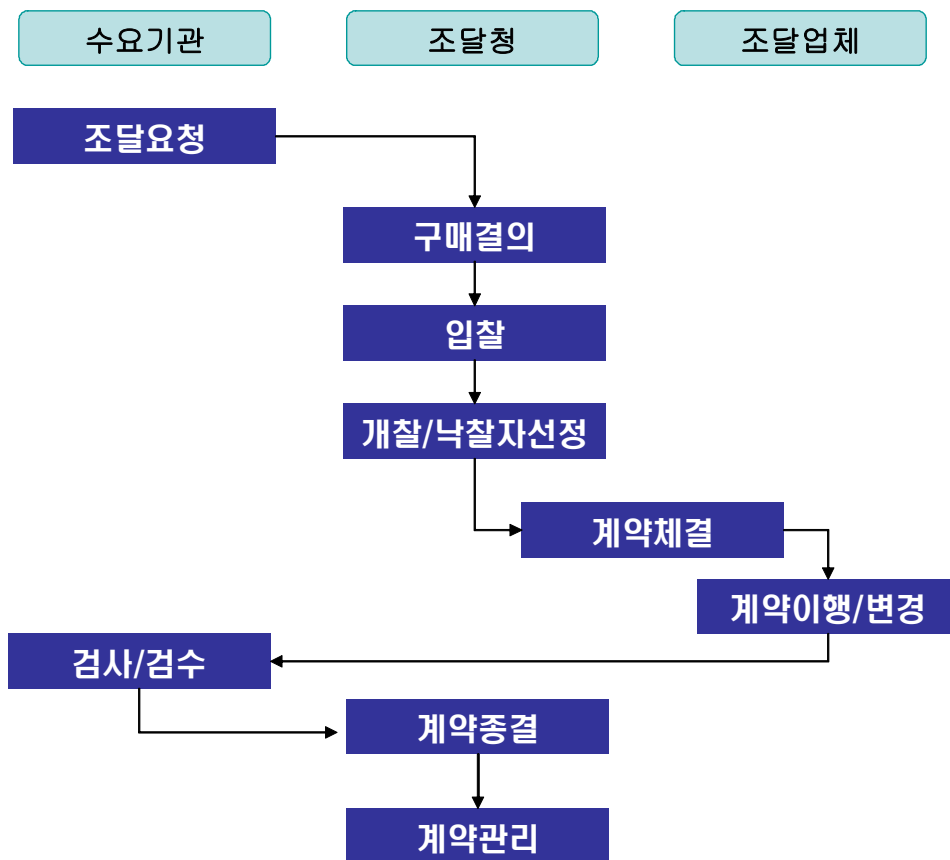
* 자료: 조달연구원 자문회의자료

3. 정부조달계약의 일반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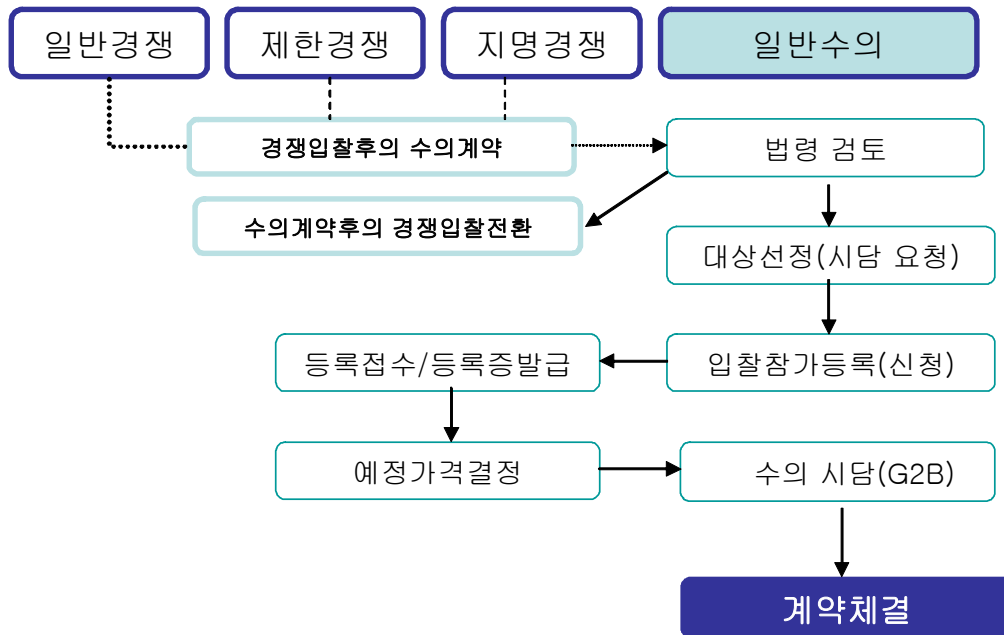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부조달계약의 일반적 절차는 조달계약방법의 결정(제7조) -> 입찰(제8조 내지 제10조) -> 계약체결(제11조 내지 제12조) -> 계약이행(제13조 내지 제14조) -> 계약완료(제14조 내지 제15조) -> 사후관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제27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임.

□ 정부조달계약의 일반적 절차를 도식화 하면 <그림 2-1>, <그림 2-2>와 같음.

<그림 2-1> 물품구매 업무 절차: 일반적 물품구매 업무과정



〈그림 2-2〉 물품구매 업무 절차: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업무과정 개괄



□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수의계약절차

- ① 신규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 요청서 접수(단체가 제출)
- ② 신규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 요청서 검토(조달청 주무과장)
- ③ 관계기관에 해당 단체의 직접 생산여부 조회(조달청 주무과장)
- ④ 수의계약 자격 요건 확인(조달청 주무과장)
- ⑤ 신규 수의계약대상 단체, 수의계약 대상 물품 및 세부품명 결정
(조달청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심의거처 조달청 주무과장)
- ⑥ 단체별 조달요청 물량의 배정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이 품목별 물량배정 심의안을 작성해 구매업무심의회 심의 의뢰)
- ⑦ 수의시담 및 계약

- 수요기관의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 ① 수요기관의 수의계약사유서 접수(조달청)
 - ② 수의계약 요청 대상물품이 의무구매물품이나 중기간 경쟁제품인지 확인(조달청)
 - ③ 수의계약 자격 확인, 관계기관에 해당 물품의 단체 직접 생산여부 조회(조달청 주무과장)
 - 다만, 의무구매물품을 수요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단체 중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조달요청한 경우는 수의계약자격 및 직접생산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제2절 정부조달계약과 보훈·복지단체

1. 정부조달계약상 보훈·복지단체의 지위

-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들의 조달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음.
-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보훈·복지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하나는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조건에 고용평등 준수와 적극적 조치 도입을 명기하도록 하는 정부계약준수방식(김경희, 2005: 18)임.
 - － 미국의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 11246(Executive Order 11246)을 통해 1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연방정부와의 계약자 및 하청계약

자는 Affirmative Action 이행을 위한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 다른 하나는 정부조달계약의 당사자의 보훈복지단체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후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반경쟁계약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은 동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사유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음.¹⁾
 - 이 중에서 국가가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유는
 - 동 규정 7호의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 그리고 8호의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중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1) ①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②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③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④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기타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⑥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⑦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⑧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등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이 정부가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 중요한 두 가지 측면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보완도 포함함.
 - 첫째,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라도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둘째, 법률 제32조는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법률 제1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입찰자격이 있는 자만이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음.

2. 정부조달계약상 수의계약 대상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1) 보훈·복지의 개념

- 정부조달에서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보훈 및 복지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보훈과 복지를 모두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보훈과 복지를 별개의 차원으로 보는 입장임.

- 보훈과 복지를 별개의 차원으로 보는 입장은 보훈이 지닌 상징적인 측면을 강조함.
 - 일반적으로 보훈이란 국민의 국가에 대한 공헌에 대한 보답행위로 간주되는데, 구체적으로 보훈의 성격은 a) 국가공동체의 성원이 행한 국가를 위한 공헌, 즉 공헌에 대한 보답행위(김종성, 2005), b)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이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교훈을 학습(정숙경, 2007)토록 하여 자손들에게 향구적으로 존중되게 하는 행위(김종성, 2005), 그리고 이를 통해 c) 사회적 통합기능(유준기, 2007)을 수행하는 행위임.

 - 결국 보훈 정책은 국가의 존속과 유지,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정책(유영옥, 2005: 6)으로서, 이 점에서, 보훈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훈의 대상자가 행한 공헌에 대해 자신 및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토록 함과 아울러 그들의 헌신에 대한 미래적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성격의 정책(김창국, 2008; 이호용, 2007; 유영옥, 2005)을 지님.

- 이에 비해, 사회복지는 공적 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빈정책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봄(김강녕, 2006).
 -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보훈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가의 존립 및 정체성의 확보 및 유지 그리고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내에 속한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와 다르다고 주장함.
 - 보훈과 복지를 모두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보는 입장은 사회복지정책을 시장외부에서 기능하는 각종 혜택을 할당하는 기제 개념으로 보고 보훈 대상자의 선정도 Gilbert와 Terrell가 주장한 할당원리(귀속적 욕구의 충족, 보상의 실시, 진단적 차별화의 집행,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의 충족)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음(김상균·정이윤, 2004: 10).
 - 우리나라 국가보훈제도의 특징은 희생자뿐만 아니라 공훈자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전쟁시가 아닌 평화시의 희생자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군인이 아닌 민간이 희생자 및 공로자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임(김용하, 2004: 10 in 김상균 정이윤, 2004: 6).²⁾
 - 현행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특성, 특히 공무상의 공헌 뿐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을 하고 대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게 적절하고 형평적인 보상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보훈대상자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의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임(김상균·정이윤, 2004: 10).

2) 정부조달계약법상의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 정부가 보훈·복지단체와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7호의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 8호의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중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

2) 보훈관련 법률별 보훈정책대상

관련법률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순국선열·애국지사 (이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상) 전몰군경·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6·25참전제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공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후유의증(20개질병) 환자 (13개질병 환자는 전·공상군경으로 예우) 1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기타 희생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 이상)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특수임무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공로자

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현행법령에 의한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우선구매 혹은 수의계약 규정은 다음과 같음.

<표 2-3> 현행법령상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계약 특례

단체성격	근거 법령	대상 단체	단체 성격	수익사업 허용단체	조달특례	
					대상품목	우선구매/ 수의계약
국가유공자단체 (회원)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1조)	법인 (제4조 제1항)	이 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제7조의2 제1항)	직접 생산물품 (제7조의2 제5항)	수의계약 가능 (제7조의2 제5항)
국가유공자단체 (비회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제54조 1항)	법인 (제54조 2항)	수익사업 (제58조 5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9조 제1항)	법인 (제9조 제1항)	수익사업 (제13조 5호)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별법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18조제1항)	법인 (제18조 제2항)	-	-	-
	대한민국제향군인회법	대한민국제향군인회 (제2조 제1항)	법인 (제2조 제1항)	단체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제4조의2 제2항 6호)	-	-
	군인공제회법	군인공제회	법인 (제2조 제1항)	단체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제14조제2항)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인 (제2조)	수익사업 (제6조 9호)	-	-
기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수익사업	직접 생산품	우선발주/구매

<표 2-4> 현행법령상의 보훈단체

근거 법령	대상 단체	단체성격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1조)	법인(제4조 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제54조 1항)	법인(제54조 2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제9조 제1항)	법인(제9조제1항)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18조제1항)	법인(제18조제2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제2조 제1항)	법인(제2조 제1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인(제2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복지공장)	

<표 2-5> 보훈대상별 현황 (2009.01.31현재)

구분	계	본인	유족	
합계	521,188	370,823	150,365	
국 가 유 공 자	계	514,803	365,275	149,528
	소계	6,650	205	6,445
	건 국 훈 장	4,762	166	492
	건 국 포 장	506	14	1,357
	대 통 령 표 장	1,382	25	142,552
	소계	304,631	162,079	102,659
	전몰순직·전공상군경	202,538	99,879	27,827
	무 공 수 훈 자	66,111	38,284	1,631
	보 국 수 훈 자	20,132	18,501	218
	재일학도의용군인	299	81	142
	4·19 혁명희생자	382	240	25
	4·19 혁명공로자	181	156	10,033
	순직·공상공무원	14,971	4,938	17
	특별공로순직자	17	0	217
	6·18자유상이자	368	151	314
	소계	952	638	130
	지원공상·순직군경	612	482	184
	지원공상·순직공무원	340	156	0
	6·25참전유공자	202,202	202,202	539
	5·18 민주 유공	계	4,043	3,504
사망·행불자		207	0	262
부 상 자		2,620	2,358	
기타희생자		1,216	1,146	70
특수임무 수행자	계	2,342	2,044	298
	사망·행불자	0	0	0
	부 상 자	0	0	0
	공 로 자	2,342	2,044	298

* 출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제3장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제도 현황/실태조사 분석

제1절 국내 보훈 · 복지단체 정부조달관련 법제도 분석

1. 정부조달계약법 관련 수의계약 법제도 분석

- 일반적으로 정부조달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계약 상대자가 1인 밖에 없거나,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불필요하거나,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중소기업보호 등 특수목적에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은 제26조 내지 제29조의 4개 조항으로 총 42가지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26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보훈 · 복지단체 등 특정단체와 관련된 수의계약의 근거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음.

해당조문	대상단체	단체수	승인기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바목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16	국가보훈처	
	제8호	다목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주)}	3	국가보훈처
		라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12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마목	상이단체	1	국가보훈처
		바목	장애인 복지단체	13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합계			45	-	

주) 재향군인회, 보훈복지의료공단, 고엽제전우회

- 이상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조달청은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2008.12.30 개정)에 규정된 51개 물품에 대하여 이상의 단체와 물량 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수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51개 물품에 대하여 일반경쟁과 보훈·복지단체 물량으로 배분(80:20)하고 이러한 20% 물량배정 범위 이내에서 각 단체별로 분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별로는 물량의 0.1~20%(신규단체는 5% 이내) 이내, 물품은 1~17개 이내에서 물량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보훈, 복지, 비영리단체 등 특정단체 관련 수의계약 법제도 분석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단체에는 장애인복지단체와 국가유공자단체 및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과 사회복지법인 및 특별법인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특정단체를 수의계약 사유로 하는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한다고 규정(개정 2008.2.29)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³⁾

3) 장애인복지법 제44조는 삭제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2008년 3월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다.

- 이상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바목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2008년 3월에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제4항에는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2) 국가유공자단체 및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 및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등과 관련된 수의계약사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중 국가계약법령 이외의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단 1개 단체뿐인 것으로 파악되며, 나머지 단체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 근거	수의계약품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 16개 시도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설립법 제7조의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22개 품목
자활용사촌(1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 자활용사촌지원훈령(총리훈령) 	47개 품목
고엽제전우회(1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5개 품목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는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이며, 동 법률 제7조의2 제1항과 제5항에서는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설립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앞에 정의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에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상의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1개라 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유공자자활용사춘지원규정 제11조에서는 해당 자활용사춘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익계약을 희망할 때 수익계약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외에는 수익계약에 대한 관련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3)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1항과 제2항에는 법인의 수익사업 허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과의 수익계약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명시하는 바는 없음.

-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라목(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서만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4) 특별법인

- 특별법인이란 개별 법률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로서 설립과 관련된 특정의 개별 법률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게 되며, 주로 공기업이나 공익관련 단체들이 속하게 됨.
- 현재 대표적으로 정부조달 수의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인데, 이들 단체들은 개별 법률 등에 의해 성립된 법인체로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단체라기 보다는 특별법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사료됨.

구 분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 근거	수의계약품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공단법 제22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0개 품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3개 품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법 제6조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수익사업 수행과 법 제22조에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항에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수행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각각의 개별 법률에는 해당 특별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8호 다목에서만 규정

5) 소결 : 현행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평가

- 이상에서 살펴본 특정단체 중 장애인복지단체와 국가유공자단체 등 2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항과 제8항 이외에는 국가조달상의 수의계약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단체와 국가유공자 단체 등 2개 단체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외에 수의계약 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 이들 단체 또는 단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개입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로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제2절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관련 현황분석

1.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운영경과

- 1965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제도 도입
 - 종전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영세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농어촌의 유희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조합단체와 새마을공장이 생산하는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토록 제도 신설

- 1987년 민주화 운동, 1993년 최초의 문민정부 등장 등으로 과거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의계약 추가 신설
 - 1996년 12월 31일 상이군경회 및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하여 수의계약 근거가 추가되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마목 및 바목 신설)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요청이 급증하기 시작

- 2000년 5월 10일 단체수의계약 물량에 대하여 조합과 보훈·복지단체간 물량확보 경쟁이 점점 과열되어 물량배정제도 및 도입·시행
 - 조합과 보훈·복지단체가 상호 합의한 경우는 배정비율 인정하지만,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전체 단체수의계약(중소기업조합) 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보훈·복지단체에 배정

- 2007년 1월 1일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 폐지

-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각종 보훈·복지단체로부터 수의계약요청 급증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대비하여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정(2006년 12월 29일)
 - 1개 단체별 물품수를 기존 3개에서 2개까지로 축소(기존 단체의 물품수 인정)하고, 신규단체는 1개 단체별 5% 범위내에서 배정하는 등 물량배정기준 구체화
 - 물량배정 대상물품은 그 동안 물량배정을 수행하던 배전반 등 58개 물품으로 한정하는 등 배정물품 확대를 제한하는 근거 마련
- 2008년 4월 2일 보훈·복지단체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관련 수의계약 개선 노력
 - 신규수의계약 요청 요건 강화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제재기간 종료 후 1년간 신규수의계약 요청 제한 등
 - 기존 단체간 물량배정기준을 조정시 고려사항 명시 : 근로자 중 상이자, 장애인의 인원 및 수의계약 수혜기간 등 고려
 - 최근 2년간 계약실적이 없는 물품은 수의계약대상물품에서 제외
 - 담당공무원에게 공갈, 협박,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행동 등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
 - 수요기관이 특정 보훈·복지단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한 물량이 연간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때에는 단체배정 총 물량 20%를 감축

- 수요기관이 지정하여 수의계약한 물량은 보훈·복지단체 배정물량에서 제외됨.
- 예정가격결정은 경쟁계약 가격수준으로 결정함을 명문화함.
- 2008년 12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
 - 각종 제도개선 요구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단체에 장애인복지시설 추가(제2조 제4호), 수의계약 대상에 청소 등 일반용역 추가(제16조 제1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 물품(의류 등 18개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대상 단체조정(제5조 제2항)

2. 보훈·복지단체 계약실적

(1) 일반계약 현황

- 보훈복지단체 대상물품이 주로 내자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자물품에 대한 경쟁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중을 살펴보면, 5년전인 2004년 53.2%보다 2008년 현재 26.9%로 점차 감소되었음.
- 이는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면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어서, 단체수의를 제외한 수의계약만 살펴보면 2004년 14.1%에서 2008년 26.9%로 단체수의 폐지에 따라 절대적인 수의계약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표 3-1〉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91,100	96,876	107,608	132,295	150,556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쟁 계약	소계	42,620	48,239	48,344	97,919	110,042
	(비율)	(46.8)	(49.8)	(44.9)	(74.0)	(73.1)
	일반경쟁	38,773	44,192	41,973	73,497	76,876
	(비율)	(42.6)	(45.6)	(39.0)	(55.6)	(51.1)
	지명경쟁	609	96	48	368	297
(비율)	(0.7)	(0.1)	(0.0)	(0.3)	(0.2)	
	제한경쟁	3,238	3,951	6,323	24,054	32,869
(비율)	(3.5)	(4.1)	(5.9)	(18.1)	(21.8)	
수의 계약	소계	48,480	48,637	59,264	34,376	40,514
	(비율)	(53.2)	(50.2)	(55.1)	(26.0)	(26.9)
	단체수의	35,655	34,421	29,779	0	0
(비율)	(39.1)	(35.5)	(27.7)	(0.0)	(0.0)	
	수의	12,825	14,216	29,485	34,376	40,514
(비율)	(14.1)	(14.7)	(27.4)	(26.0)	(26.9)	

□ 이를 구체적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제한경쟁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비중이 2007년에는 74.0%에서 2008년에는 79.8%로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수의계약의 개선방안으로 보훈·복지단체간의 경쟁제도를 고려하였을 때, 중기간 경쟁제도의 활성화에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함.

<표 3-2> 최근 제한경쟁 사유별 비중

(단위 : 억원)

제한경쟁 사유	2007			2008. 12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계	3,892	24,054	100.0	4,827	32,869	100.0
제조·용역실적	468	2,884	12.0	394	4,528	13.8
영업소재지	1,014	1,121	4.7	956	1,013	3.1
중기간경쟁	2,222	17,805	74.0	3,260	26,244	79.8
기타	188	2,244	9.3	217	1,084	3.3

<표 3-3> 최근 수의계약 사유별 비중

(단위 : 억원)

수의계약 사유		2007			2008. 12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합 계		34,658	34,376	100.0	25,959	40,514	100.0
기술 관련	소 계	7,536	13,715	39.9	7,514	15,655	38.6
	특허, 실용신안 등	5,259	6,298	18.3	4,815	5,945	14.7
	중소기업청 우선구매	2,145	7,094	20.6	2,553	9,454	23.3
	국산신기술제품	71	143	0.4	59	53	0.1
	품질·환경등 인증제품	61	180	0.5	87	203	0.5
정책 관련	소 계	24,830	6,374	18.5	16,085	4,833	11.9
	단체수익	-	-	0.0	-	-	0.0
	소액수익	24,076	4,128	12.0	15,067	2,574	6.4
	보훈복지단체	619	2,023	5.9	799	1,915	4.7
	농공단지 입주공장	135	223	0.6	219	344	0.8
기타	소 계	2,292	14,287	41.6	2,360	20,026	49.4
	2회이상유찰	1,340	11,240	32.7	1,688	16,996	42.0
	생산자 1인	235	1,362	4.0	233	1,947	4.8
	부품공급 및 설비확충	155	354	1.0	148	258	0.6
	천재지변 등	124	847	2.5	53	339	0.8
	기타	438	484	1.4	238	486	1.2

- 수의계약 사유 중 정책과 관련된 사유만 고려한다면,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 비중이 2007년에는 전체의 5.9%, 2008년에는 전체의 4.7%에 해당함.

(2) 단체별 계약실적

- 조달청 등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사유 42개 항목 중 22개 항목에 근거하며, 이를 본 연구의 대상인 보훈·복지단체들을 사유로 하는 수의계약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3-4>과 같음.

<표 3-4> 수의계약 가능단체

단체명	설립근거	계약품목	근거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승인/지정
농공단지입주공장	농어촌정비법	농공단지입주공장 직생산물	제26조 제1항 6호 라	
자활용사촌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유공자집단 자활집단촌 직생산물	제26조 제1항 7호 바	국가보훈처 /관보게재
특별법인	특별법에 의한 법인	특별법인 직생산물	제26조 제1항 8호 다	방위사업청장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직생산물	제26조 제1항 8호 라	소관부처장 /정관
국가유공자단체 (상이단체)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상을 입은 자의 직생산물	제26조 제1항 8호 마	보건복지부 /관보게재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단체 직생산물	제26조 제1항 8호 바	보건복지부 /관보게재

- 이를 조달청에서는 정책적으로 보훈·복지단체를, 크게 보훈단체, 장애인 단체, 복지법인으로 분류하고, 보훈단체는 21개, 장애인단체는 15개, 복지단체는 14개 단체 등으로 대상으로 수의계약체결을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단체별 수의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단체수와 수의계약실적이 큰 변동이 없이 평균적으로 50여개 단체가 연간 2천여억원의 실적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보훈단체의 경우는 단체수와 계약금액이 변동이 거의 없으나, 장애인 단체와 복지법인의 경우 단체수의 변동은 미미하나 계약금액의 경우 2007년부터 약 2배 정도 늘어났음.
 - 세부적인 단체별 계약실적 현황(부록 참조)을 살펴보면,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형 단체가 7개 단체, 사단법인이 25개 단체가 있었으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납품을 하고 있는 단체는 총 80여개 단체 중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로 최근 2년 이상은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음.

〈표 3-5〉 최근 5년간 보훈·복지단체수 및 수의계약실적 (조달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단체수	계약금액	단체수	계약금액	단체수	계약금액	단체수	계약금액	단체수	계약금액
계	48	153,163	46	144,263	50	144,330	46	202,251	46	191,457
보훈단체	21	117,062	21	109,210	21	101,999	19	124,436	20	101,100
장애인단체	13	12,064	13	15,738	14	17,722	15	31,356	13	33,713
복지법인	14	24,037	12	19,315	15	24,609	12	46,459	13	56,644

- 방위사업청에서 제공된 최근 3년간 수의계약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품목 수는 1~8개, 계약금액은 최저 5천만원에서 400억까지 규모가 다양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6〉 최근 3년간 보훈·복지단체별 수의계약현황

(단위 : 억원, 건)

구분	2006			2007			2008			
	품목명	건수	계약금	품목명	건수	계약금	품목명	건수	계약금	
자 활 용 사 촌	대구성당용사촌	모래주머니	1	1	모래주머니	1	2	모래주머니	1	1
	대방동용사촌	모양말	1	77	모양말	1	85	모양말	1	74
	부산의용촌	운동복, 방한복, 전투복, 파카외피, 모장갑	5	150	운동복, 방한복, 전투복, 파카외피, 모장갑	5	171	운동복, 방한복, 전투복, 파카외피, 모장갑	5	181
	신생용사촌	잠바, 운동복, 파카외피, 우의, 위장포	5	47	잠바, 운동복, 파카외피, 우의, 위장포	5	62	잠바, 운동복, 파카외피, 우의, 위장포	5	105
	십자성마을회	붕대, 거즈, 스펀지	1	10	붕대, 거즈, 스펀지	1	10	붕대, 거즈, 스펀지	1	9
	울산병영용사촌	프레스 제품, 하네스류	1	2	프레스 제품, 하네스류	1	4	프레스 제품, 하네스류	1	4
	평화용사촌	조미김, 운동복, 전투복	3	76	조미김, 운동복, 전투복	3	78	조미김, 운동복, 전투복	3	90
	화랑용사촌	동내의, 목도리, 전투화끈	3	136	동내의, 목도리, 전투화끈	3	135	동내의, 목도리, 전투화끈	3	150
	전북무용촌	방한화, 지뢰보호용 전투화, 전투화	3	54	방한화, 지뢰보호용 전투화, 전투화	3	42	방한화, 지뢰보호용 전투화, 전투화	3	37
	보은용사촌				치킨너겟	1	14	치킨너겟	1	27
	무궁화용사촌							방상내피	1	3
특 별 법 인	보훈복지의료공단	런닝	1	78	런닝	1	103	런닝	1	92
	군인공제회	전투복, 천막류, 카바류, 배낭류, 침낭, 주스류, 짬, 참기름	8	420	전투복, 천막류, 카바류, 배낭류, 침낭, 주스류, 짬, 참기름	8	440	전투복, 천막류, 카바류, 배낭류, 침낭, 주스류, 짬, 참기름	8	388
	재향군인회	꼬리곰탕, 전투화땃굽, 계급장류	3	178	꼬리곰탕, 전투화땃굽, 계급장류	3	168	꼬리곰탕, 전투화땃굽, 계급장류	3	89
	농협	고춧가루, 김치류	2	343	고춧가루, 김치류	2	259	고춧가루, 김치류	2	240
국가 유공자 단체	상이군경회	김치류, 공구상자, 안테나베이스, 주방기구류	4	84	김치류, 공구상자, 안테나베이스, 주방기구류	4	91	김치류, 공구상자, 안테나베이스, 주방기구류	4	93

구분	2006			2007			2008			
	품목명	건수	계약금	품목명	건수	계약금	품목명	건수	계약금	
사회 복지 법인	애국단체원	초도정복, 근무복류, 전투복	3	15	초도정복, 근무복류, 전투복	3	25	초도정복, 근무복류, 전투복	3	29
	월남참전전우회	퀵팅원단, 운동복	2	16	퀵팅원단, 운동복	2	17	퀵팅원단, 운동복	2	23
	노인생활지원재단	황태찜, 황태무침	1	25	황태찜, 황태무침	1	25	황태찜, 황태무침	1	22
	미망인 모자복지회	팬티, 전투복	2	130	팬티, 전투복	2	130	팬티, 전투복	2	128
	위훈용사복지회							운동복	1	5
장 애 인 복 지 단 체	고엽제전우회	파인애플, 주스 전투복, 런닝	3	36	파인애플, 주스 전투복, 런닝	3	42	파인애플, 주스 전투복, 런닝	3	53
	동천모자	근무모류	1	0.5	근무모류	1	3			
	지체장애인복지회							전투복, 방상내피	2	6
	지체장애인협회 (용산)							전투복, 방상내피	2	6
	지체장애인협회 (홍천)							전투복, 방상내피	2	6
	장애인문화협회							전투복, 방상내피	2	6

- 품목별 계약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조미김, 주스류, 참기름, 고춧가루, 김치류 등 급식류가 8개, 잠바 등 피복류 및 일반물자가 22개 단체와 주로 계약하고 있으며, 용사촌, 군인공제회나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 19개 업체는 2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납품계약을 맺고 있음.
- 최근 3년 동안 개별단체가 취급하고 있는 동일품목을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었으며, 2007년에는 보은용사촌이, 2008년에는 무궁화용사촌,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체장애인협회(용산, 홍천), 장애인문화협회 등 6개 단체가 새로이 진입하여 납품하고 있음(장애인 단체 급증).

(3) 물량배정 및 직접생산 현황

- 조달청에서는 지금까지 보훈·복지단체를 대상으로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수행하여 왔는데, 물량배정대상은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별표1>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현재 51개 물품이 선정되어 있음.
- 물품배정대상은 2008년 6월에 한 차례 정비과정을 거친 상태이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현 배정규격을 반영한 경우, 3자단가 품목로 제외해야 하는 경우 등을 이유로 6개의 품목을 일부조정하였음.

<표 3-7> 수의계약 물량배정대상 (조달청)

(2008.12.30개정)

순번	물 품 명	제품분류	배정청	비 고
1	배전반	전기	본청	
2	자동제어반	전기	본청	
3	계장제어반	전기	본청	
4	가로등주	전기	본청	
5	전등기구	전기	본청	
6	경관조명	전기	본청	
7	가로등기구	전기	본청	
8	유량계	전기	본청	
9	조명타워	전기	본청	
10	구내 방송장치	전자	본청	중전명: 방송장치 중기간 경쟁제품지정내역 반영으로 수정
11	영상감시장치(CCTV)	전자	본청	
12	하수처리장치	기계	본청	중전명: 수처리장비 중기간 경쟁제품지정내역 반영으로 수정
13	무대기계	기계	본청	
14	무대조명	전기	본청	
15	공기여과기	기계	본청	
16	공기조화기	기계	본청	
17	실물모형	전시	본청	
18	영상홍보물(전시, 홍보)	전시	본청	

19	버스승강장	토목	본청	
20	인쇄물	기타	본청	
21	동잠바(경찰용)	섬유	본청	
22	칼라팬티	섬유	본청	
23	이부자리	섬유	본청	중전명: 침구류 중기간 경쟁제품지정내역 반영으로 수정
24	일반장갑(군용)	섬유	본청	
25	의류(전·의경용)	섬유	본청	중전명: 의류 현 배정규격 반영으로 수정
26	우의(판초우의포함)	섬유	본청	
27	양말(모양말)	섬유	본청	중전명: 양말 현 배정규격 반영으로 수정
28	도로표지판	토목	본청	
29	돌망대	토목	본청	
30	용접철망	토목	본청	
31	석재가공품(조경석 제외)	토목	본청	중전명: 석재가공품(판재 등) 3자단기품목 제외로 수정
32	웬스	토목	본청	
33	사무실용가구(목제)	가구	본청	
34	방음벽 및 방음판	토목	지방청	
35	호안블럭	토목	지방청	
36	가로판매대	토목	지방청	
37	냉각탑	기계	지방청	
38	냉난방기	기계	지방청	
39	보일러	기계	지방청	
40	주차기계장치	기계	지방청	
41	취사용기구	기계	지방청	
42	팬코일유니트	기계	지방청	
43	항온항습기	기계	지방청	
44	흡수식냉동기	기계	지방청	
45	흡수식냉온수기	기계	지방청	
46	GHP냉난방기	기계	지방청	
47	가로등자동점멸기	전기	지방청	
48	자동기상관측장비	계측	지방청	
49	과학기기	교구	지방청	
50	축구화(군용)	섬유	본청	
51	철제관물함(군용)	가구	지방청	

- 국가보훈처 자문회의 제공자료에 의하면, 자활용사촌(전국 28개소, 총 712가구, 가족수 2,507명)의 경우 수의계약이나 우선구매를 맺고 있는 생산품목은 각각 47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나 물량배정대상품목이나 일반적인 수의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는 현재 물량배정대상을 1개 단체당 2개 물품에 한정하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물량배정에 참여해 온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은 10개 단체는 3개 이상을 배정받고 있음.
 - 자동제어반(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이나 배전반(전기공업협동조합)은 관련 조합이 다름에도 통합하여 배정하고 있어 17개 단체가 소량의 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실정임(보훈·복지단체 대표간담회자료, 2009.2.19).
- 보훈·복지단체에게 물량배정을 할 경우에는 그 단체가 직접생산하여야 하는데, 직접생산을 확인하는 데에는 생산공장을 보유하는지, 생산시설이 있는지, 생산인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품목별로 달리한 기준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짐(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확인기준, 중소기업청 고시 2009-7, 2009.1.15).
- 보훈·복지단체에서는 생산공장이나 생산시설을 보유하는데 자체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컨소시엄으로 공장 및 시설을 빌리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1-4차 보훈·복지단체 관련 자문회의 내용).
 - 실제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서도 생산공장 항목에 임대공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형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3. 운영상 문제점

□ 예산절감기회의 상실

- 국방대학교 보고서(2007)에 따르면, 2006년도 피복류와 급식류의 일반 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입찰 결과에 의한 낙찰율은 각각 85.5%, 88.0%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결과를 일반경쟁 낙찰율로 전환하여 보면 2006년도에는 전체 방위사업청 수의계약예산 1,717억원 중 249억원을, 5년간은 전체 8,225억원 중 1,19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제한경쟁 낙찰율을 적용해도 각각 206억원, 987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당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에 따라 연간 최소 200억원 이상의 국고절감 기회가 상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여기서 2006년도 피복류 및 급식류의 낙찰율은 G2B에 등록된 입찰 공고 중 피복류 30건(일반경쟁 16건, 제한경쟁 14건)과 급식류 50건(일반경쟁)에 대한 예정가격과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한 낙찰금액을 자료로 활용하였음.
 - 낙찰률=낙찰가격/예정가격
 - 수의계약은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을 동일하게 반영함.

□ 보훈·복지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정부지원 의미 퇴색

- 보훈·복지단체들은 설립취지와는 맞지 않게 주식회사형으로 운영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체의 성격이 바뀌는 형태로 변형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서 조달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지원의 의미가 무색해짐.
 - 보훈백서(2006)에서 자활용사촌 운영결과에 따르면, 부산의용촌의

경우 월 45.4만원을 회원에게 배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사결과 배분하지 않았고, 회원수가 20인 이상이어야 용사촌 기준에 해당되나 실제 재직 회원이 16명에 불과하였으며, 전북부용촌은 3명으로 나타났다.

<표 3-8> 보훈·복지단체별 회원수와 수익금 배분현황

단체명		설립연도	등록수	재직수	비고
농공단지	무궁화보훈복지	1994	0	0	보훈단체 아님
자활용사촌	대방동재활용사촌	1961	63	63	
	부산의용촌	1972	62	16	수익금 배분 없음
	신생중상이용사촌	1972	35	0	회원명단 빠짐
	전북무용촌	1996	22	3	
	평화용사촌	1987	27	27	월 약 40만원 배분
	화랑용사촌	1964	38	38	준조합원 : 20명
국가유공자단체	상이군경회	2001	5	5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	2004	8	8	
	미망인모자복지회	1972	33	6	일반복지단체 성격
	월남참전전우회	2000	파악불가	0	현대가동중단
장애인단체	고엽제전우회	2004	파악불가	파악불가	지부별 월30만원 송금
	근로시설 동천모자	2002	0	0	보훈단체 아님

* 자료 : 국방대학교(2007)

- 사회복지법인인 미망인모자복지회의 경우, 국가유공자단체는 아니지만 설립취지나 명칭에서 기대되는 것과는 달리 전국 전몰군경미망인이 2005년 기준 48,781명인데 반해 등록회원수는 33명, 재직회원수는 6명 뿐이었음.
- o 각 단체들의 조달계약금액 측면에서 특별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수의 계약은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난립하고 있는 복

지단체들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와 같은 단체들은 사회에 환원하는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 3-5>에서 2007년부터 장애인단체와 복지단체의 계약금액을 급증하는 현상을 볼 수 있음.
- 미망인 복지회의 경우 매년 100억원대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지만, 군경미망인 지원 등 장학금 명목으로 1988년 이후 매년 0.5억원 규모씩 총 5.2억원 만을 지급했다는 사례로 보았을 때, 조달계약을 통해 얻을 수익을 설립목적에 완전히 부합하게 환원하는 단체는 적을 것으로 보임.

□ 수의계약 대상물품 확대가능성에 따른 조달기회비용 누적

- 조달공공성을 위해 보훈·복지단체의 공공조달에 참여하여 좀더 조직운영상 도움을 주고자 운용하고 있는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오히려 보훈·복지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생산하기 어렵거나 수요성이 떨어져 생산하길 원하지 않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환요구사태가 많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용역부문으로 물량배정 대상의 영역을 확대하자는 요구까지 늘어난 상황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조달비용절감효과는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훈·복지단체들은 적용대상이 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경쟁을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확정짓는데 더 관심이 있고, 이는 단체들이 본질적으로 조달효율성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경쟁을 회피하는 현상임.
- 이들은 계약수익이 없게 되면 수시로 교체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런 교체요구가 강화될수록 수의계약대상품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기회비용은 누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표 3-9〉 단체별 물량배정대상 품목 교체 요구

(단위 : 개, %)

구 분	물량배정 단체(A)		교체 희망 단체(B)		비 율(B/A)	
	단체수	품목수	단체수	품목수	단체수	품목수
보훈단체	17	60	2	9	11.8	15.0
장애인단체	11	28	1	1	9.0	3.6
사회복지단체	9	25	1	1	11.1	4.0
합 계	37	113	4	11	10.8	9.7

- 상이군경회(8) : 무대조명→조명장치, 공기여과기→경관조명기구, 냉각탑→경비업, 냉 난방기→건축물 일반청소업, 보일러→가로등기구, 팬코일유니트→시설물유지관리, 흡수식냉동기→자료처리 업무, 흡수식냉온수기→실물모형
- 총무용사촌(1) : 주차장치→경관조명기구
- 장애인고용안정협회(1) : 공기조화기→계장제어장치
- 애국단체원(1) : 계장제어장치→경관조명

제3절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관련 실태분석

1. 보훈복지단체 조사결과

1) 조사개요

□ 본 조사를 통해 「보훈·복지단체 정부수의계약제도」의 물품 생산 및 공급 주체이자 주요 정책대상인 수의계약 당사자들의 단체특성을 이해하고, 현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조사대상은 2008년도 기준 수의계약 당사자인 46개 보훈복지단체이며, 2009년 2월 10일부터 23일,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4일⁴⁾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4) 2차로 실시된 설문조사결과는 본연구 관련 정보가 응답기관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응답단체의 bias가 내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응답에 대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응답에 참여한 단체는 21개 단체로 전체 응답률은 45.7%에 불과. 따라서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응답경향에 대한 다면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음.

- 이러한 낮은 응답 참여율은 본 조사가 정부의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개선 움직임과 맞물린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대상 단체의 조사 자체에 대한 응답기피,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부담, 조사내용과 단체 내부 자료의 비적합성 등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조사대상 및 응답에 참여한 단체의 일반적 분포

- 자활용사촌 11개 단체, 사단법인 형태의 장애인단체는 4개 단체, 사회복지법인은 4개 단체임. 고엽제전우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2개 단체가 응답에 참여
- 전체적으로 보면 보훈단체 13개, 장애인단체 8개로 구분됨.

〈표 3-10〉 조사대상 및 응답단체 수

단체구분	수의계약 단체수	응답단체 수
1. 사회복지법인	12	4
2. 장애인단체(사단법인)	14	4
3. 자활용사촌	16	11
4. 특별법 설립 법인	3	2
5. 상이단체	1	-
계	46	21

2) 단체운영 및 물품생산 현황

□ 단체운영 특성

- 9개 단체의 운영기간 : 평균 17년 9개월(최소 10개월, 최대 36년 3개월)
- 단체의 대표기능(중복응답)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동질적 집단으로 구성된 단체의 특성이 반영되어,
 - 회원의 권익증진(17)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었으며,
 - 보건복지서비스 제공(6), 제품생산 및 판매(5), 회원간 친목증진(4) 순
- 단체 회원구성(중복응답)
 - 개인회원의 경우 국가유공자(11), 상이군경(11), 경증장애인(6), 중증장애인(5)이었으며, 최소 14명에서 최대 11만명의 회원으로 구성.
 - 지부를 포함해 기관회원의 경우 1개 단체당 평균 227여개의 회원기관이 있으며, 최소 1개에서 최대 2,620개의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음.
- 단체 운영 인력
 - 1개 단체당 평균 41명의 상근직원이 근무(최소 10명, 최대 153명)
 - 상근인력 중 사무국 행정인력은 단체당 평균 9명이었으며, 생산인력의 경우 평균 35명으로 제시됨.

〈표 3-11〉 응답단체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내 용
1. 단체 운영기간	최소 : 10개월 최대 : 36년 3개월 평균 : 17년 9개월
2. 단체 대표기능 (2개까지 중복응답)	
회원의 권익증진	17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6
회원간 친목 증진	4
제품 및 서비스 생산, 판매	5
3. 회원 구성	
1) 회원 수(개인)	평균:15,753명 (최소:14명, 최대:11만명)
2) 개인 회원 특성	
국가유공자	11
제대군인	2
상이군경	11
중증장애인	5
경증장애인	6
3) 회원기관 수	평균:227개 (최소:1개, 최대:2620개)
4. 상근직원 수	평균:41명 (최소:10명, 최대:153명)
1) 사무국 행정직원	평균:9명 (최소:2명, 최대:47명)
2) 생산인력	평균:35명 (최소:5명, 최대:125명)
3) 기타인력	평균:23명 (최소:1명, 최대:90명)

- 단체의 설립유형이나 대표기능, 회원구성을 통해 대략적인 단체의 특성을 알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단체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 단체의 운영방향이나 사업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단체운영의 지향성이 보다 더 사회적인 측면에 있는지 경제적인 측면에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해당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경제적 지향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① ④ ⑨번 문항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단체가 직접생산 단체임을 고려할 때, 물품생산이 단체의 주된 활동 중 하나이나 단체 수익이 일반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 아닌 정부조달에 의존하고 있음.

- 21개 응답단체 중 수익사업에 의한 이윤확대를 최대한 지향한다는 응답은 8개 단체이며 나머지 8개 단체는 보통 수준

〈표 3-12〉 응답단체의 사회적경제적 지향성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적 활동이 우리단체의 주된 사업 중 하나이다.	4	3	3	3	7
② 우리단체는 정부나 특정 개인에 의해 운영되기보다 자발적 참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2	1	4	7	6
③ 우리단체는 회원들의(혹은 직원) 노력과 제한된 능력에 의존하고 있어서 때때로 재정적 위기를 감내해야 한다.	0	0	2	10	9
④ 우리단체의 사업수익의 증대는 민수 시장에서의 판매로부터 나온다.	6	3	3	4	2
⑤ 우리단체의 사업수익의 증대는 정부의 구매(조달)로부터 나온다.	0	0	1	8	12
⑥ 우리단체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지역사회나 특정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2	3	3	9	4
⑦ 우리단체의 운영권은 지분의 소유여부에 기초하지 않는다.	6	1	4	6	4
⑧ 우리단체의 이사회(운영회)에는 서비스이용자와 회원이 참여한다.	0	11	0	4	5
⑨ 우리단체는 수익사업에 의한 이윤 확대를 최대한 지향한다.	2	3	8	7	1
⑩ 우리단체의 수익금은 대부분 고용인들의 급여지급에 활용된다.	1	3	3	12	2
⑪ 우리단체에 근무하는 고용인들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고용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0	7	3	7	4
⑫ 우리단체는 정부보조금 외에 다양한 수입재원의 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1	3	11	5

□ 전체적인 응답경향에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성 보다는 사회적 목적의 지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 평균을 중심으로 보면 최소 30점에서 최대 57점이었고, 응답평균값은 41.1 수준으로 대체로 경제적 지향성과 사회적 목적 지향성의 균형적 혼합을 이루고 있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일정한 속성을 보이고 있음.

□ 단체의 재정 및 재원구조

- 응답 단체의 3년평균 총 수입액은 평균 203억 4천만원이었으며, 최소 11억 2천만원에서 최대 771억 5천만원으로 수입규모면에서도 큰 차이
- 재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 수익사업에 의한 재원비율이 78.4%로 가장 높았으며,
 - 모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충당 역시 23%
 - 정부 보조금(단체운영비 등) 21.7%,
 - 정부 조달에 의한 수입 16%에 이르며 회비에 의한 충당은 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익사업과 정부조달에 의한 수입을 포함하여 제품의 판매를 통한 재원충당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2008년 기준 지출구조
 - 단체당 한해 평균 지출은 221억 3천만원이었는데, 이는 3년 평균 수입액 보다 지출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지출 내역은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비로 29.4%, 생산인력의 임금 지불 20.9%, 단체 유지비에 21.2%, 사무직 인건비에 14.3%가 사용되고 있음.

<표 3-13> 응답단체의 재정 현황

구 분	내 용
1. 재원 구조 (3년 평균)	
1) 총 수입액	평균 : 203억 4천만원 (최소:11억 2천만, 최대:771억 5천만)
2) 재원 구조 (평균)	
정부보조	81억 5천만원 (21.7%)
회비총당	2억 2천만원 (5%)
모금, 기부금	9억 2천만원 (23%)
수익사업	178억 2천만원 (78.4%)
정부조달	12억 8천만원 (16%)
2. 지출 구조 (2008년 기준)	
1) 총 지출액	평균 : 221억 3천만원 (최소:17억 7천만, 최대:771억 5천만)
2) 지출 구조 (평균)	
단체 유지비	21억 (21.2%)
사무직 인건비	26억 (14.3%)
근로자 임금	29억 (20.9%)
목적사업추진비	157억 8천만원 (29.4%)

□ 물품생산 특성

- 정부 수의계약대상은 보훈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여 응답결과를 분석하였음.
- 생산시설 소유형태와 관련된 질문에 있어, 20개 단체가 응답한 가운데
 - 생산시설을 자체적으로 소유한 단체는 16개였으며,
 - 생산시설을 전부 임대한 경우는 4개 단체였음.
- 직접 생산 시설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청에 의한 경우가 9개 단체였으며, 응답 단체를 승인한 해당 정부기관에 의한 경우는 11개 단체였음. 직접생산시설 소유 여부와 이에 대한 확인 정부기관에는 큰 연관성은 없었음.

- **현행 정부 수의계약대상 물품은 51개로 한정된 가운데, 응답 단체들의 직접생산 품목 역시 금속재 울타리, 버스정거장, 정보표지, 안내판, 배전반, 가구, 형광등 및 백열등 기구, 교통신호제어기, 인쇄용 소모품, CCTV, 청소용역 등 27개 품목이 제시됨.**
 - 응답단체 가운데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물품은 수배전반(4개), CCTV(3개), 청소용역(2개), 자동제어반(3개), 백열등(2개) 등이었으며, 나머지는 단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응답단체에서 생산하는 대표 물품의 경우 정부 수의계약 물품 생산에만 주력하는 단체는 3개 단체 정도였으며,
 - 5개 단체는 자체 생산물품에 대해 정부 조달 및 일반시장에서도 판매
 - 또한 1개 단체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해 정부에 조달하는 물품과 일반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분하여 생산함.
- **응답단체들의 자체 생산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거나 중소기업의 품질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등 객관적 품질인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거나, 물품수요기관으로부터의 평가 및 피드백을 받거나, 새로운 기술과 장비도입하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도 많이 기울이고 있음.
 - 단, 전문 업체로부터의 컨설팅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보통 이하의 경우가 많았는데, 전체적인 응답경향과 비교하여 살펴볼 때 이는 품질관리의 노력이 낮다기 보다는 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이해됨.

〈표 3-14〉 생산시설 및 대표 생산품 현황

구 분	내 용		
1. 직접 생산시설 소유형태			
자체 소유	16	(76.2%)	
전부 임대	4	(19%)	
2. 직접 생산시설 확인 정부기관			
중소기업청	9	(42.9%)	
단체 승인기관	11	(52.4%)	
3. 자체 생산품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렇다
1)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의 품질인증	1	0	19
2) 중소기업 품질인증기준의 적용	4	4	13
3)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도입	0	7	14
4) 물품 수요기관으로부터의 평가 및 피드백	0	5	16
5) 전문 업체로부터의 컨설팅	2	9	8
6) 직원들에 대한 기술교육	0	4	17

3) 정부수익계약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익계약을 통한 정부조달 제도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 응답단체들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52.4%)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직업재활 등 고용지원의 방법(23.8%)으로 인식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보상으로 인식한 경우는 19.0%.
 - 기타 사회복지 예산절감을 위한 지원 또는 단체운영을 위한 간접보조 등으로 인식한 경우는 전혀 없었음.

- 응답단체들의 주된 기능이 회원들의 권익증진으로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제도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일관된 응답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부 조달물품의 특징

- 단체들의 주된 정부 조달물품 중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 우선 인쇄와 구내 방송장치의 경우 단체 매출의 100%가 정부조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가로등주, 석재블럭,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청소용역, 형광등 및 백열등 기구, 수배전반, 실물모형은 이들 물품의 조달이 단체 매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함.
 - 또한 조달금액의 규모 측면에서는 ‘실물모형’이 가장 큰 조달품목(1,078.9억원)이었으며 이외 청소용역,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형광등 및 백열등기구, 경관조명기구 순.

□ 응답단체들의 정부조달 물품 생산에 참여하는 인력현황

- 21개 단체의 생산인력 총 인원은 701명이었고, 이는 1개 단체당 평균 33.4명의 생산인력에 해당함.
- 전체 생산인력 가운데 일반근로자가 57.2%로 가장 많았고, 경증장애인이 19.6%, 중증장애인 16.2%, 국가유공자 4.8%, 상이군경 1.9%로 구성. 일반근로자가 역시 57.2%를 차지하고 있어 물품 생산인력에서 보훈복지대상자가 주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움.

- 보훈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를 대별하여 살펴보면,
 - 보훈단체의 경우 최소 20명이상의 생산인력이 고용(특별법인의 경우 지회까지 포함 100명 이상 생산인력)되어 있으며,
 - 장애인복지단체는 최소 8명에서 20명 사이의 생산인력이 고용되어 있어 보훈단체의 생산인력 규모가 장애인단체에 비해 다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정부 조달에 의한 수익금의 활용

- 응답단체들은 단체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하거나 (7개 단체), 생산인력의 임금으로 지불하는데 활용(6개 단체). 이외에 단체운영비(3개 단체)로 활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음.
- 단체운영현황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들 단체의 주된 기능이 회원들의 권익증진에 있고, 수입재원 중 21.7%가 정부보조금(대부분 단체 운영비 지원)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익계약제도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들의 고용 및 경제적 자립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 정부 조달에 의한 수익금이 근로자들의 임금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단체 목적사업비 추진이나 단체운영비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본 조사에서 단체의 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함으로 더 깊이 있는 해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표 3-15〉 정부 수의계약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1. 수의계약제도 목적 인식		
	1순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52.4%)	
	2순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직업재활 등 고용지원 (23.8%)	
2. 주요 조달 물품		
금속재올타리	211억9천만원	35%
버스정거장	45억1천만원	7%
정보표지	161억7천만원	27%
디자인웬스	69억4천만원	11%
안내판	120억4천만원	20%
수배전반 (4)	238억1천만원	52%
자동제어반 (2)	207억7천만원	29%
형광등 및 백열등기구 (2)	338억7천만원	64%
청소용역 (2)	517억8천만원	75%
CCTV (2)	73억8천만원	42%
인쇄	58억3천만원	100%
가로등주	52억8천만원	95%
가구	48억9천만원	76%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429억1천만원	
구내 방송장치	140억9천만원	100%
석재블럭	1713억원	89%
교통신호제어기	117억5천만원	9.3%
실물모형	1078억9천만원	52%
경관조명기구	325억2천만원	15%
3. 조달물품 생산인력		
총 생산인력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일반근로자
701 명	114명	138명
(100%)	(16.2%)	(19.6%)
14명	34명	401명
(1.9%)	(4.8%)	(57.2%)
4. 수의계약(정부 조달) 수익금의 주된 활용		
	1순위) 고용생산인력 임금 (26.1%)	
	2순위) 단체 목적사업 추진비 (23.8%)	

□ 현재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 형태와 내용에 대한 동의정도

- 수의계약 ‘단체를 지정’ 하는 현재의 방법에 대해서는 보통 혹은 동의하는 견해가 많았고, 동의하지 않는 견해는 전무함.

- 그러나 현재 수의계약 단체에 대한 ‘물량배정 방식’ 에 대해서는 보통 혹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았음.
- ‘물량배정된 품목’ 에 대해서는 보통 혹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았으나, 물량배정된 규모나 그 비율에 있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응답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 동의정도가 가장 낮은 물량 배정 규모와 그 비율에 대해서, 1개 단체 당 수의계약 품목을 2개로 제한하는 것 보다 단체로 하여금 신규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유도하기 위해 3~4개 품목으로 수량을 증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 구매비율 또한 상향 조정하되 생산품질에 대한 심사를 병행하도록 해야 함이 제시되었음.
 - 또한 계약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서류기입 사항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그리고, 현재 수의계약 단체 지정방식에 대해 ‘보통’ 수준의 동의를 보여 준 단체는, 특히 복지단체의 경우 수익사업을 전적인 목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닌 사회적 공헌도나 단체 투명성, 역사성, 대표성 등을 파악하는 등 수의계약 단체에 대한 검증을 더 엄격히 해야 함을 제기함.

〈표 3-16〉 현 수의계약 제도 및 문제점 동의 정도

내 용	동의하지 않음	보 통	동의함
1. 현 수의계약 형태 동의 정도			
① 현재 수의계약 단체 지정 방법	0	9	12
② 현재 수의계약 단체에 대한 물량배정 방식	8	8	5
③ 현재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배정 된 품목	4	9	8
④ 현재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배정 된 규모	11	8	2
⑤ 현재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배정 된 비율	10	9	2
2.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동의정도			
① 보훈·복지단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낮은 품질	21	0	0
② 보훈·복지단체의 자체 경쟁력강화 노력의 미흡	15	3	3
③ 수의계약 단체의 직접생산 능력 확인의 어려움	16	4	1
④ 수의계약 대상 단체의 자격기준의 모호	4	7	10
⑤ 특정 보훈·복지단체에 물량배정 집중	14	2	5
⑥ 수의계약 대상 배정 품목의 낮은 수익성	0	10	11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 수의계약제도와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동의정도

- 동 단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미흡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앞서 물품 생산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체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경향과 일치함.
- 또한 수의계약 단체의 직접생산 능력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중소기업청이나 단체 승인, 정부기관으로부터 확인과 점검을 받고 있다는 응답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직접생산 능력을 물리적으로 확인 가능함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수의계약 대상 단체의 자격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단체가 동의하고 있었고, 배정 품목들이 낮은 수익성에 있는 것들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경향이 높았음.
- 특정 보훈복지단체에 물량배정이 집중되어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높음.

3) 보훈복지단체 정부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 의견

- 보훈복지단체들의 현 정부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문제점 인식경향은 단체의 생산능력이나 품질 등 ‘단체’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반면,
 - 현 제도가 보훈복지단체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물량배정 비율, 낮은 수익성의 물품배정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 인식 경향은 향후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도 암묵적으로 반영되고 있음.
 - 즉, 현재의 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의 개선방안이 선호되고 있다는 것임. 그리고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유지한다고해도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경쟁전환으로 가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살펴보면,

- 현재의 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수의계약대상 단체의 자격기준이나 심사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보통이상의 동의를 보임.
- 그러나 수의계약제도를 어떤 형태로든 경쟁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의 입장이 지배적임.
- 비록 ‘현 특정단체 대상의 수의계약제도를 일괄 경쟁전환, 보훈복지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경쟁체제 확대 전환’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 7개 단체, 33.3%로 나타나고 있으나, <표 8>에 제시된 수의계약→경쟁전환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의미있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개선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 첫째, 현재의 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수의계약 대상 단체의 자격기준과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단체에게 가장 수용가능한 방안으로 보여짐.
- 둘째, 생산설비 등 초기생산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원 등 시장경쟁력강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경쟁전환하는 방안이나, 보훈복지단체 및 비영리단체가 포함되는 사회적기업 영역 내에서의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여짐.
- 그러나, 단계적이라 하더라도 완전경쟁체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어떠한 보완적 지원 방식을 제시하더라도 단체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대안으로 보여짐.

<표 3-17> 정부 수의계약제도 개선 방안들에 대한 동의 정도

내 용	동의하지 않음	보 통	동의 함
① 현 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수의계약 대상 단체의 자격기준 및 심사평가 강화	0	6	15
② 수의계약제도 단계적 경쟁전환하되, 우선구매 촉진을 확대 지원	18	1	2
③ 수의계약제도 단계적 경쟁전환, 생산설비 등 초기생산 인프라에 재정지원 등 단체의 시장경쟁력 강화	11	6	4
④ 현 특정단체 대상의 수의계약제도를 일괄 경쟁전환, 보훈 복지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경쟁체제 확대 전환	14	0	7
⑤ 수의계약제도 단계적 경쟁전환, 사회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지원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대체	19	2	0
⑥ 수의계약제도 단계적 경쟁전환, 동일물품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경쟁체제로 전환	21	0	0

2. 수요기관 조사결과

1) 조사개요

- 보훈복지단체로부터 물품 조달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중 구입금액 기준 상위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25일부터 4월6일,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 각각 25개 기관, 18개 기관 등 총 43개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음.
- 총 43개 응답기관은 무응답 4개 기관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기관 5, 지방자치단체 19, 기타 공공기관 15개였음.

〈표 3-18〉 응답기관 유형

기 관 유 형	응답단체 수
중앙정부기관	5
지방자치단체	19
공공기관 등 기타	15
무응답	4

- 주요 조사내용은 보훈복지단체의 물품조달과 관련한 조달청의 중간 역할에 대한 만족도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만족도, 물품구매와 관련된 중요항목, 전반적 구매 현황 및 재구매 의사 등임.

2) 분석결과

(1) 조달청의 보훈복지단체 물품 조달서비스 관련 만족도

- 보훈복지단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요기관들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
 -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에 있어, 만족하는 기관은 8개 기관(‘매우 만족’ 1개; ‘대체로 만족’ 7개)이며, 불만족하는 기관은 3개 기관(‘대체로 불만족’ 1개; ‘매우 불만족’ 2개), 기타 24개 기관은 보통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음.
 - 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수가 적은데다 세부 항목에서의 ‘보통수준’에 집중된 응답경향으로 인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음.
 - 세부 항목에 있어, 조달청이 보훈복지단체의 물품 구매와 관련한 구매

정보 제공수준이 어느 정도 충분한지와 관련하여(구매정보 충분성), 만족하는 경우는 12개 기관(모두 ‘대체로 만족’)이었고, 보통수준이 23개 기관인 반면 불만족하는 경우도 7개 기관(모두 ‘대체로 불만족’)으로 나타남.

- 수의계약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 서류의 간편성과 관련하여서는 만족하는 기관이 14개 기관(‘대체로 만족’ 13개, ‘매우 만족’ 1개)이었고, 불만족하는 기관은 5개 기관(모두 ‘대체로 불만족’)으로 나타났음. 기타 22개 기관은 ‘보통’의 응답을 보임.
- 조달청의 업무처리 신속성과 관련하여서는 만족하는 기관이 20개 기관(‘대체로 만족’ 18개, ‘매우 만족’ 2개)이었고, 불만족 하는 기관이 3개 기관(‘대체로 불만족’ 1개, ‘매우 불만족’ 2개)이었음. 보통수준의 응답을 보인 기관은 17개 기관임.
- 조달청의 업무처리절차 간편성과 관련하여서는 만족하는 기관이 22개 기관(‘대체로 만족’ 19개, ‘매우 만족’ 3개)이었고, 불만족 하는 기관이 3개 기관(‘대체로 불만족’ 3개)이었음. 보통수준의 응답을 보인 기관은 14개 기관임.
- 대금결제 편리성과 관련하여서는 19개 기관이 만족(‘대체로 만족’ 15개, ‘매우 만족’ 4개)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불만족하는 기관은 1개 기관(‘대체로 불만족’)이었음. 기타 18개 기관이 보통이라는 응답을 함.

〈표 3-19〉 조달청의 보훈복지단체 물품/용역 서비스 관련 질문

항 목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잘 모름
구매정보 충분성	0	7	23	12	0	1
구비서류 간편성	0	5	22	13	1	2
업무처리 신속성	2	1	17	18	2	3
업무절차 간편성	0	4	14	19	3	3
대금결제 편리성	0	1	18	15	4	5

- 한편, 위 보훈복지단체의 물품 구매 전 수요기관에 제공되는 서비스들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 결과,
- 1순위로 가장 높게 지적된 것이 업무처리의 신속성이었으며, 2순위로 는 업무처리 절차의 간편성, 3순위로는 구비서류의 간편성이 제시되어
 - 충분한 구매정보에 대한 요구 보다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20〉 “구매 전 서비스” 에 대한 중요도 순서

순 위	내 용	응답수
1순위	업무처리 신속성	11
2순위	업무처리절차 간편성	17
3순위	구비서류 간편성	12

(2) 보훈복지단체 구입물품에 대한 만족도

- 보훈복지단체로부터 조달받은 물품에 대해 품질, 가격, 시기,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이 25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만족이 12개 기관이, 대체로 불만족이 6개 기관으로 나타났음.
 -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품질 우수성과 관련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는 기관이 14개, 불만족하는 기관이 4개(‘대체로 불만족’ 3개, ‘매우 불만족’ 1개), 보통수준이 22개 기관으로 나타났음.
 - 가격의 적정성면에 있어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11개 기관, 대체로 불만족한 경우가 6개 기관이었고 25개 기관은 보통수준으로 응답함.
 - 구매계약 대상 물품의 납기내 준수 여부와 관련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20개 기관이 만족(‘대체로 만족’ 18개, ‘매우 만족’ 2개)하고 있었으며, 3개 기관만이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을 보였음. 보통수준의 응답은 18개 기관이었음.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음.
 - 납품받은 조달물품에 대한 보훈복지단체의 사후관리(A/S)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12개 기관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7개 기관이 불만족하다는 응답(‘대체로 불만족’ 6개, ‘매우 불만족’ 1개)을 보여, 다른 항목에 비해 불만족 빈도가 높은 항목이라 할 수 있음. (보통수준의 응답 19개 기관).

〈표 3-21〉 보훈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용역에 관한 질문

항 목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잘 모름
품질 우수성	1	3	22	14	0	3
가격 적정성	0	6	25	11	0	1
납기 준수	0	3	18	18	2	2
사후관리(AS)의 질	1	6	19	12	0	5

- 한편, 보훈복지단체로부터 물품을 조달받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1순위에 품질의 우수성, 2순위는 물품의 가격 적절성, 3순위로 사후관리의 질이 제시되었음.

〈표 3-22〉 보훈복지단체로부터의 물품/용역에 대한 각 항목 중요도

순 위	내 용	응답수
1순위	물품의 품질 우수성	26
2순위	물품의 가격 적절성	14
3순위	사후관리의 질	12

- 보훈복지단체로부터의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자 하는 재구매 의사와 관련 하여서는, 재구매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23개 기관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응답경향이 중립적인 ‘보통수준’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특별한 문제나 선호에 대한 견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가급적 재구매하고자 한다는 응답은 10개 기관이 응답한 반면, 10개 기관은 가급적 재구매하고 싶지 않다(9개)거나 더 이상 재구매하고 싶지 않다(1개)는 의견을 밝혔음.

〈표 3-23〉 물품의 재구매 의사 정도

내 용	응답단체 수
더 이상 재구매하고 싶지 않다	1
가급적 재구매하고 싶지 않다	9
상관없다	23
가급적 재구매하고자 한다	10
계속 재구매 하고자 한다	0

(3) 보훈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종류 및 만족도

- 응답기관이 정부조달에 의해 구입하는 금액 중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한 물품금액의 비율은,
 - 평균 7.43%(3년간 평균 5.82%)였으며,
 - 최대 100.0% 이르는 기관(1개)도 있었으며,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경우도 22개 기관이 있었음.
- 최근 3년간 보훈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종류는 대략 32개가 제시되었으며,
 - 이 가운데, 구입물품에 대해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물품으로는 인쇄(간행물, 수첩 등), 복사지, 조경관리용역, 물탱크, 수첩류(인쇄용), 신문용지, 모터펌프, 고압배전반 및 제어반 제작, 위생처리실비 등이었음.
 - 반면,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물품으로는 보안용 카메라, 자연석 경계석, 투광등, 복사용지, 도로시설물이 제시되었음.

〈표 3-24〉 지난3년간 보훈복지단체에 구매한 물/용역 및 그에 대한 만족도

질 문	만족도				
	매우불만	대체로불만	보통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인쇄				✓	
복사지				✓	
청소용역			✓		
슬러지수집기 설비			✓		
가구			✓		
가로등주 표찰 구입			✓		
공원 청소관리			✓		
조경관리용역				✓	
물탱크 구입				✓	
보안용카메라		✓			
무대장치			✓		
배전반			✓		
방송장치			✓		
자연석 경계석	✓				
쓰레기봉투			✓		
사무용 가구			✓		
비금속 명찰			✓		
투광등		✓			
화장지			✓		
복사용지		✓			
신문용지				✓	
수첩류(인쇄)				✓	
석재블럭			✓		
회의용 탁자			✓		
사회대			✓		
수질원격감시 계측제어장치 구매설치			✓		
제1,2처리장 모타펌프 제작구매설치					✓
고압배전반 및 제어반 제작 설치					✓
고압배전반 및 제어반 제작 설치				✓	
침사지 설비 제작구매 설치			✓		
전자식유량계 외 4종 구매설치				✓	
오수(유입)모타 펌프 제작구매 설치				✓	
1,2처리장 침사지 설비 교체			✓		
위생처리설비 제조구매 설치				✓	
도로시설물		✓			

제4절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관련 해외사례분석

1. 미국의 사회적 약자기업 조달지원제도 분석

(1) 사회적 약자기업의 유형 및 지원원칙

가) 정의 및 유형

- 미국 GSA에서는 연방조달참여에 있어 사회적 약자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는 중소기업법(15 USC 637)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의됨.
 - “사회적 약자기업”은 주로 중소기업(Small Business)이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계층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를 의미
 - 사회경제적 약자(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는 ‘사회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약자’인 자들임.
 - 사회적 약자란 “개인의 자질과 무관하게 특정 민족, 특정 인종에 속하였다는 이유로 민족적·인종적·문화적 편견을 받는 자들”임.
 - 경제적 약자란 “자본과 신용의 저하로 동일 업종에 있는 비사회적약자에 비해 자유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손상을 입은 사회적 약자”임.
 - 동 법률의 규율대상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약자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소유권(ownership) 또는 지분(control)을 갖고 있는 공·사기업임⁵⁾.

5) 4)(A)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small business concern” means any small business concern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 (B) (below) and-- (i) which is at least 51 per centum unconditionally owned by-- (I) one or mor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II) 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an tribe (or a wholly owned business entity of such tribe), or

- 동 법률의 적용대상은 미국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lawfully admitted permanent U.S. residency)에게만 국한되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사례별로 적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약자에 속할 수 있는 인종 및 민족 집단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태평양, 원주민(하와이, 에스키모, 알류트, 인디언) 등임.
 - 동 법률에 여성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여성이 겪는 사회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해 동법률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presumption)됨.
- 미국 중소기업법(the Small Business Act)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독립적으로 소유·운영되며,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
 - 즉,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②미국 내에 사업장이 있으며, ③세금납부 혹은 미국산 물품, 자재, 노동력을 이용하여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④개별 산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size standard)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미국 중소기업청(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북미산업 분류시스템(NAICS :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코드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준규모 규정(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에 의해 기업의 종업원수 혹은 연평균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기준(size standard)을 설정함.

(III) 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Native Hawaiian organization, or (ii) in the case of any publicly owned business, at least 51 per centum of the stock of which is unconditionally owned by-- (I) one or mor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II) 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an tribe (or a wholly owned business entity of such tribe), or (III) 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Native Hawaiian organization. (B) A small business concern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subparagraph if the management and daily business operations of such small business concern are controlled by one or more-- (i)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described in subparagraph (A)(i)(I) or subparagraph (A)(ii)(I), (ii) members of 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an tribe described in subparagraph (A)(i)(II) or subparagraph (A)(ii)(II), or (iii) Native Hawaiian organiza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i)(III) or subparagraph (A)(ii)(III). (C) Each Program Participant shall certify, on an annual basis, that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regarding ownership and control.

- 이러한 규모기준은 업체(자회사 포함)가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이나 연방계약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의미하며, 중소기업청(SBA)의 13 CFR(Code of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121 또는 중소기업규모 기준표(Table of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참조
- 중소기업청은 각 산업별 규모기준 이외에 주요 산업군(industry group)에 대해 총괄규모기준(General Size Standards)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기업 규모가 해당 산업군의 규모기준보다 적다면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
- 해당 산업군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 산업군내 특정 NAICS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음.

<표 3-25> NAICS의 산업분류에 따른 중소기업규모기준

산업그룹(Industry Group)		기업규모기준	
		연평균수입액 (백만달러)	고용인 수 (명)
건설 (Construction)	일반 및 대형건설	31	-
	특별 무역건설계약	13	
	토지분양	6.5	
	준설(dredging)	18.5	
제조업 (Manufacturing)	제조업의 약 75%	-	500
광업(Mining)	광업 (광업서비스 제외)		500
소매업 (Retail trade)	소매무역업	6.5	
서비스업 (Services)	일반서비스업	6.5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처리, 시스템설계	23	
	시설물지원서비스	325	
도매업 (Wholesale trade)	도매산업		100
	단, 중소기업유보제도 및 8(a) 프로그램에 해당될 경우		500

* 자료 : 미국 중소기업청(SBA),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Code(NAICS) 참조

- 미국의 중소기업법에서는 중소기업을 7개로 분류하고 있음.
- ① 8(a) 기업 : 중소기업법 8(a)조항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의 기업소유를 장려하고, 계약·경영·재무 및 기술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국 중소기업청(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인 8(a) 기업개발 프로그램(8(a) Business Development Program)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8(a) 기업은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인 미국시민이 51%이상 소유·통제해야 하며, 최초 산정시 개인자산 25만달러 미만이어야만 함.
 - ②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 중소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 : 역시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인 미국시민이 51%이상 소유·통제해야 하며, 최초 산정시 개인자산 75만달러 미만이어야만 함.
 - ③ 낙후지역 중소기업(HUBZone Small Business) : 사업장에서 주 평균 실업률의 140% 이상, 평균 가구소득이 비도시지역 중간값의 80%이하, 또는 인디안 보호구역인 HUBZone(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 Zone)에 위치하고, 미국 시민이 51% 이상 소유·통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종업원의 35%이상인 HUBZone에 거주하여야 함.
 - ④ 상이군인 중소기업(Service-Disabled Veteran-Owned Small Business) : 상이군인이 51%이상의 지분을 소유·통제하는 중소기업
 - ⑤ 재향군인 중소기업(Veteran-Owned Small Business) : 재향군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통제하는 중소기업

- ⑥ 여성 중소기업(Women-Owned Small Business) : 미국시민인 여성이 51%이상의 지분을 소유·통제하는 중소기업
- ⑦ 일반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상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정의 및 기준에 따르는 중소기업

나) 지원원칙

- 미국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조달참여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법(미국법전 제15권 631 이하), 군수조달법(미국법전 제10권 2302 이하), 연방물품및행정서비스법(미국법전 제41권 252), 1994년 연방조달정비법 제7102조(공법 제103-355호), 미국법전 제10권 2323, 행정명령 제12138호(1979. 5. 18) 등에 있음.
- 미국 연방정부 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 재향군인 중소기업, 상이군인 중소기업, 낙후지역 중소기업, 소외계층 중소기업, 여성 중소기업들에게 최대한의 기회제공을 정부정책으로 삼고 있음(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19.201).
 - 즉,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조달원칙인 구매효율성(best value)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을 의미함.
-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중소기업 참여 권장 : 중소기업은 정부의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그들이 이행할 수 있는 모든 계약에 경쟁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연

방기관은 각 기관이 발주한 조달의 하도급 계약에 중소기업이 가능한 최대한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

② 중소기업 공급원의 탐색 : 계약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중소기업, 체대군인 중소기업, 상이군인 중소기업, 낙후지역 중소기업, 소외계층 중소기업, 여성 중소기업이 조달에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촉진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게 연방조달 참여촉진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계약관에게는 중소기업의 적정 연방조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
- 상무부는 북미산업분류(NAICS)의 산업 하위부문(industry subsector)과 지역에 의하여 인정된 소외계층 중소기업 조달메카니즘과 적용가능한 비율을 결정
- 계약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목표의 달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 집행에 대하여 책임

③ 중소기업의 지위확인(size certification)

- 계약관은 입찰권유서에 소액구매를 초과하는 구매에 대하여 입찰자(제안자)가 중소기업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며 정부조달 참가업체는 중소기업 여부를 입찰서(제안서)에 표시하여야 함.
- 계약관은 해당 입찰자의 중소기업 자격이 의심스러운 경우 미 중소기업청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비낙찰자 또는 이해당사자는 중소기업의 지위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후 5근무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만약 특정기업이 고의적으로 기업 규모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외에도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고 10년간 구금될 수 있음.
- ④ 동가 저가입찰서 : 저가 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첫 번째로 노동력 과다 지역 중소기업을 낙찰시키고 두 번째로 노동력 과다지역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낙찰
- ⑤ 중소기업에게 최대 정보제공 : 청약서의 제출에 가능한 최대한의 시간을 허용하고, 공고서와 함께 규격서, 계획서, 그리고 도면을 제공하거나 그것들을 구하여 검토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을 시, 입찰서 세트 사본과 체결할 계약에 관한 규격서, 그 계약과 중소기업이 정부 이외의 자와 거래를 할 때 지켜야 하는 법률과 기관 규칙 이외에 그 계약이행에서 지켜야 하는 각 주요 연방 법률이나 기관 규칙에 대한 적절한 근거(citation)를 답변할 기관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
- ⑥ 자료수집과 보고 : 일반중소기업, 제대군인 중소기업, 상이군인 중소기업, 낙후지역 중소기업, 소외계층 중소기업, 여성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참여한 정도를, 각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총 계약 금액과, 각 회계연도 말에 중소기업청에 보고할 자료로 정확하게 측정(구매할당 여부 등 판단근거)
- 이에 미국정부는 중소기업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성장잠재력, 재정도, 기술력, 사회적·경제적 불리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

범위 및 방법을 차등화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사회적 약자기업 조달목표의 설정

- 미 의회는 매년 중소기업이 연방정부 조달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연방정부 전체 조달금액 중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Small Business Act 15(g)(1) 조항에 근거), 2003년에 개정되어 현재 유효한 범정부차원의 구매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3-26> 미국 정부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구매목표율

구 분	목표율(%)	
	주계약	하도급계약
중소기업(SBs)	23	40
소외계층 중소기업(SDBs)	5	5
여성 중소기업(WOBs)	5	5
낙후지역(HUBZone) 중소기업	3	3
상이제대군인 중소기업	3	3

- * 중소기업 목표율에는 소외계층 중소기업, 여성 중소기업, 낙후지역 중소기업, 상이제대군인 중소기업 등의 실적 포함
- * 자료 : SBA, FY2006 Subcontracting Goals

- 각 연방기관의 장은 연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25,000달러 이상의 조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는데, 주로 범정부차원의 구매목표비율에 준하여 조금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결정됨(구매되는 물자와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실적집계시 장애인단체제품(JWOD), 연방교도소 제품(UNICOR), 일반세출예산 이외의 자금에 의한 구매(우정국 등), 연방조달규정(FAR)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관(연방항공청 등)은 제외

- 매년 각 연방기관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목표달성도를 보고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유서 첨부, 중소기업청장은 연방조달통계시스템(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FPDS)을 통해 각 연방기관의 목표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각 보고내용을 취합·분석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표 3-27〉 미국 주요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 (2007회계년도)

기관명	중소기업*	8(a) 기업	소외계층 중소기업 (SDB)	여성 기업	낙후지역기업 (HUBZone)	상이군인기업
대통령직무실	50.00%	15.00%	25.00%	9.00%	3.00%	3.00%
농무부	49.00%	5.00%	5.00%	5.00%	5.50%	3.00%
상무부	48.00%	6.11%	12.00%	8.50%	3.00%	3.00%
국방부	23.00%	2.60%	3.20%	5.00%	3.00%	3.00%
에너지부	4.42%	1.22%	1.69%	0.39%	0.11%	0.08%
보건후생부	30.32%	5.50%	5.50%	5.05%	3.03%	3.00%
주택도시개발부	45.00%	10.00%	10.00%	20.00%	3.50%	3.00%
내무부	56.14%	8.26%	10.83%	6.66%	6.00%	3.00%
보훈부	27.77%	5.00%	9.00%	5.00%	3.05%	3.00%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48.00%	9.98%	19.99%	12.98%	3.00%	3.00%
조달청(GSA)	45.00%	5.00%	8.00%	5.00%	3.00%	3.00%
NASA	16.16%	4.05%	6.50%	5.00%	3.00%	3.00%
중소기업청	60.00%	20.00%	36.00%	10.00%	3.00%	3.00%
연방정부	23.00%	2.50%	2.50%	5.00%	3.00%	3.00%

* 중소기업의 구매목표에는 여성기업, 중소약자기업, 낙후지역, 상이군인단체 등이 포함됨
자료 : 미국 중소기업청(SBA) 통계자료 참조

(3)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프로그램

-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중소기업 할당제도, 중소 사회적 약자 우대제도, 하도급 지원, 계약이행능력증명제도 등이 있음.

가) 중소기업 할당제도(Small Business Set-Asides)

- 중소기업 할당제도는 특정 구매건에 대해 중소기업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부구매의 일정 부분(비율)이 중소기업에게 수주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임(FAR Subpart 19.5).
 - 중소기업 할당 결정은 계약담당관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중소기업청 조달센터 대표(Procurement Center Representative; PCR)의 건의에 계약담당관이 동의하는 합동 결정 방식으로 이루어짐.
 - 단순조달한도(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의 경우, 낙후지역 중소기업 할당이 중소기업 할당에 우선함.
 - 중소기업 할당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권유서에 중소기업 기준 규모와 물품분류(NAICS)를 명시해야 하며, 단순구매절차, 경쟁 입찰 또는 협상조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할당 원칙

- 추정가격 3,000달러⁶⁾ 이상의 조달하는 경우 1) 계약담당관이 최소한 2개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제안이 예상되며, 2)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될 때에는 중소기업 할당구매를 추진함.
- 중소기업 할당 구매가 추진되었으나 승인 가능한 제안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 할당은 철회되고 비제한적인 방법으로 재공고되어 구매절차를 추진함.

6) 3,000달러 기준은 물품에 대한 초소액 구매(micro purchase) 한도이며, 종전 2,500달러에서 2006. 9. 28일자 FAR 개정시 3천 달러로 상향조정됨.

□ 구매할당의 설정

- 계약관은 다음의 경우 개별조달이나 품목조달(class of acquisition)을 중소기업간 경쟁용으로 할당하여야 함.
 - 국가의 완전한 생산능력, 전쟁이나 국방프로그램의 유지·동원을 위해 할당결정
 - 각 산업 범주에서 정부계약의 공정한(fair) 양이 중소기업에게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고 일괄할당이나 부분할당에 정해진 조건이 존재
 - 이 요건은 \$3,000 이하 구매나 의무공급원으로부터의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 구매할당제도는 전체할당과 특수형태의 할당으로 구분됨.

① 중소기업 전체 할당(Total set-asides)

- 추정가격이 \$3,000(기관장에 의하여 긴급 작전(contingency operation) 지원이나 핵 화생방 공격에 대한 방위 또는 핵 화생방 공격으로부터의 복구를 촉진 시키는데 사용될 것으로 결정된 공급물이나 서비스의 조달은 \$15,000) 을 초과하지만 \$100,000(단순조달 한도금액 정의에 정해진 조달은 \$250,000) 이하인 공급물이나 서비스의 각 조달은 자동적으로 중소기업용으로 유보되어 할당됨(Small Business Act 15(j) (1) 및 FAR 13.303 (b) (1)에 근거).
- 다만, 계약관이 시장가격, 품질, 납품 등의 조건에서 경쟁적인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제안서를 접수하리라는 합리적인 예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 계약관이 중소기업 할당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완전경쟁방식으로 구매를 추진할 경우에는 동 사유를 작성하여 파일에 첨부
- 중소기업 할당제가 적용되는 조달에 있어 적격의 1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락가능한 제안(offer)이 있는 경우, 계약관은 해당 기업을 낙찰
- 적격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수락가능한 제안(offer)가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업 할당은 철회되어 비제한적인 방식으로 재구매 촉진

- \$10,000를 초과하는 조달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하여야 함.
 - 각기 다른 중소기업 물품을 제안하는 최소한 2개의 적격한 중소기업의 참여가 예정되며,
 -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price)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 중소기업을 주계약자로 선정하기 어려울 경우 구매기관의 담당부서는 중소기업청 조달지원관(PCR)에게 입찰공고 30일 전까지 해당 조달계획과 함께 합당한 사유를 담은 설명서를 제출

- 건설이나 서비스 이외의 다른 중소기업 할당의 경우,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제품의 공급을 제안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이 비제조자 원칙을 면제하거나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한 중소기업제조자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

② 특수한 형태의 중소기업 할당

- 이에 해당하는 할당제도는 부분할당(Partial set-asides), 품목할당(Class set-asides), 극소기업 할당(Very Small Business set-asides)이 있는데, 특히 1994년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Reauthorization & Amendments Act의 Section 304에 의해 극소기업 할당 시범프로그램(Very Small Business Pilot Program)은 2003년 9월 30일자로 종료됨.

□ 부분 할당(Partial set-asides)

- 중소기업 할당은 구매대상의 전체를 중소기업에 전체할당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매대상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할당할 수 있음(시설공사 제외).

- 전체할당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 국방연구소의 화성대기 연구개발 및 조사사업은 복잡한 장비를 필요로 하므로 전체를 중소기업에 발주하는 것은 어려우나 연구보고서 작성은 중소기업에 할당 가능함.
 - 조달 요구물이 2개 이상의 경제적인 생산량이나 합리적인 수량(lots)으로 분리 가능할 경우
 - 1개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이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중소기업 할당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능력과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예상될 경우
 - 해당 조달이 단순조달절차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오직 2개의 기업(1개 대기업 및 1개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계약부서의 장의 승인이 없이는 부분할당 불가
- 계약관은 구매대상을 할당 부분과 비할당 부분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게 되며, 비할당 부분에 대한 낙찰자 결정 후 조달공고서의 요건에 따라 할당부분 적격업체와 협상 추진
- 협상대상자는 비할당부분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 한정되므로 할당부분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은 비할당 부분에도 제안서 제출

□ 품목 할당(Class set-asides)

- 개별 구매건이 아니라 품목군(class)별 구매가 기준을 만족한다면, 선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품목구매를 중소기업에게 독점적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할당
- 구매부서에서 문구류를 중소기업 할당으로 결정하면, 같은 물품 그룹에 속한 연필깎이 조달계약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음.

- 현재 구매 수요 존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구매를 명백히 예측할 수 있으면 품목할당을 할 수 있어, 현 구매건에 대한 사실만을 근거로 품목할당을 결정하지 않음.
- 품목할당의 결정은 계약관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중소기업청의 조달지원관(PCR)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구매할당의 철회 및 자동소멸

- 중소기업 할당이 포함된 계약의 낙찰 전에, 계약관이 그 낙찰이 공익에 해가 된다고(예, 정당한 시장가격보다 많은 지불) 인정한다면, 중소기업 구매할당은 일방적인 것이었건 협의에 의한 것이었건 그 할당을 철회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구매할당 조달 자체나 그 일부가 낙찰되지 않았다면, 그 조달을 할당하는 일방적 또는 협의적 결정은 그 할당의 낙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소멸

나) 8(a) 기업 지원프로그램 (8(a) Business Development Program)

- 8(a) 기업 지원프로그램⁷⁾은 Small Business Act 8(a) 조항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약자) 중소기업(SDB)이 미국 시장경제에서 경쟁하고 연방정부조달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1974년 제도화된 프로그램(13 CFR 124 Subpart A)
- 8(a)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중소기업 지원수단은 연방정부와 중소기업청(SBA)간 계약체결(주계약) 및 SBA와 8(a) 기업간의 계약체결(하도급

7) Minority Small Business and Capital Ownership Development Program이라고도 함.

계약)로 이어지는 특수 조달메커니즘임.

-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의는 본절 1. 1) 가) 참조.
 - 연방정부는 개인의 재무상태, 기업의 재무상태, 신용 및 자본시장의 접근성, 동일 또는 유사 업종업체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약자로 결정함.
 - 연방정부부처나 기관은 일부 조달을 중소기업청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비경쟁적 방법(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소유한 소규모 업체인 8(a) 기업에게 하청 계약을 줄 수 있고, 해당 기업들에게 경영, 기술, 마케팅과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8(a) 기업 자격요건

- 8(a) 기업은 미국 시민이며,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고, 성공가능성을 입증하는 1인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여기서 경제적 약자란 순자산 75만 달러미만을 보유한 자를 의미하나, 8(a) 기업 프로그램에서는 최초 신청시 25만달러 미만,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75만 달러 미만을 요구함.
- 해당분야에서 최소 2년 동안의 성공적인 사업실적(2년간 소득세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나, 상당한 기업경영 경험, 기술력과 자금능력, 성공적인 사업수행 실적, 필요 인력과 장비/시설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8(a)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책임이며, 계약이 중소기업청에 낙찰되면, 단일공급원이나 경쟁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8(a) 기업에 의해 이행될 수 있음.

□ 프로그램 참가단계

- 발전단계(development Stage) : 기업개발지원을 통해 8(a)기업이 경제적 불리함을 극복하는 단계로, 4년간 지속되며, 해당기업이 현행사업의 유지, 사회계획에 있는 비8(a)소득⁸⁾ 목표를 달성하도록 마케팅전략 개발 및 시행을 목표로 함.
- 전환단계(Transitional Stage) : 참가자가 남아 있는 경제적 불리여건을 극복하고 8(a) 프로그램을 졸업하도록 준비하는 단계로, 5년간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도마다 비8(a)소득 목표를 증가시켜야 함.

〈표 3-28〉 전환단계 비8(a) 소득 목표를

전환단계 참여기간	비8(a)소득/전체소득
1년	15-25%
2년	25-35%
3년	35-45%
4년	45-55%
5년	55-75%

- 8(a)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은 발전단계에서는 10%, 전환단계에서는 20%까지 8(a)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음.
- 프로그램 탈퇴(leave) 및 자격중지(suspension)
 - 8(a)기업은 ① 프로그램 참가기간 종류에 따른 졸업(graduation), ② 자발적 조기졸업, ③ 중소기업청에 의한 조기졸업⁹⁾, ④ 중소기업청에 의한 해지로 프로그램 탈퇴¹⁰⁾ 등으로 탈퇴될 수 있음.

8) 참여기업의 전체 소득 중 8(a)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제외한 소득

9) 중소기업청은 8(a)기업이 사업계획상 목표달성 등 8(a)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원수하였거나, 하나 이상의 소유자(owner)가 경제적 약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해당기업을 조기 졸업시킬 수 있음.

10) 이에 해당하는 해지사유로는 가입신청시 허위서류 제출, 프로그램 참가 적격요건의 상실, 기업양도, 8(a)계약

- 중소기업청은 조기졸업과 해지를 위한 절차진행 중에는 8(a)프로그램에 의한 계약지원 및 기타 지원을 중지할 수 있음.

□ 8(a)기업간 제한경쟁(FAR 19.805-1)

- ① 최소 2개의 적격 8(a)기업의 참여와 공정 시장가격에 의한 낙찰이 예상되고, 추정가격이 경쟁기준금액(제조 550만달러, 기타 350만 달러)을 초과하는 경우에 8(a)기업간 제한경쟁으로 낙찰되어야 함.
- 추정가격이 경쟁기준금액 이하인 조달인 경우에도 ① 기술적 경쟁이 적합하거나 ② 다수의 적격한 8(a)기업간 경쟁이 가능한 때에는 8(a)기업간 제한경쟁 가능(단, 중소기업청의 승인 필요)

□ 8(a)기업간 수의계약(FAR 19.805-1)

- 추정가격이 경쟁기준금액(제조 550만달러, 기타 350만 달러) 이하인 조달은 원칙적으로 특정 8(a)에게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이 경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조달에서도 공정시장가격으로 2개 이상의 적격 8(a)기업의 참가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 가능
-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금액 합계가 1억 달러를 초과하거나 당해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의 연간 총 수입액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을 받을 수 없지만, 제한경쟁에 의한 낙찰은 가능(13 CFR 124.519)

의 부적정한 이행,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 있음(13 CFR 124.303).

□ 8(a) 프로그램 계약절차

- 8(a) 프로그램 과정에는 발주기관인 연방기관, 주계약자인 중소기업청과 하도급자로서 계약을 이행하는 8(a)기업 등 3개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으며, 통상적인 계약절차는 다음과 같음.
 - 연방기관의 계약관이 특정 조달건이 8(a)기업에 낙찰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결정하면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고,
 - 중소기업청은 8(a)기업 중 여러 유자격 업체를 선정하여 경쟁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후 가격협상 없이 최저입찰자를 선정하며,
 - 연방기관의 계약관은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업체와 계약금액을 재협상하고, 협상이 끝나면 계약관은 입찰권유서를 해당 기업에 송부하고 중소기업청과 주요 계약을 체결한 뒤,
 - 중소기업청은 해당 8(a)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기업은 계약이행에 착수
 - 그러나, 계약이행 기간 동안 해당 8(a)기업은 발주기관인 연방기관을 직접 상대하여 대금도 직접 지급받으며, 중소기업청은 계약이 체결되면 거의 관여하지 않음.

- 예외적인 계약절차
 - 중소기업청은 8(a)계약집행권한을 발주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직접 8(a)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발주기관인 연방기관과 8(a)기업간 협의 또는 승인절차에 따른 조달소요일수 단축, 발주기관의 전문성 활용 등을 위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청은 25개 연방기관들과 MOU(Memorandums of Understanding; MOUs)를 체결하여 8(a)계약집행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 최근에는 8(a)기업들이 입찰을 위해 팀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입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기업들이 대규모 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기타 8(a)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기업, 8(a) 졸업기업 등을 ‘멘토르(Mentor)’로 지정하여 8(a)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 기술지원을 제공하거나, 멘토링 기업과 합작투자(Joint-venture) 협정을 맺어 주계약자로 정부계약에 참여하게 하는 Mentor-Protege 프로그램이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의한 개별주문의 경우, 8(a)기업에 대해 별도의 청약과 수락은 없으며, 원래의 MAS계약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수락은 그 계약기간 동안 유효

- MAS에 이미 등록된 경우, 8(a)기업은 프로그램 탈퇴 및 자격중지 등의 요건으로 인해 자동탈퇴되더라도 MAS 계약에 의한 새로운 주문을 계속 하여 받을 수 있음.

다) 소외계층 중소기업(SDB) 가격평가조정(Price Evaluation Adjustment)

□ 1994년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상무부가 지정한 물품을 경쟁방법으로 구매할 때 약자중소기업의 제안가격 평가시 최대 10%까지 특혜를 제공

○ 이 프로그램은 국방부(DoD), 항공우주국(NASA), 그리고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등 기관에만 적용되며, 기타 연방기관은 프로그램 시행 권한이 없음(FAR 19.1102).

○ 가격평가우대(the price evaluation adjustment)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1인 이상의 사회적 약자가 소유/운영

한다는 소외계층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청의 SDB 인증을 받기 전에도 연방정부 조달에 스스로 SDB임을 자기입증할 수 있는데, 동 기업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관은 중소기업청에 동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고, 중소기업청은 최우선적으로 이를 처리(12 CFR 124.1010(b))

□ 가격평가조정의 적용

- 상무부가 지정한 물품¹¹⁾에 대하여 연방기관의 입찰평가지 소외계층 중소기업에게 10%까지 가격평가 혜택 적용
- 가격평가 혜택은 소외계층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입찰자의 가격에 10%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

※ 가격평가조정 사례
 가격평가조정이 10%이며, SDB와 비SDB가 각각 \$105,000, \$100,000의 가격제안시, 비SDB의 가격은 \$110,000으로 조정되고, 따라서 \$105,000의 가격이 제시한 SDB가 낙찰자로 선정됨

□ 가격평가조정의 예외

- 가격평가조정제도는 경쟁계약방법으로 구매할 경우에만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됨.
- 단순구매한도(10만 달러) 이하인 조달계약인 경우
- 8(a) 프로그램에 의해 낙찰 받는 경우
- 중소기업에 우선 할당되는 경우
- 낙후지역(HUBZone) 중소기업에 할당되는 경우
- 상이제대군인 중소기업에 할당되는 경우
- 가격이 낙찰자 결정이 요소가 아닌 경우(건축 및 엔지니어링 조달 등)

11) <http://www.arnet.gov/Reference/sdbadjustments.htm> 참조

- 모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문이 수용되는 경우(MAS에서)
 - 가격조정 조항을 적용하여 가격을 평가한 결과, 공정한 시장가격을 10% 이상 초과하여 계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경우에는 가격조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격평가 혜택을 받아 낙찰된 약자중소기업(SDB)은 하도급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아 계약이행시 물품 및 용역은 50%, 일반건설공사 15%, 특수공사 25%를 해당 업체가 직접 이행해야 함.

□ 8(a) 프로그램과 다른 점

- SDB 프로그램은 8(a) 프로그램은 모두 소외계층 중소기업의 연방정부 조달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
- 8(a) 프로그램은 SDB 프로그램에 비해 적격요건이 보다 엄격
 - SDB의 경제적 약자 요건은 순자산 75만달러 미만이나, 8(a) 프로그램은 최초 가입신청시 25만달러 미만, 가입 후 75만달러 미만 이하로 좀더 엄격
 - 8(a) 프로그램의 적격요건인 성공가능성 입증, 해당사업분야 2년 이상의 사업경험, 좋은 평판 등은 SDB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음.
- SDB는 연방정부 계약에서 직접 경쟁하나, 8(a)기업은 중소기업청에 의존하여 계약체결
- 8(a)기업은 8(a)계약 수주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인증이 필요하나, SDB는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음.

라) 낙후지역 중소기업 프로그램(HUBZone Empowerment Program)

- 역사적으로 저개발된 지역(HUBZone)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연방계약 체결시 특혜를 부여하는 프로그램(FAR Subpart 19.13)
- 낙후지역 경제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1997년 중소기업 책임법(the Small Business Reauthorization Act)으로 입법화되었으며, 모든 연방기관은 HUBZone 프로그램을 참여하여야 함.
 - HUBZone(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 Zone)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개발되지 못해 실업이 높거나 상업 활동이 부진한 저개발지역을 말함.
 - HUBZone 프로그램은 HUBZone 지역에 위치하거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함에 따라 HUBZone 지역기업으로 인증 받은 중소기업에 연방계약 우선권(federal contracting preferences)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도시 및 농촌커뮤니티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계획되었음.
 -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다음과 같이 HUBZone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집행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HUBZone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사업들을 결정
 - 연방기관들이 참여자(Vendor)들을 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HUBZone 대상기업들의 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에 의해 자격요건이 충족됨을 확인받아야 함.
 - 또한 중소기업청은 HUBZone 계약의 적격성 관련 이의제기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HUBZone 지역내의 고용과 투자에 관한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함.

□ HUBZone 중소기업 자격요건

- HUBZone은 다음 4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지역은 중복될 수 있음.
 - 미 국세청의 저소득층 주택세 감면 프로그램 규정에 근거하고, 주택농촌 개발부가 지정한 인구총조사 구역(Qualified Census Tract)
 - 저소득 또는 고실업률 지역으로 지정된 비도시권 카운티(Non-Metropolitan Counties) : 주 평균 실업률(또는 국가전체 실업률)의 140% 이상 혹은 평균 가구소득(중간값)이 주 평균가구소득(중간값, median)의 80% 이하인 지역
 - 인디언 보호구역
 - 폐쇄된 군사기지 지역(폐쇄후 5년간)
 - 현재 8,850개 지정 인구총조사 구역, 420개 비도시권 지정 카운티, 340여 개 인디언 보호구역, 90여개 폐쇄 군사기지 등 HUBZone으로 지정되어 있음(미국의 인구총조사 구역은 61,000여개, 카운티수는 7,000여개 임).
- HUBZone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중소기업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 미국 시민에 의해 51% 이상 소유 및 통제
 - 주된 사무소(principal office)가 HUBZone 지역내 소재
 - 종업원의 35% 이상이 HUBZone 내에 거주(180일 이상)
 - 2007년 10월 기준 총 16,831개 지정

□ HUBZone 기업에게는 다음 4가지 유형의 조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HUBZone 중소기업 할당(FAR 19.1305)
 - 10만 달러 이상의 구매 건이 2개 이상의 HUBZone 기업의 입찰참가와 공정시장가격으로 낙찰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관은 HUBZone 기업에 할당해야 함.

- 발주기관은 단순조달한도 10만달러 이하 초소액 구매(micro-purchase) 한도 이상의 조달건에 대해서도 HUBZone 기업에 할당할 수 있음.
 - 현행 초소액구매 한도는 3천 달러이며, 건설의 경우 2천달러, 서비스는 2천5백달러임.
- HUBZone 할당은 중소기업 할당 또는 HUBZone 중소기업 수의계약에 우선
- HUBZone 수의계약
 -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HUBZone 중소기업이 1개사이고, 추정가격이 단순조달한도(10만달러) 초과 5.5백만(제조 이외는 3.5백만) 달러 이하이며, 공정합리적인 가격으로 낙찰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관은 동 기업과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중소기업청은 HUBZone 중소기업과 수의계약을 거부하는 계약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HUBZone 중소기업 가격평가우대(Price Evaluation Preference)(FAR 19.1307)
 - HUBZone 중소기업에 대한 가격평가우대 프로그램은 완전경쟁방식에 의한 조달의 경우에 적용됨.
 - 단순조달한도 이하의 조달, 가격이 낙찰자 결정요소가 아닌 경우(설계-엔지니어링 조달), 모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오퍼를 승인하는 경우(MAS 등)에는 가격평가우대를 적용하지 않음.
 - 이 경우 10%의 가격평가우대(PEP)가 적용되며, 해당기업이 HUBZone 기업이면서 동시에 SDB인 경우, 20%의 가격평가우대를 받을 수 있음.
 - 가격평가우대는 다른 입찰자의 입찰가격에 10%를 가산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적용
 - HUBZone 중소기업의 구매목표비율 의무화(하도급 포함)

- 연방정부 계약자는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조달의 경우, 하도급 계획에 따라 HUBZone 기업과의 구매목표비율을 설정¹²⁾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노동력 과잉지역 할당제도(Labor Surplus Area Set-aside)

- 기업 본사의 위치에 상관없이 전국 평균실업률보다 높은 지역에서 계약(적어도 1/2이상)을 수행하기로 동의한 업체로 경쟁을 제한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정부구매 예산을 중대한 경제적 소요가 있는 분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임.
- 충분한 유자격 기업의 입찰참가가 예상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경우에만 적용
- 정부는 또한 주계약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력 과잉지역 업체와 하도급 장려하고 있으며, 노동력 과잉지역은 노동부가 지정

마) 상이군인 중소기업 조달 프로그램

- 상이군인 중소기업은 상이군인이 51% 이상을 소유 및 통제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함.
- 1999년 재향군인 창업 및 중소기업 개발법(Veterans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Act)에 의해 상이군인 중소기업 조달목표를 3%로 설정
 - 초소액구매한도 초과 조달건에 대해 상이군인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으로 할당(set-aside) 가능(FAR 19.1405)
- ① 2개 이상의 상이군인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가 예상되고, ②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낙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할당 가능

12) HUBZone 기업과의 공공조달 계약목표는 1997년 제정된 중소기업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HUBZone 중소기업과의 조달계약목표가 2002년까지 2%였으나, 2003년부터는 상향조정되어 3%로 규정하고 있음

- 수의계약의 경우는 ②항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
- 계약관은 상이군인 중소기업 수의계약을 고려하기 전에 상이군인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특이한 것은 상이군인 중소기업에 대한 3% 조달목표 대상품목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건축자재 등 공사용 자재가 모두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공사용 자재 등 품목이 사회약자적 기업에 속하는 상이군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미국 빌딩/산업분야 품목	우리나라 건축자재 품목
농업기계 장비, 배터리 등, 기어, 타이어 등, 모터 등, 건축 장비, 컨테이너 등, 문, 창문, 유리 등, 전자 장비, 전기 케이블 등, 냉난방기 등, 캐비닛, 산업 필터링 등, 펌프, 운송장비, 오일 및 가스 장비 등, 건축용 구조재 등 총 49개 세부품목	기본건축자재,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도로포장 및 조경재, 건축용 구조재, 단열재, 외장마감재, 내장마감재, 창호 및 유리, 배관 및 위생도기류, 건설 및 시설운용자재, 조립식건물, 상설건물, 이동식구조물 등 총 12개 품목

- 2003년 재향군인 창업 및 혜택 개선법((Veterans Entrepreneurship and Benefits Improvement Act)에 의해 상이군인 중소기업에 대한 할당 및 수의계약 프로그램을 규정
- 오직 하나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중소기업만이 조달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추정가격 3백만 달러(제조 5.5백만 달러) 이하의 조달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FAR 19.1406)
- 2004년 행정명령 13360 ‘상이군인 중소기업 행정명령’에 의해 GSA에 대해서 상이군인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VETS(Veterans Technology Services) 범정부조달계획(GWAC) [정보기술 솔루션(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엔지니어링) 조달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하고 있음.

- 이외에 체대군인 중소기업, 여성 중소기업은 별도의 조달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함(단, 여성 중소기업은 구매목표비율 5% 할당에 적용).

■ VETS GWAC의 특징

- 수행기간 : 2007년 2월 2일 ~ 2012년 2월 1일까지, 5년 옵션
- 공정한 기회에 기초한 주문절차(FAR 16.505)
- 프로그램 상한선 : 50억 달러
- 분야 : ① FA1 시스템 운영 및 유지(System Operations & Maintenance)
 ② FA2 정보시스템 엔지니어링(Information System Engineering)
- 상이체대군인 기업의 계약목표 3%를 충족하도록 연방정부기관 지원
- 사전에 경쟁된, 사용하기 편한 계약
- 짧은 조달 lead time
- VETS 조달팀에 대한 훈련과 지원
- 소기업에게 계약기회 증가
- NDAA 2008에 따라 제한된 이의제기 가능성(protestability)
- 계약자의 상한가격로부터 낮은 수수료(0.75%)

바) 장애인단체 생산물품 구매제도(AbilityOne Program)

- AbilityOne 프로그램(중전의 JWOD 프로그램)은 Javists-Wagner-O'Day (JWOD) Act에 근거하여 맹인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생산된 물품과 서비스를 연방기관이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맹인과 중증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JWOD Act는 정부기관에 대하여 맹인과 중증장애인 구매위원회(The Committee for Purchase From People Who are Blind or Severely Disabled)가 인정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동 위원회가 결정한 가격으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영리기관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규정(의무적 구매)

- 연방조달규정(FAR)에 의하면, 장애인단체제품(JWOD)나 연방교도소제품(UNICOR) 등은 우선구매품목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히 장애인단체제품은 다수경쟁으로 인한 낙찰방식이 아닌 SAS(Single Award Schedule) 방식으로 계약체결함.
- 이외의 장애인 중소기업은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으며, 일반중소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함.

사)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 계약이행능력 증명(Certificate of Competency, COC) 프로그램
 - 계약이행능력 보증서는 특정 정부계약을 수행하는데 해당 기업이 계약이행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로서 중소기업청이 발행
 - 계약이행능력 보증서는 해당 특정계약에만 유효하고, 다른 계약 건에 대해서는 별개의 이행능력보증서가 요구됨.
 - 이 프로그램은 연방기관에 대해 강제하는 규정은 아님.
 - 발행절차
 - 계약관은 낙찰예정자의 계약이행능력 중 특정요소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당 낙찰예정자의 본사 소재지의 중소기업청 지역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15일 근무일 동안 낙찰유예
 - 중소기업청 지역사무소는 해당 사실을 낙찰예정자에게 통보하고 이행능력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해당 기업에서 발생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 전문팀이 해당기업의 공장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사설비, 경영, 사업실적기록 및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

-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청 계약이행능력보증서 검토위원회에서 상세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 권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 지역 사무소장이 이행능력보증서 발행여부를 결정
- 중소기업청 지역사무소가 이행능력보증서를 발행하면, 계약관은 일반적으로 해당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관이 동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본부에 이의제기 가능(계약금액 10만달러 미만의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 하도급 지원제도

- 중소기업 하도급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정부계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게 최대한의 하도급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 단순조달한도(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을 수주한 기업은 중소기업 등이 동 계약의 이행에 최대한 참여토록 한다는 데에 동의하여야 함.
-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 50만달러(건설은 1백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주계약자는 하도급계획서는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획서에는 총 하도급금액과 함께 중소기업, 상이군인 중소기업, 낙후지역 중소기업, 소외계층 중소기업, 여성 중소기업에 대한 각각의 하도급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야 함.
 -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계획에 대한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해당 주계약자는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상실
- 하도급 미이행에 대한 배상 및 하도급 목표 초과 인센티브 제도
 - 연방정부는 주 계약자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하도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선의의 노력’ 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하도급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관은 주 계약자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하도급 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계약자의 하도급 초과분의 10% 범위내에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경쟁성 설명 프로그램

- 특정 산업에서 정부계약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할당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낮은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1988년 중소기업경쟁성설명법(Small Business Competitiveness Demonstration Program Act)이 제정됨.
- 다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는 달리 특정산업분야를 지정하여 중소기업 할당에서 완전경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의 성공여부를 시험하는 것임.
- 이 프로그램은 3가지 주요 목적을 가짐.
 - 정부계약의 경험이 많은 중소기업이 경쟁제한(중소기업할당) 없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시험
 - 역사적으로 중소기업 참여가 저조한 산업에서 기관별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해당 산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지 측정
 - 완전경쟁의 확대가 특정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에 역효과를 미치는지를 결정
- 프로그램의 적용
 - 건설, 재사용(reuse)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서비

- 스, 비핵 선박 수리 등 4가지 산업분야를 지정하여 추정가격 25,000 달러 이상의 연방조달에 중소기업 할당제도의 적용을 금지
- 현재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보건 및 인력 서비스부, 내무부, 교통부, 보건부, 환경청, 조달청, 항공우주국 등 10개 기관이 프로그램에 참여
 - 프로그램 참여기관은 전 4분기에 대한 분기별 검토를 하여 중소기업 참여율이 40% 미만인 산업분야에 대해 중소기업 할당을 재개해야 하며, 목표가 달성되면 다시 완전공개 경쟁으로 전환해야 함.
- 신생중소기업(Emerging Small Business)에 대한 특례
 - 이 프로그램의 실시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산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50%에 미달하는 신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당 제도를 계속 시행
 - 25,000 달러(건축 및 토목은 50,000 달러) 이하의 구매건에 대해서는 이들 신생중소기업에게 할당해야 하며, 지정 산업분야의 총 구매금액의 15%를 신생중소기업에 낙찰시켜야 함.

□ 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SBIR)

-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ve Research, SBIR program)은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연방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프로그램으로 1982년에 제정된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에 의해서 시작
 -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이와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미국 연구기관과의 상호협력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할당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이 있음.

- 1억 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예산을 보유한 연방기관은 SBIR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현재 국방부, 보건/인력서비스부, 우주항공국, 내무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예산의 2.5%를 SBIR에 할당
- 중소기업청은 SBIR 프로그램 조정자로서 참여기관의 프로그램 시행과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 수행, 참여 연방기관의 입찰정보를 수집하여 사전공고 형식으로 책자발간
- 참가 자격 요건
 - 노동단체(affiliates)를 포함한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SBIR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① 미국인이 소유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② 이윤추구업체(미국시민이 적어도 51%의 지분을 소유), ③ 책임연구자를 고용, ④ 고용인 500명미만의 기업, ⑤ 미국내 주된 사무소 위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진행 절차
 - 각 기관은 제안서를 접수하면 중소기업 자격요건, 혁신의 정도, 기술적 장점 및 장래 상용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SBIR 낙찰자 선정
 -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BIR)은 자격 있는 중소기업이 연방정부의 특정연구와 개발수요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총 3단계 시스템으로 구성됨.

단계	내용
1단계 (시작단계)	제안된 아이디어의 과학·기술적 장점, 실현가능성을 결정하는 단계로, 해당 중소기업은 연방정부로부터 10만 달러를 6개월 동안 제공
2단계 (이행단계)	연구개발 작업수행과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2년 동안 해당 중소기업에게 최대 75만 달러까지 가능(1단계 낙찰자의 약 50%만 2단계로 진행)
3단계 (상용화단계)	각종 연구결과를 상용화하는 단계로, 더 이상의 SBIR 자금 지원은 없음.

(3) 주요 지원실적

□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 연방정부 전체 2007년 회계연도 중소기업 수주실적은 총 조달금액 약 3,785억여달러의 22% 수준으로 1년 전(22.83%)과 비슷한 수준
- 우리나라의 보훈·복지단체와 유사한 형태인 소외계층 중소기업이나 상이군인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목표가 각각 5%, 3%에 해당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연방정부의 경우 6.58%, 1.01%로 초과하거나 미달하였음.
- 주요 계약부서인 GSA에서는 전체 2007년 회계연도 실적은 총 조달금액 약 49억여 달러의 34.22% 수준임.
- 소외계층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구매목표 5%에 비해 13.37%로 초과달성하였으며, 상이군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25%로 약간 미달하였음.

〈표 3-29〉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공공조달실적

구 분	구매 목표 (%)	전체 연방정부				GSA			
		2006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금액 (억달러)	비중 (%)	금액 (억달러)	비중 (%)	금액 (억달러)	비중 (%)	금액 (억달러)	비중 (%)
중소기업 총 조달규모		3,402	100.00	3,785	100.00	54.3	100.00	48.9	100.00
- 중소기업	23	777	22.83	833	22.00	17.5	32.21	16.7	34.22
- 소외계층 중소기업(SDB)	5	230	6.76	249	6.58	5.4	9.91	6.5	13.37
- 8(a) 기업	-	125	3.67	85	2.24	3.1	5.74	3.4	6.89
- 여성 중소기업	5	116	3.41	129	3.41	3.0	5.50	3.3	6.70
- 낙후지역기업(HUBZone)	3	72	2.10	62	1.93	2.6	4.82	2.7	5.57
- 제대군인 중소기업	-	87	2.57	109	2.88	1.8	4.05	2.4	4.95
- 상이군인 중소기업	3	29	0.87	38	1.01	0.8	1.45	1.1	2.25

* 자료 : SBA, Small Business Goaling Report(2006~2007) 참조

□ AbilityOne Program 조달실적

연도	2004	2005	2006
조달실적	2,048백만달러	2,241백만달러	2,266백만달러

□ SBIR 프로그램 실적

-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하는 the Small Business Economy에 의하면, SBIR 지원규모는 2005년 회계연도 6,171건에 18.7억 달러의 낙찰이 이루어졌으며, 감사원(GAO)의 보고서에서는 총 지원건수(낙찰)의 약 25% 정도가 상용화한 것으로 추정

- 미국 주별로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제도를 모두 두고 있지는 않으며, 주별 특성에 따라 우대 또는 할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표 3-30> 미국 주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실시여부

주	여성 중소기업	소외계층 기업*	일반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	보호 작업장	계대군인 중소기업	교정 산업	기타
Alabama								
Alaska				○				
Arizona			○				○	○
Arkansas								
California			○					○
Colorado							○	○
Connecticut	○	○	○	○	○		○	
Delaware					○			
Florida								
Hawaii			○		○			○
Idaho								
Illinois								
Indiana	○	○	○	○	○		○	
Iowa	○	○	○	○				
Kansas					○		○	
Louisiana					○		○	
Massachusetts								
Michigan					○			○
Minnesota	○	○	○	○	○		○	○
Mississippi								
Missouri							○	
Montana								
Nevada								
New Hampshire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						
Oklahoma					○		○	
Oregon					○		○	
Pennsylvania							○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xas							○	
Utah					○			
Vermont								
Virginia								
Washington				○	○		○	
West Virginia					○	○	○	
Wyoming								
계	4	5	7	6	13	1	14	6

* 대부분은 소수민족 및 인종을 뜻하나, 일리노이주는 여성 또는 장애인을, 노스캐롤라이나주는 HUBZone 기업을 의미

(4) 시사점

- 미국 연방정부는 정책적 수혜여부를 결정짓는 중소기업 유형을 명백히 구분하여 해당 중소기업 유형에 따라 국가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명시적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8(a) 등 사회적 약자기업 관련 각종 우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계약시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중소기업간에 제한적인 경쟁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등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보훈·복지단체에 해당하는 소외계층 중소기업이나 상이군인 중소기업, 장애인단체 등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 단체 또는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소외계층 중소기업을 위한 8(a) 프로그램이나 가격평가우대제도는 그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여 운영하며 향후 일반중소기업으로 나아가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상이군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단순 수의계약방식보다는 상이군인 중소기업들간 제한경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이 제대군인과 달리 일반 제대군인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은 기업 구성원이 사회경제생활을 수행하는데 특별히 약자로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함.
 - 장애인 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 구성원 전원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중소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지만, 장애인 단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JWOD 법에 의해 구매의무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보훈복지단체 관련 계약제도는 경쟁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추진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

적약자기업간 제한적인 경쟁의 실시 또는 추정가격 3백만 달러 이하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일 경우 수의계약의 한정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국가조달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국가조달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정책목표 모두 국가기관이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의미함.
-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적 성격을 가지는 단체와 비영리 (일반)단체를 엄격히 구분하여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가 무한정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해당 사회적 약자기업(또는 단체)이 자립 및 자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근본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중소기업청 등 1개 또는 2개의 관련기관에서 집중하여 관리·운영토록 하여 정책실행상의 혼란 및 중복을 방지하고, 관련된 필수 보고사항은 의회와 대통령에게 매년 보고되며, 주요 계약부서인 미국 연방조달청(GSA)은 정책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체결·집행하는 전반적인 조달지원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

※ 미국과 우리나라의 보훈복지단체 관련 프로그램 비교

구분	미국	한국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상이제대군인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에 지원	-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사회단체 등 특정단체에 지원
조달방식	- 3% 구매목표에 따라 제한경쟁	- 물량배정으로 인한 수의계약
특성	- 8(a) 프로그램, 가격우대제도 등 경쟁유도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 경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취약

2. 영국의 사회적 약자기업 조달지원제도 분석

(1)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유형과 지원방향

가) 사회적 약자기업 정의 및 유형

- 영국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은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 소수민족 기업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의 경우 약자기업은 소기업(Small Business)을 지칭하는 반면, 영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중소기업(Medium & Small Enterprise)을 범주에 넣고 있음.
- 영국에서 중소기업은 기업법(Company Act of 1985)에 의거, 매출액(turnover), 대차대조총액(balance sheet total), 고용인수(employee)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 중 적어도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중기업은 매출액이 22백만 £ 미만 또는 대차대조총액이 11.4백만 £ 미만이거나 고용인의 수가 250인 미만인 기업이며, 소기업은 매출액 5.6백만 £ 미만 또는 대차대조총액 2.8백만 £ 미만이거나 고용인의 수가 50인 미만의 기업임.

<표 3-31> 영국의 기업범위 기준

구분	①매출액	②대차대조총액	③고용인 수
소기업	5.6백만 £ 미만	2.8백만 £ 미만	50인 미만
중기업	22백만 £ 미만	11.4백만 £ 미만	250인 미만
대기업	22백만 £ 이상	11.4백만 £ 이상	250인 이상

- 영국의 기업은 2006년 기준으로 4,466,700개로 추정되며, 이는 2003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이 중 99.2%가 고용인 수 0~50인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되며 고용인 50~250미만인 중기업은 전체의 0.6%인 것으로 나타남(BERR 중소기업통계[SME], 2006).
- 영국에서 장애인기업(Disabled Owned business : DO)은 공공계약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SI 2006 No. 5)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애인보호기업(Supported Business)과 장애인 작업장(Supported Factory)으로 구분
 - 장애인 보호기업 : 피고용인의 50% 이상이 선천적으로 또는 중증 장애로 인해 공개경쟁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기업
 - 장애인 작업장 : 피고용인의 50% 이상이 선천적으로 또는 중증 장애로 인해 공개경쟁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시설물
 - Remploy(장애인 복직 및 고용 촉진기관)에 등록된 장애인 기업은 83개(장애인 5,000여명 고용) 업체가, 정부구매자에게 필요한 장애인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Online Supported Business Directory에는 42개 업체가 등재되어 있음.
- 소수민족기업(Black and Minority Ethnic Business, BME)은 Equality and Human Right Commission(중전 CRE,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의 정의에 따라, 1 이상의 소수민족(영국 백인을 제외한 기타 민족) 그룹이 지분의 51%이상 소유한 기업 또는 적어도 소유자의 50%

가 소수민족그룹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

- 재향군인회(Royal British Legion)는 영국의 제대군인에 대한 사업자문, 대부 등을 하고 있는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한 단체임.

나) 목적 및 지원방향

- 영국의 정부조달 정책은 구매효율성(Value for Money : VFM)의 극대화를 정책기조로 설정(재무성 회계지침 Government Accounting 2000 제22장 Procurement 참조)하고 있음.
 - 정부조달에 있어 VFM¹³⁾은 경쟁성을 기반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지출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달성·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함.
 - 영국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획득력의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입찰참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입찰참여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부사업에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구매효율성(VFM)을 달성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 중소기업도 정부조달에서 대기업과 차별 없이 참여 가능하며, OJEU(EU Official Journal)에 공고되지 않는 EU의무조달 미만 조달에 있어서 포털 웹사이트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입찰정보 획득 가능
 -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SCA(Special Contract Arrangement) 프로그램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구매효율성(VFM)에 의한 구매임(우리나라처럼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구매하는 것은 아님).

13) VFM은 “수요자(User)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전 생애의 비용(whole life cost)과 품질(또는 조달목적에의 적합성)의 최적 결합”으로 정의

- 결과적으로, 영국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시행하지 않으며, 다만 중소기업이 정부입찰에 적극참여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VFM 제고에 기여한다는 입장 하에서 다양한 간접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경쟁의 바탕 위에 제한적인 혜택을 부여함.

(2) 지원 프로그램

- 영국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조달참여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는 기업법(Company Act), 조달협약(Procurement Concordat), 공공계약규정 2006(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 등에 있음.

가)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 중소기업 사전자격심사 간소화
 - 영국은 발주기관별로 사전자격심사(PQ)를 통해 입찰초청후보자를 설정하는데, 이는 자격심사가 복잡하고 개별 기관별로 심사를 받음으로써 중소기업에게는 행정부담은 물론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 영국의 조달담당 기관인 조달청(the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OGC)에서는 간소화된 표준 자격심사질문서(Simplified national 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를 개발 및 보급하여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사전자격심사에 임할 수 있게 하였음.
 - 반복적인 사전자격심사(PQ)로 인한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부담해소를 위

해, ‘건설분야’에 한해 제3의 기관인 Constructionline을 설립하여 통합 사전자격등록정보 DB서비스를 제공

□ 지방정부의 ‘소기업 친화적 조달협약(Small Business Friendly Contract)’ 가입 추진

- 대기업에 비해 조달접근기회를 차별받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소기업 친화적 협약’에 모든 지방정부가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143개 지방정부(Council)가 가입되어 있음.
- 소기업 친화적 조달협약 상에서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
 - 해당 지방정부의 조달전략 수립 : 중소기업, 소수민족기업, 사회기업 등의 조달참여 촉진방법을 포함하고 대형계약의 일부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전략 수립
 - 조달기회에 대한 접근 보장 : 해당 지방정부와 거래에 대한 가이드, 입찰기회의 세부내용, 개별계약의 세부 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공표
 - 핵심공급자(Key Suppliers)에 대한 세부사항
 - 잠재적 공급자에게 지방정부의 요구조건이나 공급자의 적합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달에 대한 토론회 부여
 - 주 계약자(prime contractors)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소수민족기업, 사회기업 등이 공급망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 계약자 세부사항을 인터넷에 공표
 - 공정한 입찰과정
 - 모든 입찰자에 대한 공정한 정보 접근 기회 보장
 - 공급자의 입찰참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찰절차의 간소화
 - 사전자격심사(PQ)시 핵심 공통심사사항을 지방정부 전체에 사용
 - 사전자격심사 및 입찰평가는 공표된 기준만을 평가하고, 특히 재무상태

평가기준은 신규 기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불합리하게 설정하지 않음.

나) 장애인 기업 지원정책

□ 특별계약조치(SCA : Special Contracts Arrangement)

- 과거 장애인 관련 기업에 우선 계약을 보장하는 우선공급자제도(PSS : Priority Supplier Scheme)가 있었으나 EU 조달원칙인 내국민 우대 및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어 1994년 11월에 폐지, 대신 특별계약조치(SCA)를 도입
- EU 공공조달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금액 이하(물품 및 용역 : 137,000 유로, 공사 : 5,278,000 유로 이하)의 국내 조달계약에 대해 장애인 관련 기업에 제한적 입찰 혜택 부여하는 것임.
- 특별계약협약(SCA)에 등록된 중증 장애인 인력을 50% 이상 고용한 비영리 기업에 대하여 정부구매자는 이들과의 거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특별계약조치(SCA)에 등록된 장애인 기업이라도 우선 구매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낙찰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다음의 제한적인 경우에 SCA 등록 공급자를 배려
 - 다수의 입찰자가 경제적으로 동등하게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SCA 등록 공급업자를 우선 낙찰
 - SCA 등록 공급자의 입찰이 가격 때문에 수락되지 않을 경우(품질, 수량, 납기 등은 채택)에는 수정 입찰제안서(Offer back)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최상의 제안서에 부합 시 해당 입찰을 낙찰
 - 그러나 수정 입찰제안서(Offer back)를 입찰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적용범위
 - 중앙부처 및 소속 집행기관 등과 거래시 SCA 적용
 - 영국 이외의 EU 장애인 관련 기업에도 SCA 혜택 부여
 - EU 공공조달지침 적용대상 기준금액¹⁴⁾ 미만의 공공조달계약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기업은 잡센터플러스(Jobcenterplus;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산하기관)에 언제라도 등록가능
 - 매년 Official Journal(EU 관보)에 등록신청 공고
 - SCA 등록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해당기업에 공헌해야 하고, 보수도 비장애 직원과 동등하게 지급받아야 함.

- 구매기관은 SCA의 활용과 성과, SCA 등록공급자 계약금액, 수정 입찰 제안서(Offer back)를 통해 낙찰된 계약금액의 기록을 유지하고, 잡센터플러스에 통보해야 함.

- 특별계약협약(SCA)은 우리나라의 보훈·복지단체 생산 제품에 대한 물량 배정제도와는 달리 중증 장애인을 50%이상 고용하고 있는 비영리 기업이라도 가격, 품질 등에 따라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되어 있음.

□ 유보계약(Reserved Contract)

- GMB 등 영국의 장애인단체가 유럽의 관련 단체와 연계, 장애인기업의 정

14) EU 공공조달지침 적용대상 기준금액(2006년 1월부터 적용)은 물품의 경우 £93,738(€137,000), 용역의 경우 £93,738(€137,000), 공사의 경우에는 £3,611,319(€5,278,000)임

부조달 혜택부여에 관한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2006년 1월 31일부터 발효되는 EU 신공공조달지침에 장애인 관련기업에만 입찰참가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유보계약(Reserved Contract)이 신설(➡ 국제입찰에도 확대)

- 장애인 기업의 유보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EU 신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04/18/ EC) 제19조와 공공계약규정 2006(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 제7조가 있음.
- EU 신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04/18/EC) 제19조 : 장애인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에 대해서만 입찰참가권리를 부여하는 유보계약(Reserved Contract) 규정을 신설
 - SCA와는 달리 일정금액 이상 EU 공공조달지침이 적용되는 조달에도 장애인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공공계약규정 2006(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 제7조 : EU 신공공조달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2006년 1월 31일부터 발효), 동 규정 제7조는 신공공조달지침 제19조를 이행하기 위한 내용임.
 - 신공공조달지침의 ‘장애인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은 영국에서는 ‘장애인기업(supported business) 및 장애인 작업장(supported factory)’를 의미하므로, 장애인 기업이나 장애인 작업장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
- 유보계약은 일반적인 공공계약 낙찰뿐만 아니라 기본협약(Framework)¹⁵⁾, 역동적 구매시스템(Dynamic Purchasing System)¹⁶⁾에도 적용 가능함.

15)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이란 계약당국과 공급자간 일정기간(4년 미만)동안 하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조건(특히 가격 및 적절한 경우 수량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협약을 의미함. 이러한 기본협약은 일반 입찰절차를 통해 구체적 계약의 전제가 되는 가격과 수량에 관한 적절한 공급자들을 미리 선정하고 이후 구체적 계약시 이들을 다시 경쟁시키거나 정해진 가격과 수량으로 계약체결이 가능

16) 역동적 구매시스템((Dynamic Purchasing System)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건조물, 공사 혹은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당국이 정한 규격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자에게 일정기간(4년 미만) 전자화된 구매시스템에 진입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전자적인 기본협약의 일종)함

- 적용범위
 - EU 공공조달지침의 적용을 받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기관을 포함
 - 영국 이외의 EU 장애인 관련기업에도 적용
 - EU 공공조달지침 적용대상 기준금액 이상의 조달에 적용(단, EU 기준 금액 이하에서는 특별계약조치(SCA)를 적용)

- 유보계약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현행 대규모 계약으로 제 공되지 않는 틈새제품이나 용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주계약자가 장애인 기업을 하청업자로 선정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다) 재향군인회의 정부조달

-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에 대한 사업자문이나 대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들이 조달관련 활동을 하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조달상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제도도 부재함.

(3) 시사점

- 영국정부는 미국정부보다 더 특별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한경쟁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등의 직접적인 특혜는 없고, 다만 장애인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좀 더 많은 입찰참가의 기회를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평등, 즉 간접지원 방식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모두 구매효율성(Value for Money)의 정책기조에 입각하여 경쟁 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음.

3. 일본의 사회적 약자기업 조달지원제도 분석

(1) 일본의 중소기업 정의 및 법적 근거

□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의 범위는 각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의 회사 또는 개인으로써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
- 도매업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또는 개인으로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자
- 서비스업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회사 또는 개인으로써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
- 소매업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5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으로써 해당업종에 속하는 주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 일본 관공수(官公需) 시책의 법적 근거

- 국가 등의 물품, 용역 등의 조달에 관하여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관공수(官公需) 시책)에 대해서는平成 11년에 근본적으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소화38년 법률 제154호)」 제21조와 관공수(官公需)

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소화41년 법률 제97호)」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음.

- 주요내용은 국가 등은 국가 등의 계약체결에 있어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유의하고, 세계무역기구 정부 조달협정 및 정부조달에 관한 각종 행동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중소기업자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정세를 바탕으로 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에 준거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 등의 계약방침에 근거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
- 이와 더불어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대한 적정한 전가를 받아들이도록 하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국가 등의 계약방침을 참고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자에 관한 계약방침을 책정하는 등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즉 일본의 관공수(官公需) 시책은 중소기업자가 국가경제의 활력유지 및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갖는 것에 비추어 그 경영기반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국가, 독립행정법인 등의 조달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 일본의 정부조달 관련 중소기업지원의 주요 지침

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

- 국가 등은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투명성의 향상과 공정한 경쟁 확보에 유의하면서 정보 제공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국가 등은 중소기업자를 위한 계약 실적금액 및 목표금액에 대해서 각 성 및 각 청별로 정보제공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등은 상기 내용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자를 위한 계약 실적금액 및 목표금액에 대하여서 물품, 공사 및 용역 별로 상세하게 정보제공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등은 경쟁촉진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지표로서 입찰건수 등의 정보 제공에 노력함.

② 중소기업 관공수(官公需) 특정품목 등 발주정보 등의 제공 및 수주기회 증대

- 국가 등은 중소기업 관공수(官公需) 특정품목(직물, 겂옷솜옷류, 기타 섬유제품, 가구, 기계뜸 일본종이, 인쇄, 윤활유, 사무용품, 부엌·식탁용품 및 재생 플라스틱 제 제품)에 관한 발주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발주계획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 단체 중앙회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국가 등은 발주계획에 관한 정보제공을 실시한 특정품목 가운데 낙찰가격 등 계약결과에 관한 정보제공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단체 및 중앙회 등을 통해 제공함.
 - 국가 등은 중소기업 관공수(官公需) 특정품목의 발주할 때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 증대를 도모함.
 - 특정품목 이외의 물품, 공사 및 용역으로 정부 조달협정 등에 근거하여 관보에 게재되는 것을 제외한 일반경쟁 발주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공사로서 공모형 지명경쟁의 발주에 관련된 정보를 중소기업 단체 및 중앙회 등을 통해 중

소기업에게 제공함.

- 특정품목 이외의 물품, 공사 및 용역으로 정부 조달협정 등에 근거하여 관보에 게재되는 것을 제외한 일반경쟁 및 공모형 지명경쟁의 발주에 관련된 정보를 중소기업 단체 및 중앙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제공함.

③ 관공수(官公需) 적격조합 등의 활용

- 국가 등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청이 증명하는 관공수(官公需) 적격조합을 비롯한 사업 협동조합 등의 수주기회 증대 도모함.
 - 국가 등은 관공수(官公需) 적격조합제도에 대해 관공수(官公需) 적격조합의 발주기관별 수주실적을 공표하는 것 외에 각성 및 청 등은 중소기업청과 협력하면서 발주기관에 대해,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해당 제도가 주지되도록 노력해야 함.

④ 지명경쟁계약 등에 있어서의 수주기회 증대

- 지명경쟁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일 자격 등급 구분 내의 해당자에 의한 경쟁 확보 등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하며, 일반경쟁의 경우도 동일함.
 - 자격등급에 대응하는 계약의 예정금액에 대해서는 가격수준의변동등도 감안하면서 적시에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한층 더 적정화를 도모하도록 하며 이를 공표함.
 - 중소기업 등과 관련되는 발주, 중소기업 관공수(官公需) 특정품목 관련 발주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는 지명경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의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하도록 노력

- 국가 등은 특히 소액의 계약 안건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하도록 노력

⑤ 특정품명 지정의 폐지

- 국가 등은 물품 및 공사, 용역 등을 발주할 경우 정부 조달협정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가격, 수량, 공정성 측면에서 판단하고 분리·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를 실시하도록 함.
 -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한 관점에서 적절한 발주 단위 설정을 전제로 분리·분할 발주토록 함.
 - 국가 등은 분할발주가 공정성 및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형태로 자의적 실시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만족하면서,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분할발주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해당 분할발주에 관한 이유를 공표하도록 함(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이같이 요청함).
 - 국가 등은 중소기업청이 정리한 효율적인 분리·분할 발주와 관련 사례를 참고로 활용하고 동시에 분야에 따라 내부인재 육성 내지 외부인재의 활용 등에 의해 발주능력의 향상 등 치제 정비에 노력해야 함.

⑥ 계획적인 발주 추진 및 노동시간 단축에의 배려

- 국가 등은 물품 및 공사, 용역 등의 발주에 있어 가능한 한 계획적인 발주를 실시토록 하며 법정 노동시간인 주40시간제 실시, 중소기업자의 주휴 2일제 등을

바탕으로 적정한 납기, 공사기간의 설정에 배려해야 함.

⑦ 적정가격에 의한 발주

- 국가 등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물품 및 공사, 용역 등의 발주에 있어 수급상황, 원재료 가격실정,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⑧ 지방 지분부국(支分部局) 등에 있어서의 현지 중소기업자 등의 활용

- 국가 등은 지방 지분부국(支分部局) 등의 계약 한도액을 적시에 재검토 실시하도록 필요한 경우 인상하며, 지방 지분부국(支分部局) 등에서 소비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의 지분부국(支分部局) 등의 조달을 촉진시켜 현지 중소기업자 등의 수주기회를 증대하도록 노력함.

⑨ 중소 건설업자에 대한 배려

- 중소건설업자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중소 공사의 조기발주 등에 의해 중소 건설업자에 대해 특별히 배려하여 수주기회 증대에 노력하도록 함.
 - 지명경쟁의 경우, 적극적으로 동일 자격등급내의 해당자에 의해 경쟁해야 하지만, 우량한 시공 성적을 올린 중소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상위의 등급에 속하는 공사와 관계되는 경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함.
 - 특히 공공공사 발주의 경우, 공동도급의 적절한 활용 추진 등에 의해 중소 건설업자에 대한 수주기회 증대에 노력함.

- 현지 건설업자, 전문공사업자 등 중소기업자를 활용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기대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리·분할하여 발주하도록 노력함.

⑩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수주기회 증대

- 국가 등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공공사업을 제외)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함.
 - 국가 등은 정부조달(공공사업 제외) 계약과정의 전자화를 추진 : 부처연락회의 간사회 결정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자 등의 입찰 참가기회의 확대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입찰 참가기회의 확대조치에 대해서 기술혁신이나 그에 따른 산업동향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그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실시상황을 정리하여 공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확대조치의 활용 노력
 - 국가 등은 기술력의 정당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자에 관한 입찰 참가자격의 탄력화를 진행시키며 수주기회 확대를 도모해야 하며, 중소기업 기술 혁신제도에 있어 기술개발 보조금 등의 교부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등 객관적 평가에 노력

⑪ 신규 개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

- 국가 등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의 창출·육성에 의한 고용창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규 개업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공공사업 제외)의 증대를 위해 특별히 배려토록 노력함.
 - 국가 등은 신규사업자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판매 등

과 관련된 입찰 참가자격의 바람직한 구분에 대한 검토 실시

⑫ 조달절차에 관한 간소·합리화

- 국가 등은 경쟁계약 참가자격자의 심사에 대해 신청 서류의 통일화 및 신청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함.
 - 국가 등은 국가에 있어서의 경쟁계약 참가자격 심사 신청절차의 전자화 실시 상황 및 입찰·개찰 절차의 전자화 도입 상황 등을 바탕으로 하여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전자적 수단 도입 노력하도록 함.

⑬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노력 조장

- 국가 등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노력을 조장하기 위해 관공수(官公需)에 관한 정보를 실정에 맞게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 국가 등은 관공수(官公需)의 수주에 의욕적인 중소기업자의 수주능력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중소기업자의 상단에 따라 자격등록, 입찰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도 노력을 해야 함.
 - 이를 위해 계약담당관 등을 두어 부나 국마다 관공수(官公需) 상담 담당자를 명확히 하여 「관공수(官公需) 상담 창구」를 상설하는 것 외에 국가 등의 주요 발주기관 일람 및 관공수(官公需) 시책의 개요 활용 등으로 중소기업자로부터의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국가 등은 중소기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등의 지원책을 이용하는 등 연구개발에 의욕적인 중소기업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정보 제공하는 등 중

소기업자의 자주적 노력을 조장하도록 노력함.

- 국가 등은 중소기업자가 외상판매 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을 통해 새로운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외상판매 채권의 양도금지 특약 해제 등의 조치를 통해 외상판매 채권담보융자보증제도, 하청 세이프티 넷(Safety Net) 채무보증 사업 등의 이용을 촉진시킴.
- 국가 등은 중소기업자의 활력재생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정리한 발주기관 소재정보 등을 중소기업 재생지원협의회, 중소기업 단체 중앙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함.

⑭ 중소기업자에게의 설명 철저

- 물품 및 공사, 용역 등을 발주할 경우 중소기업자의 입찰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성능, 규격 등 필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함.

(3) 시사점

- 일본에서도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통틀어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주로 이루고 있음.
 - 미국이나 영국,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각각의 지원정책이 있기 보다는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달관련 지원정책이 존재함.
 - 주로 수주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직접적으로 특혜를 주기 보다는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 호주/뉴질랜드의 사회적 약자기업 조달지원제도 분석

-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대규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약자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음.
- 호주정부는 기업의 규모와 외국기업 등에 대한 정부조달에의 비차별 및 공정경쟁을 주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여성기업, 체대군인기업, 장애인기업, 낙후지역기업 등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가 운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즉, 장애인 기업이나 체대군인 기업을 위한 특정 지원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이들이 소유한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2008년 12월 현재 연방차원에서 재정공지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2가지가 있음.
 - ① 호주 및 뉴질랜드 중소기업에 대한 10% 구매목표 및 지역중소기업 우대
 - ② 소기업에 대한 30일 지불정책
 - 호주정부는 200명 이하의 전일제 직원으로 구성된 호주 중소기업 뿐 아니라 뉴질랜드 중소기업까지 연방조달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호주 정부기관은 조달방식의 참여에 일부러 중소기업을 배제할 수 없는 비차별 원칙을 준용하고 있음.
 - 다만 이들 중소기업은 적어도 구매가치의 10%를 FMA 기관들에게 (CAC 기관 제외)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정부기관은 조달 요구사항과 구매효율성(value for money)에 대해 평가할 때, 호주 및 뉴질랜드 중소기업과 함께 사업할 수 있는 편익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지방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시장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즉, 지방에서는 지역중소기업을 우대한다는 의미임).
- 재정부의 재정공지(Finance Circulars) 2008-10에 의하면, 소기업인 경우 정부정책으로 정부기관은 바르게 교부된 송장을 접수한 지 30일 이내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 여기서 소기업(small business)은 20명 이하의 전일제 직원으로 구성된 기업임.
 - 5,000,000 AU \$ 이상(GSA 포함)을 지불해야 할 경우, 정부기관은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함.
 - 소기업과 1,000,000 AU \$ 이상으로 조달계약을 하면, 미해결 송장에 대한 부담요금(charge interest)을 공급업자에게 허용하는 계약조건을 포함해야 함.
- 호주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정책에 준용하여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안하는 경우도 있음.
- 뉴질랜드는 특별한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나, 호주정부와 경제협력을 맺고 있어 호주에서 활동하는 뉴질랜드 기업은 호주의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음.
- 호주와 뉴질랜드는 장애인이나 상이제대군인들에게는 직접적인 보상정책을 주로 하고 있으며, 계약방식에 의한 간접적 지원정책은 부재함.

제4장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제1절 추진전략구성을 위한 기본전제

- 행정수요의 충족(양적 및 질적)과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조달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훈·복지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부조달 및 계약방식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조달은 보훈·복지 대상자에 대한 간접적 재정지원 또는 일자리 지원의 차원에서 물량배정 중심의 수의계약방식으로 행해져 왔으나, 대상 단체 선정의 엄격성, 단체별 품목 배정의 공정성, 단체의 성격으로서 보훈 및 복지의 배타성, 조달된 품목의 품질, 기업수익의 단체목적으로의 재투자, 단체회원에 대한 수익 배분의 적정성 등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조달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노정되어 옴.
 - 비록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량배정 중심의 수의계약을 시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동 조달방식 자체의 취지가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 수의계약 등의 정부조달상의 특례조항은 보훈 및 복지 행정의 대상자들로 하여금 신규단체의 구성을 유인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현재와 같은 정부조달 특례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이들의 집단들이 확대될 개연성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물량배정 중심의 수의계약제도는

사회적, 정책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여러 집단들이 보훈대상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복지 관련 정부정책을 통해 정부조달의 특례대상자 또는 집단들이 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보면, 조달물품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의계약 자체는 물론 특히 물량배정은 조달행정의 취지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많음.
 - 아울러 조달청의 수의계약 대상인 보훈·복지단체를 포괄할 수 있는 관련 부처들의 법제도들과 상충되지는 않더라도 중복 또는 불합치되는 경우가 있음.
- 주요 국가들에서도 보훈·복지 ‘기업’에 대한 지원의 형태로 정부조달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의 형태가 아닌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의 경쟁환경 조성방법은 보훈·복지기업을 위한 일정 비율의 조달 할당제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하나 우리와 같이 기업이 아닌 단체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거한 물량배정방식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통한 지정방식의 경쟁계약적 성격이 강함.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본 보고서에서 고려한 기본전제는 다음과 같음.
- ① 본 보고서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현 제도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제시와 더불어 현 제도의 핵심이 되는 물량배정방식을 중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타 다른 계약방식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이때 중기적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안은 MAS방식과 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방식 그리고 제3자단가계약 등이라 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단기적 방안제시의 시간적 범위는 2009-2010년이며, 중기적 방안제시의 시간적 범위는 2011-2013년으로 설정하였음.
 - 이러한 이유로는, 단기적 처방의 경우 조달청 자체내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리라 인식되는 내용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이며, 중기적 방안의 시간범위는 현행 제도와 관련된 각종 이해당사자들이 제도개선 또는 개편에 일정한 적응시간을 가져 일정수준의 제도개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가정되는 최대한의 시간범위로 설정한 것임.

② 본 보고서는 제도개선의 접근방식으로 단계적(점진적)이고 제한적인 경쟁환경 조성방식을 지향함.

- 단계적 접근방식을 지향하는 이유는 첫째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저항 및 혼란을 최대한 억제하고, 둘째 현행 대상단체는 물론 잠재적 단체들에 대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경쟁역량을 스스로 배양하는 데 필요한 학습시간을 부여하고, 셋째 대상단체들의 생산역량의 배양 및 품질 제고되는 경우 수요기관이 이들 단체에 대한 조달품목의 확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 또한 궁극적으로는 본 보고서의 제도개선 시계(time frame)를 넘어선 장기적 관점에서 보훈·복지단체들이 일반 중소기업과 동등한 제품과 품질로 일반경쟁계약방식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임.

- ③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추진체계는 조달청을 주축으로 제시됨.
-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방식 개선에 따른 세부 Action Plan의 실행주체가 다양하므로, 정부조달의 주요부서인 조달청이 주축이 되어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구체적 Action에 대한 time Schedule은 선행되는 제도개선과 업무협조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경쟁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보훈·복지단체의 적절한 생계 수준 확보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 주무부처의 담당기능으로 보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논외로 함.
- ④ Action plan에서 담길 내용의 범위는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품목, 법·제도적 개선 등에 한정함.
- 보훈·복지단체 범위 : 현재 수의계약방식을 취하고 있는 45개 기관(20개 보훈단체, 14개 장애인단체, 11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한정함.
 - 대상품목 범위 : 51개 품목(일반경쟁품목 9개, 중기간 경쟁품목 36개, 장애인우선구매물품 6개 등)에 한정함.
 - 법·제도 범위 : 국가계약법 등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을 직·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제도를 대상함.

제2절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방법

1)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제도 개선의 필요성

-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에 수의계약방식을 적용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문제점은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 자격요건의 불명확성, 이들 단체에 대한 적극적 관리체계 미흡, 조달품목의 품질에 대한 수요기관의 불만, 실효적인 보훈·복지단체 지원체계 부족 등임.

- 첫째, 수의계약 자격요건 등 운영기준이 불명확함.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에는 직접생산만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품질의 확보가 어렵고 기술능력이 부족한 품목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음.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1항 제7호 바목, 제8호 다-바목) 등에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각 단체 설립 또는 수익사업의 근거가 장애인복지단체를 제외하고 명확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는 직접생산, 장애인 5인 이상 생산참여, 생산근로자 70%이상 장애인 등을 규정
 - 그 외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 2에 제1항과 제5항에서 추정할 수 있음.

- 둘째, 단체 설립과 관리 등 보훈·복지단체의 주무부처 관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조 제2항은 직접생산을 수의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감독부처가 확인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등 적극적 관리가 미흡함.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소기업(보훈·복지단체 포함)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하나, 보훈·복지단체는 해당단체의 인가기관에서 확인하도록 중기청 고시로 허용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음.
- 주무부처의 단체 신규설립요건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 부족으로 수의계약 목적의 보훈·복지단체가 무분별하게 허가(또는 지정)되고 있음
- 수의계약 자격요건, 단체별 대상품목 및 품목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무부처에서 단체설립 허가(지정)를 용인하는 분위기임.
-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 부여는 목적인 간접적 재정지원 및 일자리 창출의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체계가 미흡함
- 보훈·복지단체의 수익금이 상이자 및 장애인에게 지원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 단체가 수의계약을 영리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이 발생하고 있음
- 셋째, 보훈·복지단체 조달품목의 품질저하 등으로 인한 수요기관의 불만이 초래되고 있음.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 결여로 품질저하에 따른 수요기관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음.
- 계약수주를 위한 단체행동 및 단체간 갈등으로 계약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의 200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피복류 등 보훈·복지단체 물품의 사용자 불만이 22.2%를 차지하고 있음.
- 넷째, 상이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부족으로 수의계약 등 간접적 재정지원에 대한 욕구가 큼.
 - 매년 보훈 연금과 장애인 수당 등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국민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고려할 때 아직 미흡한 수준임.
 - 최저생계비 대비 지급수준 : 상이군경 73%, 고엽제 피해자 35% 등
- 기존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방식에 대한 문제점 진단결과, 수의계약을 통한 간접적 지원과 조달품목에 대한 품질제고가 요구됨.
 - 조달정책과 관련하여 보훈·복지단체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 등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달물품의 수요기관이 품질에 만족함으로써 MAS나 일반경쟁체제가 도입되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을 수의계약방식에서 제한적일지라도 경쟁방식을 가미함으로써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조달청은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을 경쟁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달방식의 활용을 통한 조달물품의 품질향상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지향해야 함.
 - 기존 조달방식(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방식)을 경쟁방식 등 다른 계약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

- 단계별 접근은 기존 보훈·복지단체와 조달품목에 대한 확대 억제와 수의계약관련 규정 중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확인 등 기존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불비한 제도를 보완하여 기존 수의계약단체의 조달방식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추진전략

- 보훈·복지단체 관련 정부조달정책에 부분적일지라도 경쟁체제(또는 현 체제에서 변화)를 도입할 경우, 기존 제도를 통해 각종 수혜를 얻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많은 저항이 예상됨.
- 기존 조달청 관련부서가 제도개선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보훈단체, 복지단체(장애인, 사회복지) 등의 의견을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 결과, 제도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자신들의 이익주장을 위한 제안이 다수 제시되고 있음.
- 연구진이 2009년 2월 10일~23일까지 수의계약을 수행하는 보훈·복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모두 기존의 물량배정방식을 전제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는 찬성하나, 일반경쟁방식으로의 전환 등 물량배정방식 자체의 변화에는 부정적으로 응답함.
 - 반면 물량배정의 규모나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응답은 다수 확인됨.
- 경쟁정책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수혜집단, 관련부처 그리고 정책관련 당사자들과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

- 기존의 수의계약방식을 경쟁체제를 가미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관련 법규의 정비, 저항을 최소화하는 점증적 전환 등의 추진방향이 요구됨.
- 특히, 관련법규의 개정이 제도정착에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보훈단체의 관리감독부처인 국가보훈처, 장애인복지단체와 사회복지단체의 관리감독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 그리고 직·간접적인 관련 기관인 국회, 감사원, 총리실 등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신속한 법규개정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기존 수의계약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에 예상되는 현행 보훈·복지단체들의 재정적 자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기타 직접적인 지원제도의 마련도 필요할 것임.
 - 유예기간은 경쟁체제로의 일부 전환을 일시에 추진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전 홍보와 설득작업을 지속한다는 의미이며, 유예기간 이내에 스스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함.
- 경쟁계약으로 일부 전환하는 정책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종합해보면, 보훈·복지단체의 개념(범위), 수의계약물품, 그리고 관련 법·제도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점증적 (단계적) 개선을 지향함.
- 전환단계를 단기적으로 제도정비기와 중기적인 제도전환기로 구분함.
- 제도정비기는 준비기간이 짧고 시급한 과제로써 현 제도하에서 문제점이 되어 조달청과 보훈·복지단체 모두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제

도개선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임.

- 집단간의 이해상충이 적은 과제로 품목조정, 용역부분의 일부 포함 여부,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수의계약제도, 조달구매의 투명성 제고 방안, 직접생산 여부 확인 강화 및 하청생산업체 도태 방안 등임.
- 제도전환기는 국가조달정책의 틀과 보훈·복지단체의 특례 부여 취지를 조화시킨 내용으로 적어도 3~5년내에 달성이 가능한 과제로 물량배정 방식을 제3자 단가계약방식 또는 MAS 등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단체간 경쟁의 개념을 고려하는 내용임.
- 제도전환기는 물량배정을 받고자 하는 보훈·복지단체의 증가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의 자의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기업 등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지만 이들 단체내에서 부분적으로 경쟁의 개념을 도입함.

□ 이상의 추진전략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제도정비기	제도전환기
기간	현재 ~ 2010(2년)	2011 ~ 2013(3년)
제도 취지	○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나 직접지원의 한계로 인해 간접지원하는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물량배정방식의 보완	○ 재정적 자립을 위해 추진되는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조달정책의 특례를 인정하되, 제한적인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생산 및 판매활동에 자생력 강화
대상 단체	○ 현재 보훈·복지단체로 인정되어 물량배정을 받는 단체	○ 기존 보훈·복지단체와 추가 지정을 받는 단체 ○ 보훈·복지단체 수의 증가에 따라 포괄적인 단체지정 및 경쟁개념 도입을 위한 사회적 기업 개념 도입
조달 방식	○ 기존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제 유지 + 수의계약사유서 제도의 인정	○ 기존 방식의 축소 ○ MAS에 의한 경쟁방식 도입 ○ 제3자 단가계약 전환
대상 품목	○ 기존 지정품목의 유지 ○ 기존 지정품목외 사회적 수요 축소 등에 의한 대체품목 지정 유지	○ 기존지정품목의 수와 규모의 정비 ○ MAS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대상품목전환 ○ 기존지정품목을 제3자 단가계약 대상품목으로 전환
기관간 협력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방위사업청, 국회 등과 법·제도 개선에 협력	

제3절 의제(agenda)별 추진방법

□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수의계약)방식을 단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기적으로 정부조달정책의 원칙과 보훈·복지단체 특례를 조화시키기 위한 의제(agenda)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함.

- 첫째, 보훈·복지단체를 조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 자활용사촌과 같이 설립요건만 있고, 퇴출요건이 없어 한 번 지정된 이후, 수의계약의 목적- 취업기회 제공, 보훈·복지의 직접적 지원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의 보완 등-에 부합하지 않는 특례부여의 재검토
 -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수의계약 자격을 회수하되, 일정기간 유예 및 경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MAS 형태 또는 MAS에 편입을 유도하는 유인책(예: 우선전환시 가점 부여방식) 장구가 요구됨.
 - 국가계약법상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특별법, 자활용사촌관련 훈령 등 법규에 의해 당연히 수의계약 자격을 취득하는 단체 남설을 억제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기업(사회적 기업¹⁷⁾ 등) 자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보훈·복지단체간 출자를 통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여 기술력 및 품질 제고, 경영능력 향상, 경쟁체제 전환 능력 조기 배양, 조달사업을 통한 실질적 취업 및 경제적 자립 능력의 확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부수적으로 조달사업의 특례에 따른 혜택을 얻는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보훈·복지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인가주체가 구분되는데, 이들 모두를 묶어 이들 간의 경쟁

17)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원용하여 보훈·복지단체를 묶을 수 있는 별도의 용어 발굴 필요. 예)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로 묶을 경우 복지단체는 쉽게 포함할 수 있으나 보훈단체는 포함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이들 단체의 불만도 초래할 수 있음

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함.

- 2008년말 기준으로 45개 수의계약 가능 보훈·복지단체를 단계적으로 MAS 등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 둘째, 물량배정에 의한 조달품목을 MAS 등 제한적인 경쟁방식으로 전환하는 전략
 - 51개 품목 중 고도의 기술능력 등이 필요한 품목과 일반경쟁방식에 의해 조달이 효율적인 단순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MAS 또는 일반경쟁으로 전환함.
 - 보훈·복지단체가 수의계약품목 중 반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품목 및 대체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지 않고, 이들 품목은 MAS 또는 일반경쟁품목으로 전환함.
 - 서비스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지정은 서비스 및 인건비에 대한 원가개선이 어려운 등 관련 자료가 축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추후 논의함.
- 셋째, 조달방식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중심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 경쟁방식을 도입
 - 수의계약방식에서 MAS 등 방식으로 전환하여 제한된 보훈·복지단체에 배정된 물량이 단순히 나눠먹기식 할당이 아닌 이들 단체간에 경쟁력이 있는 단체에 실효적인 간접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달방식을 전환함.

1) 보훈·복지단체의 일반경쟁체제 전환 방향

(1) 보훈·복지단체의 법적 성격과 이의 정비방향

-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의 특수적 지위를 누리는 보훈·복지단체 45개는 민법을 근간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 설립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고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 열린문화진흥회, 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14개 장애인 단체가 있음.
 - 특수법인은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통칭하며, 민법 제32조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와 사회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월남참전전우회, 에덴복지재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12개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함.
 - 16개 용사촌은 대한민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원에 관한 훈령(총리훈령)과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원규정(국가보훈처)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법리상 훈령 및 규정에서 정한 지원사항을 국가계약법의 시행령을 통해 뒷받침하는 법리상의 모순이 존재하며, 당초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형태로 출발하였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보훈·복지단체별 수의계약 근거 및 해당단체는 다음과 같음.

해당조문		대상단체	단체수	승인기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바목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16	국가보훈처
	제8호 다목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2	
	제8호 라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2	보건복지부/지자체
	제8호 마목	상이단체	1	국가보훈처
	제8호 바목	장애인 복지단체, 고엽제 전우회	14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계			45	

- 이들 수의계약 대상단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2008년을 기준으로 45개 단체로 이들을 보훈단체 20개, 장애인단체 14개, 복지법인 11개로 구분할 수 있음.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복지법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무상무용사촌, 대방동재활용사촌, 보광용사촌, 보은용사촌, 부산의용총복지공장, 부산재활용사촌복지공장, 시흥용사촌(안흥합섬), 신생중상이용사촌, 신창용사촌(신창산업), 십자성마을회, 울산병영용사촌, 춘천자활용사촌(대한보훈산업), 충무용사촌, 평화용사촌, 사)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동산용사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북무용촌	무등장애일자활공동체, 기능장애인협회, 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광주장애인자립복지회, 광주지체장애인협회	곰두리 복지재단 미망인모자복지회 안동시온재단 애국단체원 에덴복지재단 월남찬전전우회 인강원 선아복지재단 동암 무지개공동회 손과손
20	14	11

- 보훈·복지단체의 조달방식을 MAS 등 경쟁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데 단계적 접근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할 것임.
 - 큰 흐름은 기존 45개 단체 중 법적근거가 미약한 16개 용사촌을 1차적으로 정비하고, 수의계약 임의단체(상이군경회, 15개 장애인단체 등)에도 MAS 등 방식을 적용함.
 - 수의계약에 대한 지위를 회수하더라도 이들 단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종료된 단체에 대해 MAS를 활용한 이들 단체간의 경쟁방식을 유지함.
 - 유예기간 중 보훈·복지단체에게 제도개편의 취지의 명확한 인지, 자체 경영능력 강화, 단체의 생산품에 대한 품질제고 능력의 향상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우선 MAS 등 조달방식 전환단체에 대해 대상기관 선발시 가점 부여, 부분 평가 면제 등 검토 필요, 품목전환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검토함.

- 또한 MAS 등 우선 전환 단체에 대해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간접지원의 필요성과 기존물량배정방식 그리고 MAS 등 방식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단체의 구성원인 상이자, 장애자를 일정비율 고용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 일반경쟁(적격심사), MAS 계약(적격성 평가) 등에 대해 약자기업 우대분야(적격심사는 신인도 분야)에서 총점대비 3%(적격심사의 경우: 2~3% 중 3%가 최대치) 등으로 대폭 확대함.

* 기존 전체근로자 중 상이자 및 장애자의 고용비율에 따른 가점 체계

고용비율(%)	가점	비고
10%이상	3	현재도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에 0.25-1점의 가점을 주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높음
7-10	2.5	
5-7	2	
3-5	1.5	
1-3	1	

- 또한 보훈·복지단체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상이자나 장애자들의 사망 등으로 유가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현저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직계 유가족이 그를 대신하여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유가족 등록에 대한 세부규정은 보훈·복지단체의 재량에 의하나, 계약시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유가족은 직접적인 상이자 및 장애자가 아닌 준회원 수준으로 취급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구성비율(예 : 1/3명)로 계산, 가점 고려시 참고할 수 있음.
- 단, 상이자 및 장애인이 10명인 단체와 직계 유가족이 30명이어서 상이자 및 장애인 10명으로 취급되는 단체 중 우선순위는 전자에 있음.
- 이 유도수단은 보훈·복지단체의 고유한 특성에 입각하여, 구성원인 상이자 및 장애인에게 정부계약을 통한 간접적 지원의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그가 사망함으로써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

원상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직계가족에 한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 신규 보훈·복지단체 지정의 억제와 기존 수의계약 단체 중 제도취지가 퇴색한 단체의 퇴출 또는 근거규정 정비 필요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부여에 따라 단체 신규등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신규 보훈·복지단체(즉, 수의계약 대상자)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부처(인허가권자)와 협력이 필요함.
 - － 보훈·복지단체 신규 지정을 억제하는 노력과 신규 단체 지정이 수의계약 특혜를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구조의 개혁 필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1항의 관련 내용 개선 필요)
 - － 자활용사촌과 같이 수의계약 부여시 자활용사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단체등록의 취소 및 수의계약 특혜 해지 등을 관련 규정에 명시해야 할 것임.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체제의 미흡에 따른 관련부처별 관리기능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현행 법규상 신규단체 설립은 주무부처 소관이고, 추세상 점증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수의계약 직접규정, 일반적인 직접생산에 대한 검증, 수의계약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목적내 활용 등에 대한 감시체제가 미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또한 주무부처의 이익금 활용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제도정비기에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수의계약 자격배제 등을 추진해야 함.

- 수의계약과 관련한 자격요건 등에 대한 관련 법규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수의계약요건이 불분명하여, 이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과 같이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수의계약 승인요건과 관련하여 단체설립허가기관에서 수의사업 승인요건을 강화하도록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품질확보가 어렵고 기술능력이 부족한 품목은 수의사업 승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승인기관에서만 수의계약을 승인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임.
 -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요건과 관련하여 규정된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생산장비 보유와 생산인력 보유 및 실제 생산여부를 실질적으로 직접 확인토록 강화해야 할 것이고, 임차공장의 경우 부분임대 불인정, 주무부처의 직접생산여부 확인을 현장실사 중심으로 운영하며, 이들 기관에 대해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의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보훈·복지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MAS와 일반경쟁계약에 참여하도록 유도

- 보훈·복지단체 설립인가 및 수의계약 자격취득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최근 10여 년간의 추세를 볼 때, 수의계약 등의 특혜로 인해 보훈·복지단체로 등록하려는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고, 향후 이러

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수의계약을 통해 이들 기관에 배정되는 품목과 물량은 제한되어 있고, 보훈·복지단체로 등록이 수의계약의 특례를 부여받는 것은 해당 물품의 질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품목과 물량 제한과 품질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간접지원방식인 물량배정, 나아가 각종 특례 등의 제도적 효과는 반감될 수 있음.
- 보훈·복지단체가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되면서, 직접생산 여부, 수익금의 적정한 사용, 수의계약 당사자 관리 체계 등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과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등에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이 적극적이지 않고, 해당 사항을 관리감독기관에 위임하고 있어 실질적 확인이 불명확함.
 - 수의계약은 보훈·복지단체 구성원의 경제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체계화되지 못함.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업무가 있어야 하나, 감독관청이 이를 대행함으로써 체계화된 조달업무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¹⁸⁾.

18) 각 감독관청에서는 나름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달업무와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최근에는 특정단체 관련 감독업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2009년 4월 국가보훈처는 보훈복지단체 수익사업 개선을 위해 수익사업 제도 전반에 대해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과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수익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수익사업운영위원회 구성, 외부회계기관 정기감사 의무화,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 수익사업체를 전담관리하는 별도 법인설립, 2009년 8월까지 단체운영과 수익사업을 분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훈·복지단체가 경쟁체제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전준비를 지원해야 함.
 -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보훈·복지단체가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이러한 사전준비 역시 조달정책을 주관하는 조달청의 기능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보훈·복지단체는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전환하여 제한된 경쟁체제내에서 기존 자신들의 수익계약 특혜를 최대한 유지하되, 제한된 경쟁을 통해 품질 개선과 자체 경영능력 강화를 꾀하게 될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 2007. 4.11] [법률 제8361호, 2007. 4.1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②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사회적기업의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장기적으로 보훈·복지단체가 ‘사회적 기업’ 형태로 영리활동을 경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변화가 요구됨.

- ‘보훈·복지단체=수의계약단체’ 형태가 아닌 보훈·복지단체가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부수적 활동으로 영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별도로 기업을 설립하여 제품생산 및 수의계약의 특례를 누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때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규정한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원용하되, 이 개념과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별도의 개념정립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단체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면 될 것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의 범위에 보훈단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보훈·복지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보훈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면 가능할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 2009. 3.22] [대통령령 제21230호, 2008.12.31, 타법개정]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제9조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①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보훈·복지단체가 사회적기업 형태를 설립하여 MAS 또는 제한된 일반경쟁을 유도되면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 그 효과 중 하나는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 특례를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제한된 경쟁(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보훈·복지단체)을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과 경영능력의 강화 등이 지속될 것임.

2) 수의계약 물품에 대한 전환 방향

(1)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물품의 점검과 정비 방향

- 현재 보훈·복지단체에 수의계약대상물품(51개 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점검적으로 MAS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수의계약대상품목 중 해당 단체의 요구와 수요변화에 따라 폐지되는 품목에 대해 대체 품목 지정을 폐지해야 할 것임. 더불어 수의계약대상품목에서 제외된 품목과 해당 물량은 MAS를 적용함.
 - 수의계약대상품목을 일반경쟁물품, 중기간경쟁물품, 장애인우선구매물품 순으로 MAS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수의계약대상품목 51개를 구분하면 일반경쟁물품(9개), 중기간경쟁물품(36개), 장애인우선구매물품(6개) 등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반경쟁물품	중기간경쟁물품	장애인우선구매물품
무대조명, GHP냉난방기, 냉난방기, 흡수식냉동기, 흡수식냉온수기, 칼라팬티, 우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축구화(군용) 등 (9개)	방송장비, CCTV, 무대기계, 공기여과기, 공기조화기, 석재가공품, 호인블럭, 냉각탑, 보일러, 취사/급식장비, 팬코일유니트, 향온형습기, 배전반, 자동제어반, 계장제어반, 도로표지판, 방음벽 및방음판, 돌망태, 용접철망, 양말, 버스승강장, 도로표지판, 가로판매대, 헬스, 가로등주, 조명타워, 유량계, 과학기기, 전등기구, 실물모형, 주차기계장치, 수처리장비, 경관조명, 영상홍보물, 가로등자동점멸기, 사무용가구(목재), 동잠바, 침구류, 일반장갑, 인쇄물, 의료(전·의경용), 철제관물함 등 (36개)	사무용가구(목재), 동잠바, 침구류, 일반장갑, 인쇄물, 의료(전·의경용)(6개) * 중기간경쟁물품과 장애인 의무구매 물품으로 동시 지정

- 보훈·복지단체의 노동력으로 실제 생산 가능한 품목으로 재정리하여 기술 집약도가 높은 품목은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구체적으로 첨단 가공장비, 배전반, 자동제어장치, 방송장치 등 기술 난이도가 높은 제품은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
- 또한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일반물품은 승인을 확대하거나 품목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들 품목에 대한 수의계약의 범위 축소가 요구됨. 다만, 보훈·복지단체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대체품목을 1대1로 설정하는 방안과 물품외에 용역에 대한 부분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에도 청소 등 부분적인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인정되고 있음.

(2)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물품의 구체적 정비방안

- 일반경쟁품목을 우선적으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고, 중기간경쟁물품과 장애인우선구매물품을 2차로 그리고 세부적인 접근차원에서 중기간경쟁 물품 중 방사청의 사례를 검토하여 단계별 전환이 필요함.
 - 중기간 경쟁물품 중 기한이 명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방위사업청의 일반경쟁체제 전환 로드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제품생산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목, 품질 등에 대한 민원 제기 품목, 민간(제3자)의 품질 및 생산여건(물량 등) 고려하여 우선적 경쟁입찰 전환대상을 선택을 고민해야 할 것임.

- 기존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을 통해본 비중이 큰 주요물품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점유율	2006년	2007년
80~100%	인쇄용소모품(37), 메달(30), 판초(12)	인쇄용소모품(30), 묘지석물(50), 컨베이어(5)
60~80%	창호(48), 작업복(36), 봉투(11)	근무복(34), 수위조절기구(8)
40~60%	복사용지(63), 코트(24), 속옷(8)	계장제어장치(148), 화장지(36), 기동복(20)
20~40%	계장제어장치(107), 전력감시장치(73), 방역살충제(53), 정보표지(39), 제진기(20)	석재블럭(128), 쓰레기봉투(57), 유량계(53), 펌프(18), 슬러지수집기(17)

- 점유율, 금액, 시장규모(민간 제3자의 생산력과 품질) 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됨.
 - 3~5년간의 점유율을 고려하여 점유율이 낮은 품목부터 우선 전환하며, 점유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위의 2년간의 자료를 볼 때, 점유율이 높고 단순기술 품목 그리고 시장성이 없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기술 품목과 시장성이 없는 품목들은 우선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타당할 것임.
 - 또한 향후 수요와 관련하여 품목의 내구연한, 잠재시장 규모(예, 향후 수요규모 등) 등을 고려하는 접근도 필요함.
- 제도전환기에는 보훈·복지 1개 단체별 2개 품목 이하, 1개 물품당 세부 품명 2개까지로 제한해야 함.

- 세부품명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등에서 명확하게 유지해야 함.
- 점증적으로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줄이고,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수의계약 및 MAS 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함.
 - MAS 계약으로 조기 전환시 우대방안 등 강구 필요(예: 2단계 경쟁 제외, 수의계약사유서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등 검토 필요)
- 보훈·복지단체가 생산하는 물품 중 실수요기관과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정리해야 할 것임.
 - 불량품 또는 하자 발생빈도가 높거나 물품개선이 필요한 품목 등은 과감히 제외하고 MAS로 전환함.
 - 수차례의 품질조사를 통해 관련 품목을 고시해야 하고, 기존업체들의 품목전환 등에 대한 기회부여가 필요함.
 - 해당단체 및 물품의 수의계약 폐지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 현행 물량배정 대상품목 중 보훈·복지단체 구성원이 직접 생산가능한 물품과 경영이 가능한 품목을 집중 지원해야 함.
 - 물량배정 대상품목 중 보훈·복지단체 구성원이 직접 생산가능한 품목 9개, 경영생산 가능한 품목 26개, 폐지대상품목 16개로 분류할 수 있음.

직접생산 가능(9)	경영생산가능(26)	폐지대상(16)
<p><장애인 우선구매물품> 사무용가구(목재), 동잠바, 침구류, 일반장갑, 인쇄물, 의료(전·의경용) (6개)</p> <p><장애인 생산 유사물품> 칼라펜티, 우의, 양말(3개)</p>	<p>공기여과기, 공기조화기, 석재가공품, 호안블럭, 냉각탑, 보일러, 취사/급식장비, 팬코일유니트, 항온항습기, 도로표지판, 방음벽및방음판, 돌망태, 용접철망, 버스승강장, 도로표지판, 가로판매대, 웬스, 가로등주, 조명타워, 유량계, 전등기구, 실물모형, 주차기계장치, 경관조명, 영상홍보물, 가로등자동점멸기, 측구화(군용), 철제관물함(26개)</p>	<p><침단 장비류> 무대조명, GHP 냉난방기, 냉반방기, 흡수식냉동기, 흡수식 냉온수기, 자동기상관측장비, 교량점검통로(7개) 방송장비, CCTV, 무대기계, 과학기기, 석재가공품, 배전반, 자동제어반, 계장제어반, 수처리장비(9개)</p>

□ 수의 계약대상물품을 취소한 물량은 MAS 방식 등으로 전환함.

- 수의계약 물량 배정 및 배정비율을 조정을 통해 일반경쟁체제 전환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기존 단체 중 50%, 100% 등 20%이상을 배정하고 있는 품목은 20% 이내로 배정 비율을 재조정함.
- 다만,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서 기존단체의 경우는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반영하여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순차적인 배정비율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품목 변경을 허용한 경우에도 신규품목을 간주하여 5% 이내로 제한함.
- 하자발생 또는 납품지연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배정을 중지함.
- 허위서류 제출 등 물량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물량배정 대상에서 취소함.

- 해당 단체가 수의계약 대상물품을 포기하는 경우
 - 수의계약자격을 입증하는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등
-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방식 도입은 기존 품목중심의 MAS계약 및 일반경쟁체제 전환 이후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일부 보훈·복지단체를 중심으로 물품이 아닌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 용역과 서비스를 정부조달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원가산정 및 노동량의 추정 그리고 기술수준에 대한 고려 등이 요구되나, 현재의 수준에서는 이에 대한 산정이 어려움.
 - 따라서 조달청은 용역과 서비스에 대한 원가산정 등 연구를 지속하여 장기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현재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건물청소용역, 경비용역, 전산자료처리용역 등과 같이 서비스 수요자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방법일 것임.

3) 보훈·복지단체 일반경쟁체제 전환을 위한 기관간 협력

- 정부의 보훈·복지단체 지원관련 유관기관들은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업무를 현재의 물량배정방식의 수의계약제도 위주에서 부분적으로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정책기조로 명확히 설정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이유와 방법 및 목적(간접적 재정지원 또는 일자리 지원 등)을 분명히 규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해 설정된 지원범위 이내에서 정부조달업무를 해당 보훈·복지단체의 자립 및 자활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중요한 것은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부조달을 통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등 다른 기관의 직접적인 지원정책도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조달을 통한 보훈·복지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정부조달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인 경쟁성 제고를 통한 효율성 달성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여 정부조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및 조달청과 방위사업청 등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관련 유관기관들은 정책목표와 지원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보훈·복지단체 관련 수의계약 대상물품을 순차적으로 경쟁계약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의계약방식을 통한 단순 지원방식을 해당 단체들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립 및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평등의 지원으로 적극 유도하여 관련 단체와 시장의 혼란 및 반발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또한 보훈·복지단체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별 역량에 적합한 차별적인 맞춤형 지원제도의 개발이 필요함.
 - 구성원의 노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나 수익사업 구성원의 다수가 지원수혜 대상이 아닌 인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에는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그렇지 못한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의계약 제도를 통한 간접적 지원보다는 보훈복지예산을 통한 직접적 지원제도를 적극 수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제대군인 중상이자 단체나 중증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인 등은 조달계약의 큰 흐름에서 장기적으로 수의계약대상에서 일부 경쟁방식으로 적극 전환하고, 정부조달을 통한 간접지원방식보다는 해당 정부기관의 재원을 충분히 활용한 각종 보상금 및 정착금과 연금, 생계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정책대안의 적극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가보훈처 등은 직접적인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기관간 협조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또한 구성원의 노동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인식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제도의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는 선에서 간접지원(수의계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보훈·복지단체 지원관련 정부기관들은 현행 물량배정방식(수의계약)을 일차적으로는 보훈·복지단체간 제한경쟁방식(MAS 등)으로 전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지원방식전환

에 대한 근본기조를 충분히 공감하여, 향후 정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분위기(법, 제도 및 구성원의 공감 등)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이후 해당 단체별로 차별적인 구성원 역량과 지원 필요성 및 지원목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순차적인 지원방식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훈·복지단체의 자립 및 자활을 확립할 수 있음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임.

제4절 단계별 추진방법

1) 단기적 제도정비기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계약제도 운영의 방향은 정부조달방식에 특례인정에 의한 간접적 재정지원임.
 - 현행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중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 국가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간까지 보훈·복지단체의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함.
-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보훈·복지단체의 일반적인 요건사항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모델로 설정하되, 일정기간 해당 물품의 생산실적 등 품질확보 및 계약이행 능력도 추가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는 삭제될 예정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특

별법이나 관련 법령 제·개정시 그 내용을 참조하는 모델로 선정한 것이며, 동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님.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아래 박스 부분 참조

<p>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p> <p>제28조 (생산품 구매 등)</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p> <p>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p> <p>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p>

- 장애인단체의 경우, 최근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선구매적용여건(적용대상, 구매품목, 구매비율)을 준용토록 함.
- 다만, 동 특별법의 적용품목과 구매비율은 2010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 특별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의계약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 생산된 제품으로 지정됨.
- 사회복지법인 등은 전국적인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승인기관에서만 계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만 수의계약 승인이 가능하도록 요건사항에 포함

- 이때 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개별시설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
- 보훈·복지단체 즉, 수의계약 대상범위의 확대를 억제하고, 나아가 수의계약대상 단체의 수를 단계별로 줄이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단계별로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에 대해 MAS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반경쟁방식으로 전환시킴.
 - 이 과정에서 MAS체제로 자발적으로 우선 전환하는 단체에 대한 특례부여를 검토함.
 - 단계별로 수의계약 특례를 잃게 되는 단체들을 MAS 방식에 의해 단계간 경쟁하도록 보훈·복지단체를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립이 필요함.
 - 사회적 기업 개념을 통해, 현재 수의계약 특례를 받는 45개 단체와 향후 보훈·복지단체로 지정받는 단체들간의 경쟁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용사촌 등 당초 보훈·복지단체 지정에 의한 수의계약 특례인정의 사유가 소멸된 단체에 대한 지정해제 조건을 명문화해야 할 것임.
- 물량배정대상 물품 교체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교체 불허 및 교체물품의 수적 증가 억제를 추진함.
 - 물량배정대상 물품 중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1년에 2개 물품범위 내에서 교체를 용인함.
 - 교체 요청일 기준으로 물량배정대상 물품수가 2개 이하인 단체는 1개의

물품을 1개로 하되, 3개인 단체는 3개의 물품을 2개로, 4개 이상인 단체는 4개 물품을 2개로 교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인 물량대상품목의 조정과 억제를 유도함.

- 물량배정대상 물품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용역 제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
-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통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강화
 - 공장등록증과 관련한 제5조의 임차공장의 경우 부분임차도 인정하던 것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강화
 - 직접생산여부 조회와 관련된 제7조의 내용을 신규 수의계약대상 물품 선정요청서 및 물품교체요청서 접수시 반드시 관계기관에 조회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함.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엄격한 사후관리 시행 추진
 - 정확한 실사를 거쳐 회원수, 공장운영, 직접생산여부 확인과 정기적인 사후관리
 -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수익사업 승인물품 및 수익금 사용 내역을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향후 수의계약평가항목의 하나로 활용
 - 수의계약평가는 수익금 사용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계약담당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방안이 있고, 시설공사의 수의계약평가방식을 벤치마킹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전자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좀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나 합리적인 지표 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물품별 물량배정기준을 및 배정실적을 당해 단체에게 공개함.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물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 공개한 결과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물량배정대상 포함)을 중단 또는 취소함.
- 수의계약으로 조달요청한 물품의 규격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사후 공개함.
- 지방청 관리물품도 본청에서 총괄하여 물량배정기준을 조정 및 조달요청물량을 배정함.

<표 4-1> 보훈·복지단체 제도정비기의 내용 요약

단계	제도정비기
기간	현재 ○ 2010(2년)
제도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나 직접지원의 한계로 인해 간접 지원하는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물량배정방식의 보완 ○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의 유지
대상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보훈·복지단체로 인정되어 물량배정을 받는 단체 ○ 다만, 수의계약자격 요건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기본으로 보완(장애인의 직접 생산참여, 참여자 수의 하한 규정, 총 근로자중 장애인의 비중 규정) ○ 무분별한 물량배정방식 대상 단체 확대 억제 및 기존 단체에 대한 제도적 정비 ○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의 정비를 통해 직접생산의 범위 강화
조달방식	○ 기존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제 유지 + 수의계약사유서 제도의 인정
대상품목	○ 기존 지정품목의 유지하되, 교체요구시 일정기간 유예 조치와 교체대상품목의 수를 축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의 정비를 통해 직접생산의 범위 강화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엄격한 사후관리 추진

2) 중기적 제도전환기

- 중기적 관점에서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계약제도 운영방향은 재정적 자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훈·복지단체의 특례와 조달정책의 원칙인 ‘경쟁을 통한 고품질의 물품 조달’을 조화시키는 것임.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물량배정방식에서 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방식, MAS 방식, 제3자 단가계약방식 등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경쟁개념을 도입함.
 - 기존의 물량배정방식이 태동된 보훈·복지단체의 열악한 경제생활 및 취업여건을 보완하고자 한 취지도 고려함.
- 보훈·복지단체의 단체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여 지나친 확대를 억제하는 방안과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모든 단체를 포괄시켜 이틀내에 경쟁의 방식을 도입함.
 - 국가계약법상에 규정된 특례에 따라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보훈·복지단체에 대해 주무부처와 협조를 통해 확대를 억제하고, 국가계약법 정비를 통해 물량배정에 의한 특례의 취지가 엷어진 단체에 대한 퇴출 검토
 - 중기적 조달방식인 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방식, MAS 방식, 제3자 단가계약방식을 검토하여 물품의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차원의 경쟁개념(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방식), MAS 방식(보훈·복지단체내에서 경쟁), 제3자 단가계약 방식 등을 선택함.
 - 3가지 방식 중 경쟁의 개념을 강화하고자 할 경우 MAS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고,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완을 꾀한다

면 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방식이 선호될 것임.

- 보훈·복지단체의 지속적 증가현상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통해 원하는 단체를 포괄시키되, 이들간의 경쟁을 통해 보훈·복지단체의 수적 억제 및 이들의 조달물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고려함.
- 보훈·복지단체가 우선적으로 경쟁입찰 참여시 신인도 가점부여 등 우대 방안 강구
 - 우선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기관에 대해, 단체의 구성원인 상이자, 장애자를 일정비율 고용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 일반 경쟁(적격심사), MAS 계약(적격성 평가) 등의 약자기업 우대분야(적격심사는 신인도 분야)에서 총점대비 3%(적격심사의 경우: 2~3% 중 3%가 최대치) 등으로 유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유도수단을 강구함.
 - 또한 보훈·복지단체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상이자나 장애자들의 사망 등으로 유가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현저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직계 유가족이 그를 대신하여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유가족 등록에 대한 세부규정은 보훈·복지단체의 재량에 의하나, 계약시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유가족은 직접적인 상이자 및 장애자가 아닌 준회원 수준으로 취급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구성비율(예 : 1/3명)로 계산, 가점 고려시 참고할 수 있음.
 - 단, 상이자 및 장애인이 10명인 단체와 직계 유가족이 30명이여서 상이자 및 장애인 10명으로 취급되는 단체 중 우선순위는 전자에 있음.
 - 이 유도수단은 보훈·복지단체의 고유한 특성에 입각하여, 구성원인 상이자 및 장애인에게 정부계약을 통한 간접적 지원의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그가 사망함으로써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상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직계가족에 한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 보훈·복지단체 업종전환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강구
 - 업종전환을 지원(컨설팅 등)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자립 및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 보훈·복지단체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1급 상이군경 및 중증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정부의 보훈·복지예산으로 직접지원하고, 일체 경쟁계약으로 전환
 - 구성원의 노동능력이 없는 단체는 수의계약제도를 통한 간접지원방법보다 정부의 (보훈·복지)예산으로 직접 지원이 타당함.
 - 대상단체: 중상이자·중증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 보상금, 보훈·장애인연금, 생계비, 지원금 등 보훈·복지예산을 확충하여 직접지원 확대
 - 구성원의 노동능력이 있는 단체는 국가계약 제도를 통해 간접지원하고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구매목표를 두는 방안 강구
 - 미국의 경우 상이군인 중소기업(상이군인이 51%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구매목표(3%)를 두어 지원하고 있음.

〈표 4-2〉 보훈·복지단체 제도전환기의 내용 요약

단계	제도전환기
기간	2011 ○ 2013(3년)
제도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자립을 위해 추진되는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조달정책의 특례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제한적인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생산 및 판매활동에 경쟁력 강화를 꾀함
대상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보훈·복지단체로 인정되어 물량배정을 받는 단체와 국가계약법령상의 특례규정에 의한 추가로 지정된 단체 ○ 다만, 수의계약자격 요건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기본으로 보완(장애인의 직접 생산참여, 참여자 수의 하한 규정, 총 근로자중 장애인의 비중 규정) ○ 보훈·복지단체의 수적 증가에 따라 확대된 단체를 포괄하고 제한된 조달물량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이들 단체가 제한된 경쟁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업'의 개념 도입
조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물량배정방식의 점증적 축소 ○ 축소된 물량에 대해 수의계약요청서 방식, 제3자 단가계약방식, MAS 방식 등의 비교를 통해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선정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물량배정에서 제외된 품목과 수량을 전환시키고, 점증적으로 모든 품목과 물량에 대해 수의계약요청서 방식, 제3자 단가계약방식, MAS 방식 적용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적으로 MAS 등 제한된 경쟁체제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우대조치 강구 ○ 업종전환과 같이 MAS 등 제한적 경쟁체제에 참여하려는 단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 1급상이군경 및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경쟁체제로 전환이 불가능한 단체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 및 고용 노력 병행(부처간 협의 필요)

제5장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1절 법제도 개선의 방향

1. 적용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

-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우선 추진하여야 할 과제는 법제도 개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임.
 -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를 통하여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이유는 이에 따라 가장 정확한 정책수단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법령의 체계화나 구체적 입법사항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국가계약법이 정하고 있는 핵심목표는 ‘조달행정의 효율화’와 ‘국가적 목적의 달성’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한 법적 수단이 ‘정부조달 및 계약관련 절차’와 국가적 필요에 의해 ‘일반경쟁의 특례’를 정하는 것임.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간접지원도 이러한 양자의 균형에 대한 세심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물품배정중심의 수의계약제도는 조달행정의 효율화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함.

- 보훈·복지단체의 경우 단순히 예우나 구빈의 차원을 넘어서 이들이 대변하는 집단의 경제적 자활을 돕는다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는 실질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효율적 조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이렇게 보았을 때,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조달 및 계약을 통한 간접 지원은 ① 보훈·복지단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의 마련 및 촉진, ② 보훈·복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 조달행정의 확립, ③ 보훈·복지단체의 경제적 활력의 지속적 개발, ④ 보훈·복지단체의 시장기업화의 선순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판단됨.

□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의 목표가 위와 같이 설정되면, 적용대상은 ‘모든 보훈·복지단체’로 확대되며, 국가적 목적을 위해 중요한 보훈·복지단체가 적용대상이 됨.

- 정부조달 및 계약상의 특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요건에 의해 법률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이는 정책적인 지원의 우선순위 또는 선별을 정하는 것일 뿐, 잠재적으로는 모든 보훈·복지단체가 적용의 대상이 됨.
 - 이는 향후에도 아프가니스탄과병 등 국내외적으로 잠재적 보훈대상자들의 발생 및 단체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은 물론 정부의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급수의 장애인들의 출현 및 이들의 단체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의 신축적인 운용이 요청되기 때문임.
 - 다만, 보훈단체와 복지단체가 갖는 국가적 성격의 차이로 인해 정부조달 및 계약의 운영에 있어서 양자간 인센티브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2. 법령의 체계화

- 법령의 체계화는 현행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 관련 법제도가 산개해 있고, 개별 보훈·복지단체가 개별법들에 의해 설립되고 지원이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정부조달 및 계약에 있어서의 특례지원에 관하여 보훈·복지단체의 지원에 관한 개별법이 그 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데에서 출발함.
 - 엄밀하게는 보훈단체와 복지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통합하고 이에 각 단체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국가계약법 및 조달법에서 이들 단체를 상대로 하는 정부조달 및 계약관련 ‘관리’의 내용을 동법률 내에서 또는 개별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합함.
 - 보훈단체와 복지단체는 성격상 분리하여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훈·복지단체와 관련한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의 개선은 보훈단체와 복지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각각의 통합적 운영에서 출발하여야 함. 이를 통해 보훈단체, 복지단체 각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 운용이 용이할 것임.
 - 이 경우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이나 조달법 또는 개별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용이할 것임.
 - 정부조달 및 계약상의 특례적용을 위한 계약원칙 및 절차, 계약에 필요한 업체의 생산 및 운영 조건, 계약이행 여부의 점검, 납품, 품질검사, 추진주체 등의 사항 등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및 계약 관리 행정’의 근거법이 되어야 함.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법제의 변화는 유관법률과의 관계 체계화도 동반함. 즉 특례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법률에서도 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등의 연계가 확보되어야 함.

제2절 법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1. 대상단체 및 적용범위의 일반화

- 대상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 지원법률을 제정하고 구성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은 ‘대상단체’보다 ‘계약관리’에 초점을 두는 방안임.
 - 정부의 간접지원의 개별 대상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작업은 계약관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과 제도는 이러한 관리에 관한 절차나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임.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방식의 일환으로서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조달 및 계약의 특례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충실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음.
-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 개선의 대상단체 및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해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후술하는 제3절의 법제도 개선 유형의 제3안).

2. 기존 수의계약 대상 기관의 정비

- 현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8항 다목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조항을 통해, 수의계약 및 조달청 수의계약 물량배정 대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들 단체와 더불어 어느 범위의 단체가 수의계약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개별법에서 그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법령을 정비함.
- 특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달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개별법상 수의계약 근거가 미비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 (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단체 및 국가유공 자활집단촌 등과 관련된 수의계약에 있어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경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 2 5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의 근거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자활용사촌과 고엽제전우회의 경우 국가계약법 이외에, 개별 법률상 수의계약 근거를 지니지 못함.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1항과 2항에는 법인의 수익사업 허용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등의 지원정책을 명시하는 바 없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8호 라목(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2008년 3월에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제4항에는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의 본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개선전략이 요청됨.
- 현행 보훈·복지단체의 사후적 합법화와 함께 일정 기한(로드맵기간) 동안 현행 물량배정방식의 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수의계약자격 기준을 이들 단체에 대한 간접지원의 정책취지에 맞게 확립함.
- 수의계약 물량에는 물품 외에 용역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보훈·복지단체의 수요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쟁체계(지정 경쟁 등)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경쟁전환 단체에 대해서는 적정 인센티브를 부여함.

-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의 초점을 현재와 같이 단체나 물품 등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조달 및 계약의 관리라는 차원으로 확립함.
- 이를 통해 현행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 및 계약관리를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 단체 수요 및 타 법령에서의 유관 단체 지원제도와와의 형평 또는 수렴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훈·복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지원정책의 기틀을 다져감.

3. 수의계약 물품의 정비

- 조달청의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오히려 보훈·복지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생산하기 어렵거나 수요성이 떨어져 생산하길 원하지 않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환요구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용역부문으로 물량배정 대상의 영역을 확대하자는 요구까지 늘어난 상황임.
- 보훈·복지단체들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본질적으로 경쟁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는 의지보다는 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확정짓는데 더 관심이 있는데, 이는 단체들이 본질적으로 조달효율성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경쟁을 회피하는 현상임.
 - 이들은 계약수익이 없게 되면 수시로 교체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런 교체요구가 늘어날수록 수의계약대상품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기획비용은 누적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대상물품 중 단계적으로 MAS 전환 추진함.

- 준비단계에서는 첨단기술 등이 필요한 품목 15개에 대해 MAS 전환이 요구됨.
- 무대조명, GHP냉난방기, 냉난방기, 흡수식냉동기, 흡수식냉온수기, 자동 기상관측장비, 방송장비, CCTV, 무대기계, 과학기기, 석재가공품, 배전반, 자동제어반, 계장제어반, 수처리장비 등

- 상이군경 또는 장애인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고, 품질 확보가 가능한 제품을 선정
- 보훈·복지단체는 중소기업진흥 및 물품구매촉진법 제59조의 2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

- 수의계약 의무구매 지원대상 건당 물품금액(규모) 책정

- 주무부처의 단체별 생산승인 품목 수 2개 이하로 제한

4. 수의계약 조건의 정비

- 보훈·복지단체의 보훈대상자·장애인 참여자수와 비율 등 수의계약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모델로 설정하되, 일정기간 해당물품의 생산실적 등 품질확보 및 계약이행 능력도 추가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생산품 구매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5. 수의계약의 한시적 운영 및 신규지정기관 억제 명시

- 보훈·복지단체와의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제도의 한시적 운영을 위한 경과규정 및 신규 물량배정 수의계약지정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함을 명문화하여야 함.
 - 2009년부터 보훈·복지단체로 주무부처의 인·허가(등록)되는 기관의 수의계약권리 원칙적으로 미부여 규정. 단 아래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6. 일반경쟁전환시 보훈·복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특례의 엄격한 운영

- 일반경쟁전환시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동 수의계약을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위해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주무부처의 인허가를 통해 신규 등록된 기업으로서 특별한 정책적 고려

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

- 정부의 시급한 필요에 의해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시급성을 조달청창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 조달 규모가 매우 작아(기획재정부 기준 적용) 일반경쟁의 의미가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7. 일반경쟁전환 보훈·복지단체의 정부계약관련 우대조치의 마련

- 보훈·복지단체 경쟁입찰 참여시 신인도 가점부여 등 우대방안 도입
 - MAS계약 적격성 평가 면제 검토
 - MAS계약 대상자의 계약이행능력평가(납품실적, 경영상태)를 면제하여 보훈·복지단체 진입기회 확대
 - 우선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기관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인 상이자, 장애자를 일정비율 고용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 일반입찰, MAS 계약 등의 적격심사시 신인도 분야(또는 약자기업 우대분야) 등에서 총점대비 10% 등으로 대폭 확대함.

8. 관리체계의 확립 및 정비

- 현재 분산되어 있는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 및 계약 관련 관리업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은 동 조달 및 계약 관리업무를 총괄함.
-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상위정책을 보훈·복지단체에 적용하는 집행관리정책을 총괄함.
- 조달청은 물품을 배정하거나 조달 및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는 직접적인 조달 및 계약 행위가 아닌 조달 수요 부처 및 기관들의 조달 및 계약 행위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적법한 집행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행하는 데 한정함.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조달 및 계약관리 업무관련 조달청의 주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및 계약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집행 관리)정책의 수립 및 집행
 - 수요 부처 및 기관의 조달 및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상의 관련 규정 이행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의 이행 관련 동 단체에 대한 수요부처 및 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지도감독
 - 우수 단체에 대한 인증제도의 수립 및 시행
 -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 및 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동 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품목선정 및 단체 계약 자격인증 등)
 -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소관 법령 및 유관기관의 법령
 -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 및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 기타 보훈·복지단체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조달 및 계약 관련 관련 기관 건의
- 조달청을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보훈·복지단체의 정부계약 및 조달업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과의 역할분담도 정비되어야 함(이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규를 개정할 때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방위산업청,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등은 보훈·복지단체의 원활한 조달참여를 위해 필요한 관리자료(직접생산여부, 단체구성원 및 운영현황, 보훈복지단체 허가증빙자료 등)를 조달청의 요구에 따라 제공함.
- 특히, 장애인 단체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허가증빙자료 등을 조달청이 요구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형태로 전환한 단체의 경우 노동부에서 이들을 허가하기 위해 접수된 자료나 허가증빙자료 등을 조달청의 요구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조달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9.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설비 지원 또는 계약상의 인센티브 운영

- 설비지원 등은 보훈·복지단체가 정부조달 및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정부조달 및 계약상의 인센티브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함.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관련 생산설비의 지원은 정부조달 및 계약과는 무관하나 동 단체의 경제적 자립기반의 마련과 궁극적으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청됨.
 - 보훈·복지 대상자들의 생산활동에 적합한 설비 등을 납품하는 업체나 그 제품에 대한 조달 및 계약상의 인센티브 운영
 - 일정 규모 이하의 보훈·복지단체 중 신규 생산설비 등을 설치한 단체에 대한 조달 및 계약상의 인센티브 제공

제3절 법제도 개선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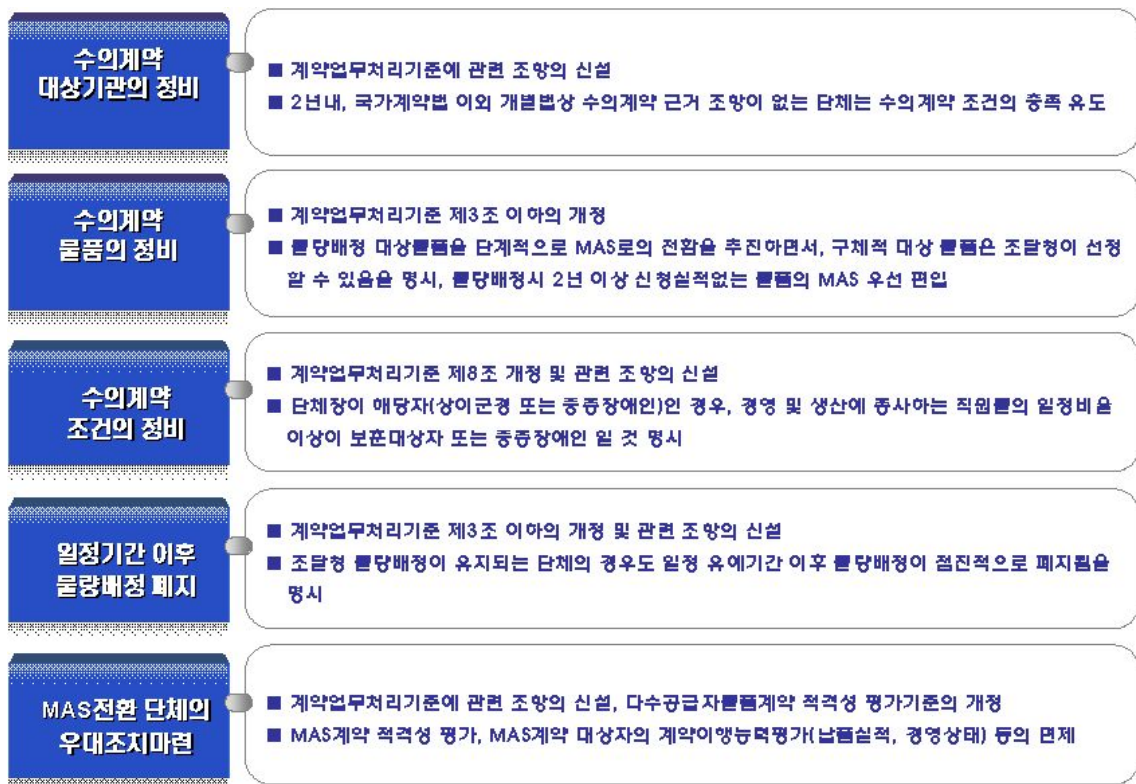
1. 제1안 : 현행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 기준의 개정

- ① 기존 수의계약 대상기관 정비, ② 수의계약 물품의 정비, ③ 수의계약 조건의 정비, ④ 일정 기간 이후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폐지 및 신규 지정기관 억제 명시, ⑤ 일반경쟁전환 기관의 우대조치 마련 등의 내용을 조달청의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의 개정을 통해 삽입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기존 수의계약 대상기관 정비와 관련하여, 개별법상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없는 단체는 로드맵기간 동안 사후적으로 합법화 하되, 향후 2년 이내에 상기 수의계약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명시함.
- 수의계약 물품의 정비와 관련하여,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대상물품 중 단계적으로 MAS 전환 추진하면서, 구체적 대상 물품을 조달청이 선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수의계약 조건의 정비와 관련하여, ① 보훈·복지시설이나 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② 물품의 생산과정에 보훈·복지 대상자가 일정 인원 이상이 참여할 것, ③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 보훈·복지 대상자일 것 등을 명시함.
 - 예 : ①단체장이 해당자(상이군경, 또는 중증장애인 등)인 경우 또는, ② 단체장은 해당 대상자이나 상이군경 또는 중증장애인이 아니지만, 경영 및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일정비율(70%)이상이 보훈대상자 또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 조달청 물량배정이 유지되는 단체의 경우도 일정 유예기간 이후 영리법인 형태의 조직 이외에는 조달청의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 기존에 보훈·복지 수의계약의 혜택을 누리던 기관이 MAS 일반경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MAS계약 적격성 평가, MAS계약 대상자의 계약이행능력평가(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의 면제를 포함하여 보훈·복지단체 진입기회를 확대함.
 - 우선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기관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인 상이자, 장애자를 일정비율 고용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 일반입찰, MAS 계약 등의 적격심사시 신인도 분야(또는 약자기업 우대분야) 등에서 총점대비 10%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함.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물량배정 수의계약에 있어 2년 이상 계약실적이 없는 물품은 MAS 제도에 편입되도록 하고, 단체별 생산승인 품목 수는 2개 이하로 제한함을 명시함.
- 이러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의 개정시, 물량배정대상 51개 물품의 범위를 재정리하고, 물량배정 수의계약에 있어 2년 이상 계약실적이 없는 물품은 MAS 제도에 편입되도록 하며, 단체별 생산승인 품목 수는 2개 이하로 제한함을 명시함.
- 기존에 보훈·복지 수의계약의 혜택을 누리던 기관이 MAS 일반경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MAS계약 적격성 평가, MAS계약 대상자의 계약이행능력평가(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의 면제를 명시함.

- 이를 위해서는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이러한 취지를 명시하고, MAS에 관한 현행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조달청 공고 2007-14호, 2007.4.30) 제2조(평가대상)상의 예외로 해당 보훈·복지단체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둬.
- 이러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의 개정을 통한 접근시, 개별 법률의 제정에 따른 부담을 해소되고 조달청의 채량적 업무집행의 여지가 넓어지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기 용이하나,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규정된 수의계약 시행 근거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만으로 그 시행범위나 내용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 합법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그림 5-1〉 조달청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 기준 개정방안 정리



※ 제1안의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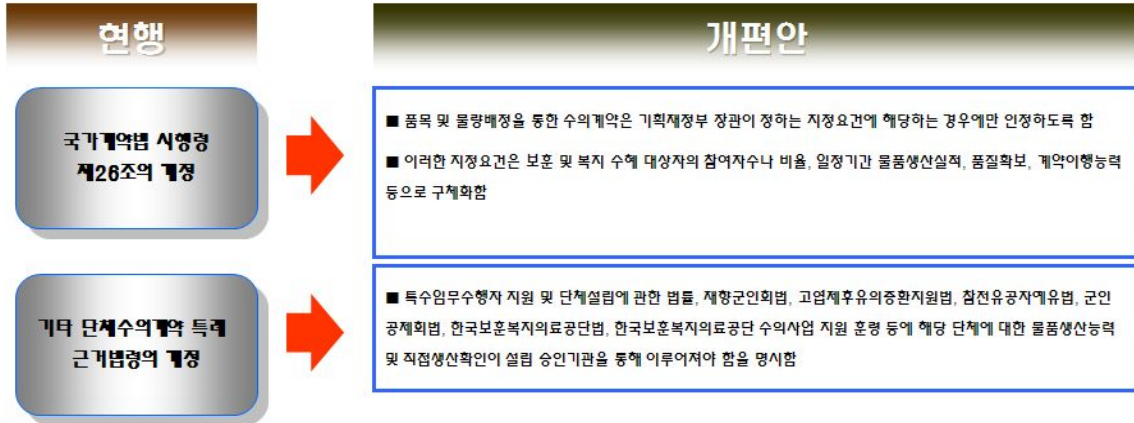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의 개정보다는 개정 과정에서의 물리적 부담이 적음 · 조달청의 재량적 업무집행범위가 넓어짐 ·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경이 용이함 · 점진적으로 수혜를 받던 보훈·복지단체의 자립 여건을 유도할 수 있음 · 특정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물량배정문제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이 수행하는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에 그 적용범위가 한정됨 · 기존에 수의계약의 수혜를 받아 온 단체에 의한 저항이 조달청에 집중될 수 있음 · 영리법인 형태로의 전환 유도시 해당 단체 조직변화가 인위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만으로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하는 수의계약제도의 시행범위나 내용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 합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2. 제2안 : 관련 개별 법령의 개정 추진

- 먼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개정하여, 특히 품목 및 물량배정을 통한 수의계약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함.
 - 이러한 지정요건은 보훈·복지단체의 보훈대상자·장애인 참여자수와 비율 등 수의계약자격 요건을 구체화함.
- 기존 수의계약 대상기관 정비와 관련하여, 개별법상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없는 단체는 로드맵기간 동안 사후적으로 합법화 하되, 향후 2년 이내에 상기 수의계약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부칙에 명기함.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모델로 설정하되, 직접생산확인 증명의 첨부, 일정기간 해당물품의 생산실적 등 품질확보 및 계약이행 능력도 추가함.
- 이러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내용상의 요건이 해당 계약 당시에 유지되지 못할 시에는 당해 계약상 품목 및 물량배정을 통한 수의계약 자격이 박탈됨을 명시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 형식의 보훈·복지 기관만이 품목 및 물량배정을 통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됨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개정을 통하여 마련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요건에 첨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직접생산확인 증명은 각 해당 단체의 설립 승인 기관이 담당하며, 이를 위해 현재 보훈·복지 단체 수의계약 특례의 근거 법령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군인공제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해당 단체에 대한 물품 생산능력 및 직접생산확인이 설립 승인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함.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의 계약특례 근거법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는 직접생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물품 생산능력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성이 있음.

〈그림 5-2〉 관련 개별법의 개정방안 정리



□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상 근거를 두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조달청, 방위사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계약실행을 하는데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앞서 제1안에서 개선 사항으로 제시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 운영 관련 내용을 ‘보훈복지단체 수의 계약집행기준’의 형태로 회계예규에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기관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2안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시 조달청의 업무지침 개정을 통한 대응보다 합법성을 획득할 수 있음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에 관해 국가재정 정책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조달청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의 제도개선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회계예규에 보훈복지단체의 계약집행기준의 형태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내용은 개별 기관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우 합법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요건의 마련에 있어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각 수의계약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단체설립승인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3. 제3안 : 관련 특별법의 추진(5년의 한시법)

1) 특별법 제정의 의의

- 현재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 및 계약 법제도의 혼선을 정비하면서 현행의 보훈·복지단체간, 이들 단체와 수요부처 및 조달청간의 조달 및 계약 관련 불편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 아울러 향후 신규 단체 설립 및 이와 관련 지원 수요에 대비하여 정부조달 및 계약 상의 지원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이와 아울러 이미 물품배정방식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훈·복지단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사후적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특별법 기간동안 해당 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동특별법 운영기간 동안 법제도의 정비 및 적극적 지원을 통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준비하도록 함.
- 나아가 동특별법을 소위 ‘보훈·복지단체 등의 정부조달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로 확대하면서, 향후 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시될 사회적기업법 등의 타 법률에 의해 적용되는 정부조달 및 계약상의 예외 사항들을 포괄하여 반영할 수 있는 법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음.

2) 특별법의 주요내용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의 추진을 통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고 있

- 는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준비하도록 함. 그 내용은,
- ① 기존 수의계약 대상기관 정비,
 - ② 수의계약 물품의 정비,
 - ③ 수의계약 조건의 정비,
 - ④ 일정 기간 이후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폐지 및 신규 지정기관 억제 명시,
 - ⑤ 일반경쟁전환 기관의 우대조치 마련 등이 명시되도록 함.
- 기존 수의계약 대상기관 정비와 관련하여, 개별법상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없는 단체는 조달청 물량배정 대상 단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수의계약 물품의 정비와 관련하여,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 대상물품 중 단계적으로 MAS 전환 추진하면서, 구체적 대상 물품을 조달청이 선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수의계약 조건의 정비와 관련하여, ① 보훈·복지시설이나 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② 물품의 생산과정에 보훈·복지 대상자가 일정 인원 이상이 참여할 것, ③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 보훈·복지 대상자일 것 등을 명시함.
- 기존 수의계약 대상기관 정비와 관련하여, 개별법상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없는 단체는 로드맵기간 동안 사후적으로 합법화하되, 향후 2년 이내에 상기 수의계약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특별법에 명기함.
- 기존에 보훈·복지 수의계약의 혜택을 누리던 기관이 MAS 일반경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MAS계약 적격성 평가, MAS계약 대상자의 계약이행능력평가(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의 면제를 포함하여 보훈·복지단체 진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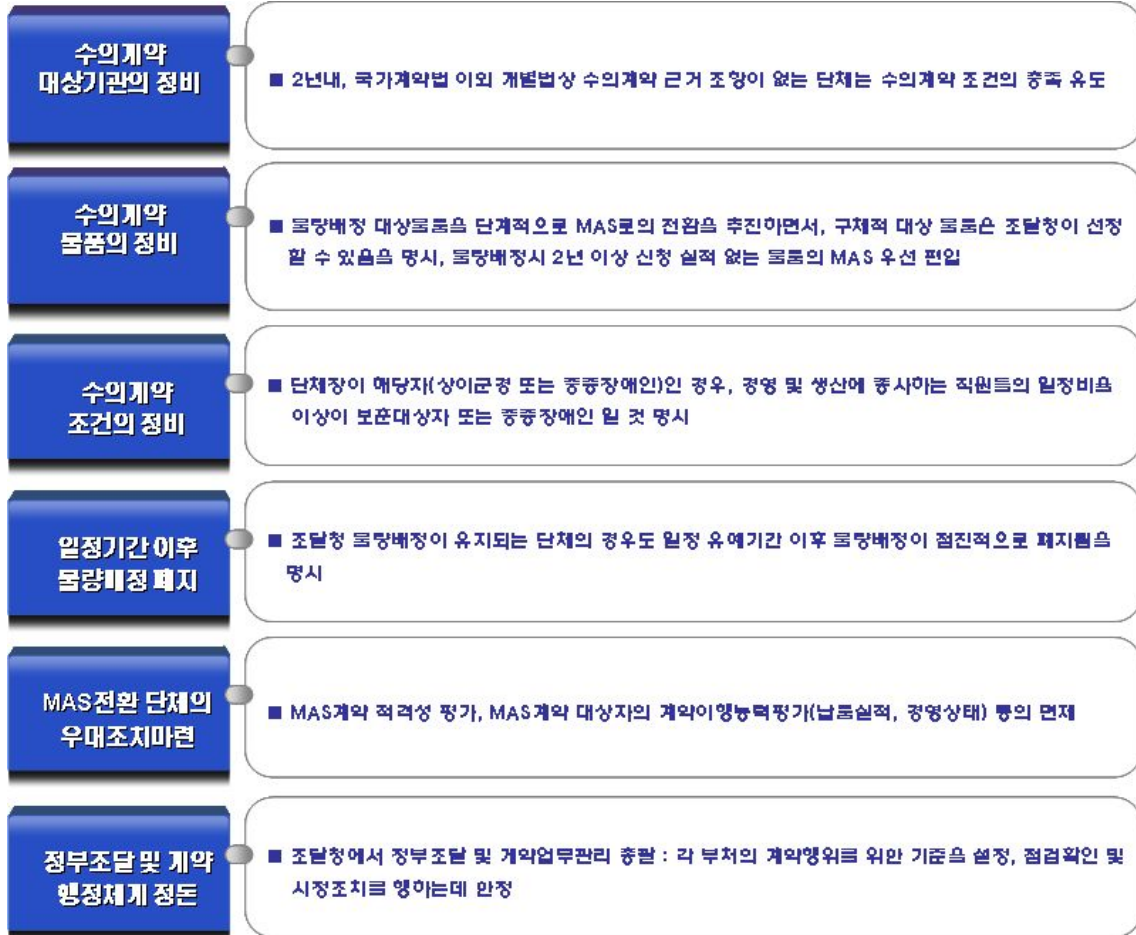
회를 확대함.

- 우선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기관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인 상이자, 장애자를 일정비율 고용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 일반입찰, MAS 계약 등의 적격심사시 신인도 분야(또는 약자기업 우대분야) 등에서 총점대비 10%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함.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물량배정 수의계약에 있어 2년 이상 계약실적이 없는 물품은 MAS 제도에 편입되도록 하고, 단체별 생산승인 품목 수는 2개 이하로 제한함을 명시함.
- 이러한 한시적 특별법의 제정은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 근거조항은 유지하면서, 여러 관련 특별 법령 및 훈령, 업무지침에 분산된 권한 중, 구체적 수의계약 집행방법을 조달청의 주관하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게 함.
- 다만 법률의 제정 추진시 타 행정기관, 국회 등과의 관계에서 실제적·기술적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행정체계의 정돈
 - 조달청은 동 조달 및 계약 관리업무를 총괄함.
 -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상위정책을 보훈·복지단체에 적용하는 집행관리 정책을 총괄함.
 - 조달청은 물품을 배정하거나 조달 및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는 직접적인 조달 및 계약 행위가 아닌 조달 수요 부처 및 기관들의 조달 및 계약 행위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적법한 집행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행하는 데 한정함.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조달 및 계약관리 업무관련 조달청의 주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및 계약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집행 관리)정책의 수립 및 집행
 - 수요 부처 및 기관의 조달 및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상의 관련 규정 이행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의 이행 관련 동 단체에 대한 수요부처 및 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지도감독
 - 우수 단체에 대한 인증제도의 수립 및 시행
 -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 및 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동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품목선정 및 단체 계약 자격인증 등)
 -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소관 법령 및 유관기관의 법령
 - 보훈·복지단체의 정부조달 및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 기타 보훈·복지단체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조달 및 계약 관련 관련 기관 건의

- 보훈복지단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조달 및 계약법 내외적 인센티브의 제공
 -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관련 생산설비의 지원은 정부조달 및 계약과는 무관하나 동 단체의 경제적 자립기반의 마련과 궁극적으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청됨.
 - 보훈·복지 대상자들의 생산활동에 적합한 설비 등을 납품하는 업체나 그 제품에 대한 조달 및 계약상의 인센티브 운영
 - 일정 규모 이하의 보훈·복지단체 중 신규 생산설비 등을 설치한 단체에 대한 조달 및 계약상의 인센티브 제공

〈그림 5-3〉 특별법 제정방안의 정리



※ 제3안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상 혼선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후 수의계약제도 개편시 단체의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음 · 기존의 수혜대상 보훈복지단체들이 새로운 제도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특별법 제정시 타 행정기관, 국회 등의 관계에서 실제적·기술적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음

■ 참고 문헌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

1. 국방대학교(2007), 국방조달 경쟁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
2.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2008),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MAS관련 법령개선 및 계약사후관리 강화방안 수립
3. 조달청·한국조달연구원(2008),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지원 정책의 비용-편익분석
4. 조달청 장비구매과(2009.2), 보훈복지단체 계약제도 개선 연구용역 용역자문단 참고자료
5. 보훈복지단체 대표간담회 자료(2009.2.19)
6. 보훈복지단체 계약제도 개선방안 관련 1~4차 자문회의 자료
7. 김창국. 2008.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보훈시설의 통합관리 및 보훈문화 교육도장으로의 활용방안. 군사논다. 53: 136-161.

8. 유영옥. 2005. 남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비교. 대한정치학회보. 31(1): 145-172.
9. 이호용. 200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1: 717-737.
10. 정원. 2008. 공공조달계약법. 서울: 법률문화원.
11. 김경희. 2005. 적극적 조치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방안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68: 5~37.
12. 유준기. 2007. 민족정기선양을 위한 독립운동 위상 재인식. 국회 제8차 정책토론회. '보훈체계의 개선방안-독립유공자 예우문제를 중심으로. 발표논문.
13. 김종성. 2005. 한국보훈정책론. 서울: 일진사.
14. 정숙경. 2007. 국가보훈의식과 보훈정책의 새로운 방향. 한국보훈학회 춘계세미나. 서울.
15. 김상균·정이윤. 2004.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합리화를 위한 대상자 분류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5: 5-38.
16. 김강녕. 2006. 국가상훈법과 보훈정책. 군사논단. 46: 80-105.

<부록 1>
최근 5년간 보훈·복지단체별 계약실적 현황(조달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비고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합계	153,163	144,263	144,330	202,251	191,457	
보훈단체 소계	117,062	109,210	101,999	124,436	101,100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4,215	38,537	33,511	35,662	31,79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375	4,342	5,300	8,849	11,483	
광주상무용사촌복지공장	3,518	48	4,845	198	-	
대방동재활용사촌복지조합	886	228	669	192	342	
보광유공자산업(주)	1,819	3,120	1,780	707	785	보광용사촌
보은용사촌 주식회사	2,288	1,443	1,397	1,245	998	
부산의용촌보훈복지공장	1,197	538	1,489	7,051	7,048	인쇄사포함
부산재활용사촌복지공장	5,542	4,060	4,088	1,912	1,465	
시흥용사촌안홍합성(주)				3,662	294	
신생용사촌보훈복지(주)	2,072	2,191	1,880	8,512	6,818	(주)신생중상 이용사촌포함
신창산업(주)	6,486	11,646	3,452	3,448	3,134	
십자성마을회(주)	8,709	9,408	10,093	14,031	7,811	
울산병영용사촌	7,005	7,169	4,178	10,250	3,214	
대한보훈산업	2,986	706	1,188	923	1,277	춘천지활용사촌
충무용사촌	6,377	5,977	7,212	5,667	8,539	
평화용사촌	749	815	452	715	609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4,532	10,042	10,916	17,443	11,518	
동산용사촌	1,841	45	1,550	268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297	6,471	5,608	3,701	3,834	07.12.17취소 08.04.02재개
범우용사촌	35	-	-	-	140	07.08.16취소 (면장갑1개품목)
한얼용사촌	3,133	2,424	2,391	-	-	07.08.16취소 (수처리.위생복)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비고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장애인단체 소계	12,064	15,738	17,722	31,356	33,713	
(사)무등장애인자활공동체	360	371	242	88	412	
(사)기능장애인협회	90	282	435	1,501	1,887	
(사)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197	1,132	1,105	4,247	291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1,496	1,416	1,638	3,298	3,325	경북지부포함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399	932	1,007	953	1,765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332	469	253	3,362	2,811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3,775	5,615	3,998	3,221	5,38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2,187	3,310	5,848	12,690	15,933	복지사업국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016	240		199	241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1,552	1,073	1,159	587	148	한국장애인 개발원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520	317	237	06신규진입
(사)한국장애인이위크협회			103	563	1,095	06신규진입
(사)광주장애인자립복지회	171	183	89	51	188	
(사)광주지체장애인협회	489	715	1,325	279	-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	07.12.13취소
복지법인 소계	24,037	19,315	24,609	46,459	56,644	제외단체포함
곰두리복지재단	297	79	720	690	688	
미망인모자복지회	645	389	518	585	438	
(북)안동시온재단	561	365	2,099	1,783	4,628	
애국단체원	1,046	2,145	2,756	4,239	2,521	
에덴복지재단	9,260	10,973	9,531	10,175	8,419	
월남침전전우회	8,782	3,649	6,398	17,020	18,473	
인강원	871	1,012	1,245	615	536	
선아복지재단			49	17	-	
동암	84		153	405	378	
무지개공동회	33		330	432	461	엠마우스산업
손과손	68	108	7	179	84	
희망나라			595		-	07.12.13취소
덕산	71	151	27		-	07.08.16취소
천애원	1,193	444			-	07.08.16취소

구분 (제외 단체)	2004	2005	2006	2007	2008	비고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강원복지회	55		181	315	430	구)한기협 태백지부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950	1,999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89	556	
(사)한국장애문화인쇄협회				351	559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49	6	
(사)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166	237	
(사)한국장애인부모회				61	243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334	148	
나눔의 집				1,738	751	
위훈용사복지회				3,825	7,563	
대한장애인복지회				397	2,075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583	3,468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지부로해당없음
(사)담안선교회	136					- 복지단체해당없음
(사)한국맹인교육연구회						- 복지단체해당없음
너머	511			39		- 하청생산으로취소
청록사회복지재단				59		- 사회복지법인
전북무용춘(주) 익산하이테크				232		- 용사촌복지공장
(주)월남전교업체복지사업부	390					- 농공단지업체 삭제
가나안근로복지관				48	11	
인구세군복지재단				3	24	
(재)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295	349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296	729	
보람동산				67	71	장애인복지시설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08	2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무외손				12	-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보호 작업(프란치스코의집)				84	-	
화천군장애인연합회				18	27	
만승자립원	7					- 장애인복지시설
영가재활원	27					- 장애인복지시설
홍애원					559	

<부록 2>

Code No. _____

(秘)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보훈·복지단체 지원 및 계약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조달청이 발주하고 한국조달연구원 및 한국정책학회 공동주관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현재 정부와의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단체들의 특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이해와 보훈·복지단체의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부 조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향후 조달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책임연구원 : 김정포 위원(한국조달연구원) · 최영훈 교수(광운대학교)

- * 본 연구는  '조달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 본 설문지는 가능한 E-Mail을 통하여 귀 기관에 재 송부될 것이며, 작성이 완료되면 **2월 18일(수)** 까지 Fax나 E-mail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및 회신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604 농협한강로빌딩 B동 4층.
(재) 한국조달연구원.

Fax. : 02-796-3510.

Tel. : 02-796-8234(내선 115,116,117)

E-mail : mjlee@kip.re.kr

A. 다음은 응답단체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단체는 다음 어떠한 설립유형에 해당하십니까? (2개 동시 해당하는 경우 모두 표시)

- ① 사단법인 ② 재단법인 ③ 사회복지법인
 ④ 장애인복지단체 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⑥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⑦ 기타(인증 사회적 기업, 개인 사회복지시설 등) :

2. 귀 단체의 설립당시 근거 법률은 무엇입니까? _____

3. 귀 단체의 설립년도는? _____년 _____월 (운영기간 : _____개월)

4. 귀 단체의 주요 기능은 무엇입니까? (대표기능 2개 표시)

- ① 개인(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회원의 권익 증진
 ② 회원기관의 협의체 기능(시설연합회, 교통장애인협회 등과 같은 협의체 기능)
 ③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시설보호, 직업재활, 보건의료 등)
 ④ 회원간 친목 증진
 ⑤ 제품 및 서비스 생산·판매
 ⑥ 기타 :

5. 귀 단체의 회원구성의 특징은?

5-1) 회원 수 : _____명 5-1-1) 회원기관(해당시) : _____개

5-2) 개인 회원(혹은 서비스대상)의 주요특성 (2개 중복응답)

- ① 국가유공자 ② 체대군인 ③ 상이군경 ④ 중증장애인 ⑤ 경증장애인
 ⑥ 한부모(편부, 편모) 또는 노인 ⑦ 기타 :

6. 귀 단체의 상근직원 수는? 총 _____명

6-1) 사무국 행정직원 : _____명 6-2) 생산인력 : _____명 6-3) 기타 : _____명

(기타의 경우 상근시 역할을 명시해 주세요.)

7. 귀 단체의 이사회 운영여부는?

- ① 운영(년평균 회의 : ____회) ② 구성만 되어있음 ③ 없음

8. 귀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수? 월 평균 _____명

9. 귀 단체의 직접 생산시설 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9-1) 귀 단체의 직접 생산시설의 확인은 어떤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중소기업청 ② 단체 승인기관

9-2) 직접 생산시설의 소유 형태는 ?

- ① 자체 소유 ② 전부 임대

10. 다음은 귀 단체의 자산규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략적인 것만이라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본재산 총액 : _____백만원

9-1) 동산 : _____백만원, 부동산 : _____백만원상당, 기타() : _____백만원

11. 귀 단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예산 및 수입 재원 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액(만원)	정부보조	회비총당	모금·기부금	수익사업	정부조달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100%)	(%)	(%)	(%)	(%)	(%)

12. 귀 단체의 지출구조(2008년도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액(만원)	단체유지비	사무직 인건비	근로자 임금	목적사업추진비	기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100%)	(%)	(%)	(%)	(%)	(%)

13. 다음 각 문항에 대해 귀 단체의 성격에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난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내 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적 활동이 우리단체의 주된 사업 중 하나이다.					
② 우리단체는 정부나 특정 개인에 의해 운영되기보다 자발적 참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③ 우리단체는 회원들의(혹은 직원) 노력과 제한된 능력에 의존하고 있어서 때때로 재정적 위기를 감내해야 한다.					
④ 우리단체의 사업수익의 증대는 민수 시장에서의 판매로부터 나온다.					
⑤ 우리단체의 사업수익의 증대는 정부의 구매(조달)로부터 나온다.					
⑥ 우리단체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지역사회나 특정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⑦ 우리단체의 운영권은 지분의 소유여부에 기초하지 않는다.					
⑧ 우리단체의 이사회(운영회)에는 서비스이용자와 회원이 참여한다.					
⑨ 우리단체는 수익사업에 의한 이윤 확대를 최대한 지향한다.					
⑩ 우리단체의 수익금은 대부분 고용인들의 급여지급에 활용된다.					
⑪ 우리단체에 근무하는 고용인들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고용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⑫ 우리단체는 정부보조금 외에 다양한 수입재원의 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 다음은 귀 단체의 정부 수의계약과 관련된 현황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 정부가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단체운영을 위한 간접적 보조
- ②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직업재활 등 고용지원
- ③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보상
- ④ 사회복지예산 절감을 위한 간접 지원
- 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 ⑥ 기타 :

2. 다음은 귀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대표적인 품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년 현재 직접 생산하는 품목을 5개 이내로 기입하시고 관련 질문 해당사항에 √ 표하여 주십시오.

직접생산 품목 5가지 내외로 기술	대표 주력 생산 물품	정부 수의 계약 물품	일반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1.			
2.			
3.			
4.			
5.			

3. 최근 3년간 정부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한 물품 및 납품비율에 대해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조달 물품(5개 이내)	조달금액	단체의 총매출액에서 조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백만원	%
2.	백만원	%
3.	백만원	%
4.	백만원	%
5.	백만원	%

4. 귀 단체는 자체 생산물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 용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 지않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 다	⑤매우 그렇다
①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의 품질인증					
② 중소기업 품질인증기준의 적용					
③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도입					
④ 물품 수요기관으로부터의 평가 및 피드백					
⑤ 전문 업체로부터의 컨설팅					
⑥ 직원들에 대한 기술교육					
⑦ 기타 :					

5. 귀 단체의 정부 수의계약물품 생산에 참여하는 고용된 생산인력은?

총 생산인력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일반근로자	한부모/노인
명	명	명	명	명	명	명
(100%)	(%)	(%)	(%)	(%)	(%)	(%)

6. 귀 단체는 정부 수의계약에 의한 수익금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 ① 단체운영비 ② 고용생산인력 임금 ③ 단체 목적사업 추진비 ④ 기타

7. 귀 단체에서는 정부와의 현 수의계약 형태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내 용	①전혀 동의하 지않음	②동의 하지않음	③보통 이다	④동의 함	⑤매우 동의함
① 현재 수의계약 단체 지정(혹은 선정)방법					
② 현재 수의계약 단체에 대한 물량배정 방식					
③ 현재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배정된 품목					
④ 현재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배정된 규모(금액)					
⑤ 현재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배정된 비율 (다른 경쟁단체와 비교하여 응답해 주세요)					

C. 다음은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하는 질문입니다.

1. 보훈·복지단체와의 정부 수의계약제도에 대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음의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내 용	① 전히 동의 하지 않음	② 동의 하지 않 음	③ 보통 이다	④ 동의 함	⑤ 매우 동의 함
①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과의 형평(삭제)					
② 보훈·복지단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낮은 품질					
③ 보훈·복지단체의 자체 경쟁력강화 노력의 미흡					
④ 수의계약 단체의 직접생산 능력 확인의 어려움					
⑤ 수의계약 대상 단체의 자격기준의 모호					
⑥ 특정 보훈·복지단체에 물량배정 집중					
⑦ 수의계약 대상 배정 품목의 낮은 수익성					

1-1) 기타 귀 단체에서 생각하고 계신 현재 정부 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2. 보훈복지단체와의 정부 수의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내 용	① 전히 동의 하지 않음	② 동의 하지 않 음	③ 보통 이다	④ 동의 함	⑤ 매우 동의 함
① 현 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수의계약 대상단체의 자격기준 및 심사평가 강화					
② 수의계약제도를 단계적으로 경쟁전환하고, 우선구매 촉진을 확대 지원					
③ 수의계약제도를 단계적으로 경쟁전환하고 생산설비 등 초기 생산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단체의 시장경쟁력 강화					
④ 현 특정단체 대상의 수의계약제도를 일관 경쟁전환하고 보훈복지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경쟁체제를 확대 전환					
⑤ 수의계약제도를 단계적으로 경쟁전환하고,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지원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대체					
⑥ 수의계약제도를 단계적으로 경쟁전환하고, 동일물품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경쟁체제로 전환					

2-1) 기타 귀 단체에서 생각하고 계신 정부 수의계약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

보훈·복지단체 물품/용역 조달서비스에 대한 고객평가(수요기관)

안녕하십니까?

보훈복지단체 물품/용역 조달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알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조달청의 서비스 질 개선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묻는 질문은 통계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 3
(재)한국조달연구원

1. 조달청의 보훈복지단체 물품/용역 서비스 관련 질문입니다.

번호	항 목	질 문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잘 모름 해당사항 없음
문 2-1)	구매정보 충분성	귀하는 조달청의 보훈복지단체 물품/용역 구매정보제공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⑨
문 2-2)	구비서류 간편성	귀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⑨
문 2-3)	업무처리 신속성	귀하는 원하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준 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⑨
문 2-4)	업무처리 절차 간편성	귀하는 업무처리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간편한 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⑨
문 2-5)	대금결제 편리성	귀하는 대금의 결제방법이 편리한 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⑨

문1-6) 위 표에서 질문 드린 조달청의 “구매 전 서비스” 각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를 순서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구매정보 충분성() ② 구비서류 간편성() ③ 업무처리 신속성()
 ④ 업무처리절차 간편성() ⑤ 대금결제 편리성()

문1-7) 조달청의 보훈복지단체 물품/용역 구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요?

-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불만

2. 보훈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항 목	질 문	매우 불만	대체 로 불만	보통	대체 로 만족	매우 만족	잘 모름 해당사 항없음
문 2-1)	품질 우수성	귀하는 보훈복지단체가 공급한 물품/용역의 품질 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다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⑨
문 2-2)	가격 적정성	귀하는 보훈복지단체가 공급한 물품/용역의 가격 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다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⑨
문 2-3)	납기준수	귀하는 보훈복지단체가 구매계약 대상 물품/용역의 납기 준수 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다습니까?						
문 2-4)	사후관리 (AS)의 질	납품 조달물자에 대한 보훈복지단체의 사후관리 (A/S) 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2-5) 앞에서 질문드린 보훈복지단체로부터의 물품/용역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를 순서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물품의 품질 우수성() ② 물품의 가격 적정성() ③ 납기준수 ()
 ④ 사후관리의 질()

문2-6) 보훈복지단체로부터의 납품/구매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요?

-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불만

문2-7) 보훈복지단체가 납품한 물품을 재구매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요?

- ① 더 이상 재구매하고 싶지 않다()
- ② 가급적 재구매하고 싶지 않다()
- ③ 상관없다 ()
- ④ 가급적 재구매하고자 한다 ()
- ⑤ 계속 재구매 하고자 한다 ()

3. 보훈복지단체와의 물품/용역 수의 계약 현황

문3-1) 귀 기관의 전체 조달 금액 중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물품/용역의 백분율 : 2008년 연간 기준 ()%, 최근 3년간 평균기준 ()%

문3-2) 귀 기관에서 지난 3년간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한 물품/용역 및 그에 대한 만족도(구매한 모든 물품/용역명을 나열하시고,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물품/용역명 (품목명)	만족도				
	매우 불만	대체로 불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예) 선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줄이 모자라면, 줄을 돌려 작성 요망.

4. 기타 개선관련 의견

조달청의 보훈복지단체 물품조달업무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일반사항

문5-1) 기관유형 : ① 중앙정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 등 기타

문5-2) 기 관 명 : _____ (소재지 : _____)

☺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